

FTA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2014 April

FTA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2014 April



01 FTA 포커스

02 FTA 최근 동향

- I. 관세청 주요 이슈
 - II. 우리나라 FTA 동향
 - III. 해외 FTA 관련동향
- [쉬어가는 페이지] 알기 쉬운 FTA

03 한-터키 FTA 1년, 그 의의와 성과

- I. 한-터키 FTA의 개관
- II. 한-터키 FTA의 활용상 특징
- III. 한-터키 FTA의 활용성과

04 FTA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업 부문

- I. 농림수산물의 교역동향
- II. 농림수산물의 FTA 특혜 수출입 동향
- III.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특집] FTA 민원 데이터의 유형과 주요 민원분석

05 FTA 교역지도

CONTENTS

| | | |
|------------|----------------------|-----------|
| 01. | FTA 포커스 | 03 |
|------------|----------------------|-----------|

| | | |
|------------|-----------------------|-----------|
| 02. | FTA 최근동향 | 09 |
|------------|-----------------------|-----------|

- 10 · I. 관세청 주요 이슈
- 12 · II. 우리나라 FTA 동향
- 15 · III. 해외 FTA 관련동향
- 19 · [쉬어가는 페이지] 알기 쉬운 FTA

| | | |
|------------|------------------------------------|-----------|
| 03. | 한-터키 FTA 1년, 그 의의와 성과 | 21 |
|------------|------------------------------------|-----------|

- 22 · I. 한-터키 FTA의 개관
 - 22 · 1. 한-터키 FTA의 체결 동기
 - 24 · 2. 한-터키 FTA의 주요 내용
- 25 · II. 한-터키 FTA의 활용상 특징
 - 25 ·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통한 한-EU FTA 동시 활용
 - 25 · 2. 간소화된 원산지증명 절차
 - 26 · 3. 일부품목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화
 - 28 · 4. 엄격한 영해 밖 채포 수산물의 완전생산물품 인정범위 설정
- 28 · III. 한-터키 FTA 활용성과
 - 28 · 1. 對터키 교역 동향
 - 30 · 2. 품목군별 수출 동향
 - 34 · 3. 품목군별 수입 동향

| | | |
|------------|--|-----------|
| 04. | FTA 산업별 FTA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업 부문 | 39 |
|------------|--|-----------|

- 40 · I. 농림수산물의 교역동향
 - 40 · 1. 전체 교역동향
- 47 · II. 농림수산물의 FTA 특혜 수출입 동향
 - 47 · 1. FTA대상국의 무역
 - 49 · 2.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FTA 활용률
 - 50 · 3. 주요 특혜활용 품목
- 52 · III.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 52 · 1. 수출부문
 - 57 · 2. 수입부문

| | | |
|-------------|--------------------------------------|-----------|
| [특집] | FTA 민원 데이터의 유형과 주요 민원분석 | 61 |
|-------------|--------------------------------------|-----------|

- 61 · 1. 서론
- 62 · 2. FTA 민원데이터의 유형화와 특징
- 68 · 3. FTA 민원 데이터 주요 이슈와 시사점

| | | |
|------------|-------------------|-----------|
| 05. | 교역지도 | 77 |
|------------|-------------------|-----------|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 2014년도 관세청 FTA 집행 운영방향



이명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I.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등 총 9개 협정, 46개국¹⁾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중이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액의 36%(2013년 교역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FTA 중심 국가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FTA 네트워크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2013년 2월 정식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는 국회비

준 동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는 2013년 12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FTA도 2013년 9월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협상²⁾을 마무리하고, 제8차 협상(2013년 11월)부터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협상, 협정문안 논의 등 2단계 본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개별회원국과도 관세양허 확대 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 있는 한-중-일 FTA 및 RCEP³⁾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참고> FTA 추진현황 /

(교역비중은 '13년기준)

| 구분 | 발효(46개국) | 협상타결(3국) | 협상중(15개국) | 여건조성(19개국) |
|------|---|---------------|---------------------------------|---|
| 상대국가 | 칠레, EF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 RCEP,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뉴질랜드 |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
| 교역비중 | 36.0 | 3.9 | 30.4 | 14.8 |
| 누적비중 | 36.0 | 39.9 | 70.3 | 85.1 |

1) 칠레, 싱가포르, EFTA(4), 아세안(10), 인도, EU(27), 페루, 미국, 터키

2)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군별(일반-민감-초민감)로 구분,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품목을 자유화하기로 함

3)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아세안 10개회원국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간 역내 무역자유화 협정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과 FTA를 맺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이와 같이 FTA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FTA 네트워크 확대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FTA는 우리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으며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FTA를 新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총괄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관세청의 주된 임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원천 차단하여 비원산지 물품의 특혜 무임승차(Free Riding)를 차단하고,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쟁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II.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EU, 미국 등과의 FTA 발효 이후 높아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이다. FTA 원스톱 지원 센터를 전국세관에 설치하고 전문상담관이 애로사항을 직접 해소하는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업상담·진단·컨설팅 연계 등을 통해 1,532건의 FTA 활용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다. FTA 활용 역량에 따라 전문 관세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FTA-PASS 구축에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검증대비 진단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미 FTA의 수출활용률은 2012년말 68.9%에서 2013년말에는 76.1%로 향상되었고, 한-EU FTA도 인증 수출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불과 발효 2년여만에 80.8%의 높은 수출활용률을 나타냈다.

셋째, FTA 부정·불법 수입 차단이다. FTA 부정·불법 수입에 대한 원산지 검증 강화를 통하여 전년 대비 293% 증가한 62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대기업 CEO 간담회, 검증 프로세스 개선, 매뉴얼 발간 및 교육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자발적 법규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넷째,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지원정책도 추진하였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고 기업의 FTA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FTA 상설교육센터」등을 통하여 기업실무자, 전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취업희망자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195명의 FTA 전문인력 취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가간 복잡·다양한 원산지 제도에 대한 조화방안을 모색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였고, 「FTA 활용애로 해외 현장 해결팀」을 운영하여 우리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였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전산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FTA 활용지원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FTA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고, FTA 특혜

무역을 악용한 우회수출입 등에 대한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부정무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III. 2014년도 FTA 행정 중점 추진방향

국내외 FTA 혜택이 일반화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는 EU, 미국 등의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FTA로 인한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FTA 네트워크 및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는 수출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시스템, 지원활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FTA 교역환경에 잘 적응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FTA 활용이 증가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FTA 원산지검증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의 영원한 핵심과제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이다. FTA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검증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새롭게 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년도 FTA 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를 정립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한-중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셋째, FTA 이행체제 선진화를 통한 특혜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넷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무역을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FTA 관세외교를 강화하고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1. 중소기업 FTA 활용을 가속화하는 환경 조성

첫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FTA특례법에 중소기업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⁴⁾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원산지 확인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사전확인제도⁵⁾를 전국세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 지원 외에 온라인 상의 '기업별 전담관'을 편성하여 전담상담관이 해당 기업의 FTA 활용 애로 등을 이력관리하면서 기업체가 이해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2. 한-중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에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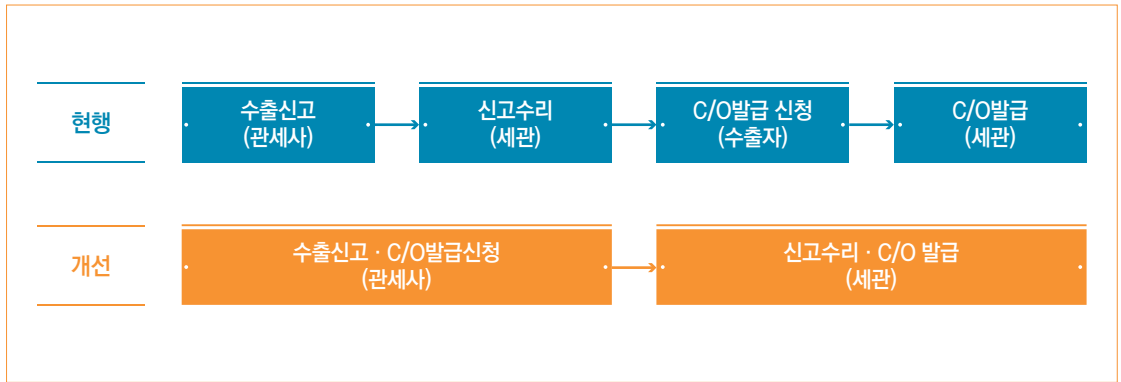
첫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FTA 행정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유관기관 등 FTA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新 FTA 무역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FTA 행정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 내부전문가·법무법인·관세사·학계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산지 학회」를 신설하여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원산지발급능력을 제고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⁶⁾」을 구축할 계획이다.

4) 중소기업과 수출용 원재료 제조기업에 대해 FTA 활용 관련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이 가능토록 규정

5)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주는 제도

6) 원산지 증명서 신청항목의 중복입력 부담을 없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관세사의 원산지증명서 심사 확대로 신뢰성 제고



셋째, 본격적인 FTA 시대에 대비하여 관세행정 내·외부 인적자원의 FTA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FTA 전문 컨설턴트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FTA 전문 관세사를 육성하고, 지역 FTA 특성화고 지정사업 등을 통하여 FTA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고용까지 연계를 지원할 나갈 계획이다.

3. FTA 이행체제 선진화를 통한 특혜교역 확대

첫째, Local 수출자 인증 도입 등 인증수출자제도를 개편한다. 수출자에 한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 대상을 '수출용 원재료 생산자(로컬 수출자)'에게도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여 원산지 관리역량을 제고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인증수출자 증가에 대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예비조사 민간 위탁 주관기관을 기존 서울세관에서 인천·대구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둘째, FTA-Hub망 기반확충으로 전자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을 확산한다.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되는 각 협정 품목별 원산지기준 코드를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HS 6단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FTA 전자서류 유통을 지원하고, ERP 미사용 영세기업도 FTA-PASS와 손쉽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형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 개성공단 및 검증 특화형 FTA-PASS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협정별 역외가공 규정을 반영한 FTA-PASS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개성공단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세관 검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원산지 판정 입증 서류 자동추적, 자가 검증 툴(Tool)을 구축하여 제공할 것이다.

4.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무역 구현

재정확보 및 FTA 악용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한다. 원산지 위험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보수집 채널 다양화 및 분석체계 강화를 통해 FTA 교역증가에 편승한 부정·불법 무역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증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검증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관별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검증 처분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세관별 「검증결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확정하는 등 검증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5. FTA 관세의외 강화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

세계관세기구(WCO)와 공조강화 등을 통한 원산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WCO에서 우리나라의 원산지 제도를 홍보하고, WCO 원산지 자문단 그룹에 참가함으로써 원산지 국제표준화에 공조하며, 외국세관 전문가·학계 및 국제원산지 정보원 등이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정보의 교환 및 표준화를 논의하는 포럼을 추진한다.

또한,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FTA 해외 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의성 민원·규정 해석 상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내외 통관애로 접수·처리를 전국으로 통합관리하고, 상대국 세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시에 FTA 통관애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IV. 맺음말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 밖에 없다. 단기간에 많은 FTA가 발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점도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성공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과 같은 새로운 규범과 제도가 도입되고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형 발굴 등 FTA 이행에 따르는 많은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되

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를 중심으로 한 노력은 이러한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FTA 시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인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FTA를 기업성장의 호기로 활용하고, 관세청은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02

FTA 최근동향



02 FTA 최근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관세청장,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세외교 강화

백운찬 관세청장은 한-미 FTA발효 2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3일, LA 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발효 2주년 기념 특별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미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세 외교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청장은 한-미 FTA 이행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 인사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축사에서, 지난 2년간 양국 경제성장에 활력을 준 한-미 FTA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3.0의 방식의 기업간,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수출입업체들이 미국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미국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LA 세관국경보호청장과는 별도의 면담을 통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백운찬 관세청장은 현지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원스톱지원센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 소개를 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입수된 중소기업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기업 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민간 분야와의 해외시장 통관정보 공유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업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폭 쉬워진다

관세청은 4.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등에게 별도의 심사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줌으로써 성실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성실 업체는

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13년 기준 28개)와,

2.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13년 기준 146개) 등이며, 건수 기준으로 연간 약 35,000건 이상이 심사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실기업들은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관세청은, FTA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 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신고 전에 심사하던 것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함으로써 FTA 수출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등 FTA활용 밀착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관세청, WCO와 원산지협력 사업 진행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하여, FTA이행 및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와 다양한 원산지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다.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① 관세청은 WCO로부터 「Origin Certification Guideline」 자문단 참가 요청을 받아,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원산지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② 관세청은 '14. 1. 20 ~ 21 벨기에 브뤼셀에서 WCO가 주최한「WCO Origin Conference 2014」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산지 검증제도(1일차) 및 FTA활용제도(2일차)를 발표,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의 이행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함과 동시에 아국 원산지제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성공 핵심 노트' 발간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한 각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FTA활용 성공 핵심 노트(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단계는 FTA 활용 준비단계로서 FTA의 해결사인 「FTA 원스톱 지원센터」, FTA 활용의 기초인 품목분류(HS) 가이드, 「FTA 상설 교육센터」,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FTA 특화정보가 소개

되고, ▲제2단계인 FTA 활용단계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담고 있다.

끝으로, ▲제3단계는 FTA 문제해결 단계로서 FTA 해외통관애로 신고, 원산지검증 구제절차 및 FTA 전문인력에 대하여 FTA 구인기업과의 고용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FTA 활용 성공 핵심 노트'를 전국 주요세관의 'FTA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통해 FTA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 배포하고,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하여 관세청 FTA 홈페이지(<http://fta.customs.go.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1단계 FTA활용준비단계

FTA 원스톱 지원센터, 품목분류가이드, FTA 상설 교육센터 소개

2단계 FTA활용단계

FTA-PASS, C/O 발급지원

3단계 FTA 문제해결단계

FTA해외통관애로, 검증 구제

영세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6개 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서 2014년 2월 1일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추가 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부담을 느껴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사전에 심사 및 확인하는 것이며,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FTA특혜 수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증명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FTA활용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 또는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품목은 제한이 없다.

또한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에 공개하여 기업 홍보에도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전국 확대 실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 신청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II. 우리나라 FTA 동향

한-호주 FTA 공식 서명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유망시장

한국과 호주간 FTA가 공식 서명되었다. 이로써 한-호주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9, 서명 2, 타결 1)이다.

한-호주 FTA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역외 가공 지역 조항 도입에도 합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호주는 거의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5년 내 철폐하며, 한국은 호주산 제품의 92.4%에 대해 8년 내 철폐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은 약 9,654백만불, 수입은 약 20,768백만불(13위 수출대상국, 6위 수입대상국)로,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 파트너 국가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경유(전체 비중 23.2%, 관세율 0%), 승용차(20.5%, 5~10%), 자동차부품(2.9%, 0~1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28.7%, 0~2%), 유연탄(24.9%, 0%), 가축육류(4.2%, 3~72%), 곡류(2.1%, 0~800%) 등이다.

양국은 2009년부터 7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여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산업부,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3월 31일 코엑스에서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해 한국의 FTA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통상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난 10년간 FTA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원산지 규정 같이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FTA 10주년 종합평가'와 '한·중 FTA, TPP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의 FTA 10년 성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47개국과 체결한 FTA를 통해 ▲교역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 다변화, ▲관세 절감 등의 효과를 봤으며, 특히 10주년을 맞은 한·칠레 FTA의 경제적 성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또,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이 연평균 16.3% 증가하는 등 발효 전보다 4배 이상 확대됐으며, 주력 품목인 승용차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12.4%에서 지난해 30.6%까지 올라 일본 및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EU가입.

한-EU FTA 추가 의정서 정식 서명

지난 3월 25일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 의정서」가 우리측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와 EU집행위 통상총국장 및 의장국 대사간에 정식 서명되었다.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부로 EU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 의정서 체결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협정문 수정에 합의하여 2013년 11월 8일 추가 의정서에 가서명을 실시한 바 있다.

금번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가입으로 인하여 한-크로아티아 양국은 한-EU FTA의 3년차 특혜관세를 상호 적용하기로 하였다.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상품에 특혜관세를 부여중임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리측은 크로아티아산에 대한 FTA특혜관세를 2013년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크로아티아 간에 FTA는 사실상 체결되었으며, 한-EU 양측의 국비 비준등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치면 발효, 적용 된다.



유고연방에서 1991년 분리 독립한 발칸반도 서부에 있는 나라. 정식명칭은 크로아티아 공화국이다. 수도는 자그레브,

언어는 크로아티아어를 사용하며, 아드리아해연안에 위치한다.

크로아티아는 EU의 28번째 회원국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약 46백만불, 수입은 약 17백만불 (2013년 기준, 134위 수출대상국, 125위 수입대상국)이며,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한-EU FTA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5년간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약 10백만불, 수입은 약 2백만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기준 對크로아티아 수출 1순위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9백만불)이었으며, 수입 1순위 품목은 종이제품(5백만불)이었다.

한-뉴질랜드 FTA공식 협상, 서울개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뉴질랜드 FTA공식협상'이 종료되었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등 협정문 협상에서 잔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핵심쟁점인 상품 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우리 농수산물 보호수준에 대한 이견이 커 큰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FTA협상은 2010년 5월 제4차 공식협상 이후 중단된 공식협상을 2014년 2월 재개한 바 있으며, 이번 소규모 공식협상을 통해 차기 협상 전까지 협상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캐나다 FTA타결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간 FTA 타결되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그동안의 잔여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간 FTA가 타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9년여 만에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FTA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로, 특히 상품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의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기로 해 현재 캐나다와 FTA협상 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캐나다는 G8회원국이며,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은 약 5,203백만불, 수입은 약 4,717백만불(23위 수출대상국, 25위 수입대상국)이다.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전체 비중 42.8%, 관세율 6.1%), 무선전화기(12.7%, 0%), 자동차부품(0~6.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33.6%, 0%), 펄프(6.2%, 0%), 칼슘비료(4.3%, 0~6.5%) 등이다.

한-중 FTA 제10차 협상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날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對중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의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하는 등 상호 관심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 · 중 FTA 제10차 협상 주요 쟁점 (상품 양허)

| · 쟁점 · | · 한국 | | | | · 중국 | | | |
|-----------|---|--|-----------------------------------|---------------------------|--|--|------------------------|---------------------------|
| | 구분 | 일반품목군 | 민감품목군 | 초민감품목군 | 구분 | 일반품목군 | 민감품목군 | 초민감품목군 |
| · 상품 양허 · | 양허안 주요내용 | | | | 양허안 주요내용 | | | |
| | 처리 내용 | · 즉시 철폐 ~10년 내 철폐 | · 10년 초과 ~20년 내 철폐 | · 양허제외, TRQ,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 처리 내용 | · 즉시 철폐 ~10년 내 철폐 | · 10년 초과 ~20년 내 철폐 | · 양허제외, TRQ,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
| | 주요 품목 (예시) | · 석유화학(기초유분, 합성수지 등), 기계 (공작기계 등), IT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 · 기계(베어링, 공구 등), 전자기기(스위치, 변환기 등) | · 주요 생산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제품 | 주요 품목 (예시) | · 농수산물, 섬유 및 의류, 비철금속, 기계 및 철강 범용 제품 등 | ·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일부 품목 | ·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일부 품목 |
| | 주요 요구 사항 -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측 조기 관세 철폐 | | | | 주요 요구 사항 -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 | | |
| | 우리 입장 - 국내 농수산업 영세성 및 민감성을 부각하여 중측측 최대한 설득 | | | | 중국 입장 - 자국의 對韓 산업 경쟁력 열위, 지속적 對韓 무역적자를 들어 우리 주력 수출상품 조기 개방에 난색 | | | |

III. 해외 FTA 관련동향

호주, 동아시아 주요 3개국 중 한국, 일본과 EPA, FTA 체결

2014년 4월 7일, 호주-일본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타결되고, 양국은 FTA에 공식 서명했다. 특히 양국의 FTA 공식 서명은 2007년 4월 회담을 시작으로 약 7년간 이어진 협상의 결실이다.

EPA는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전망으로, 호주와 일본은 10년 이내에 무역 품목에서 88%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주-일본 EPA는 일본이 체결하는 14번째, 농업 대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EPA로, 농산물 시장 개방 시대에 적극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호주에서의 쇠고기 수입량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호주-일본 FTA로 일본 시장은 호주 상품에 대해 약 9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수입농산물 시장 개방도 이루어져 최대 219%에 달하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데, 쇠고기, 유제품, 해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및 단계 철폐, 완화될 예정이다.

호주의 경우 광물 및 에너지 자원 99.7%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할 예정이다(對일본 수출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한다).

양국 FTA의 주요 쟁점산업은 자동차와 쇠고기이다. 호주는 자동차 2대 중 1대가 일본차로, 현재 호주 판매 완성차 주요 20대 브랜드 중 일본차가 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순위 1위 모델 중 6개가 일본차일만큼 호주내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은 큰 편인데, FTA를 계기로 그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호주 자동차 판매 브랜드 TOP 7

| | 브랜드명 | 판매 대수 | 점유율 |
|---|------------|---------|-------|
| 1 | Toyota | 214,630 | 18.9% |
| 2 | Holden | 112,059 | 9.9% |
| 3 | Mazda | 103,144 | 9.1% |
| 4 | Hyundai | 97,006 | 8.5% |
| 5 | Ford | 87,236 | 7.7% |
| 6 | Nissan | 76,733 | 6.8% |
| 7 | Mitsubishi | 71,528 | 6.3% |



(2013년
호주 판매 1위 모델,
Toyota Corolla)

이미 2005년 발효된 태국-일본 FTA로 혼다, 스즈키 등 주요 일본 자동차의 생산기지인 태국에서 생산된 태국산 일본차는 이미 무관세로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FTA효과까지 감안할 때 우리 업체의 對호주 자동차 판매 전략에도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터키 EU의회 설득 실패

터키가 EU가입을 위한 EU의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터키 내 정국 상황과 키프로스 문제 등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터키의 EU가입은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터키는 3년 반만에 EU가입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터키가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EU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망했으나, 여전히 EU 주요국들은 터키의 언론 검열 등 일련의 조치를 예의 주시한 후에 터키와의 EU가입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 등 일부 법안의 수정이 없다면 EU가입 협상은 지속적으로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시위 및 뇌물 수수사건, 인터넷 검열관련 법규정 검토 등으로 인해 터키의 경제 및 외국인투자자의 하락심리는 갈수록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1월 24일 기준 터키 환율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터키는 현재 17개국과 FTA를 체결중이며, 터키와 우리나라의 FTA는 2013년 5월 1일 발효, 양국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을 10년 내 관세철폐(한국 99.6%, 터키 100%)하기로 합의 했다.

EU,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한시적 철폐, EU-우크라이나 FTA 수순

3월 11일 EU의회는 對우크라이나 상품 수입관세를 2014년 6월부터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입관세 철폐 대상은 공산품의 94.7%와 농축산물의 84%이며, 설탕과 같은 일부 품목들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세철폐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수혜 정도를 연간 5억 유로에 다를 것으로 보고 특히, 對EU 주요 수출품목인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수혜 규모는 연간 3억 유로 정도로 내다봤다.

올해 11월, EU는 우크라이나와의 준회원가입(AA)과 FTA 체결 완료를 희망하고 있는 바 관세철폐 유효기간을 이 시점으로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양방향 FTA체결 이전까지는 경제적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일시적 조치는 일방적(우크라이나→EU)인 우크라이나의 수혜 기간이므로, 한국 교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EU-우크라이나 FTA 체결 시점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이다.

페루, 미국과의 FTA체결 5주년 가장 큰 이익을 본 분야는 '농산물'

페루와 미국간 FTA는 2006년 4월 12일 서명되고, 2009년 2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페루 일간지 디 Peruano는 페루-미국 FTA가 구매력 기준으로 페루보다 180배 큰 거대 북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미국은 2013년 기준 4년 연속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미국과 FTA체결 희망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입국 중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양국간 교역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러시아의 對미국 수출은 2012년 이후 매년 25% 정도씩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고르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미 양국간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우회적인 제안을 보냈다.

러시아의 對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일부 분석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FTA를 원하는 것이 한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 TPP 협상 현황

TPP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도 되었다. 4월 하순경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보기 위해 양국은 3주간의 집중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TPP와 관련된 일본의 관심은 오직 미국의 관세철폐요구에 대해 '관심품목의 수입관세를 얼마나 높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요 관심품목 분야는 쌀, 밀, 유제품, 육류, 설탕 등이다.

일본의 전략은 쇠고기 수입관세를 인하해 호주와의 EPA를 타결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관세 문제에 합의를 도출해 이를 앞세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선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일 간 TPP 예비 양자협정도 지난 3월 6일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금번 예비 양자협약에서는 일본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의 TPP참여분제와 관련한 양국간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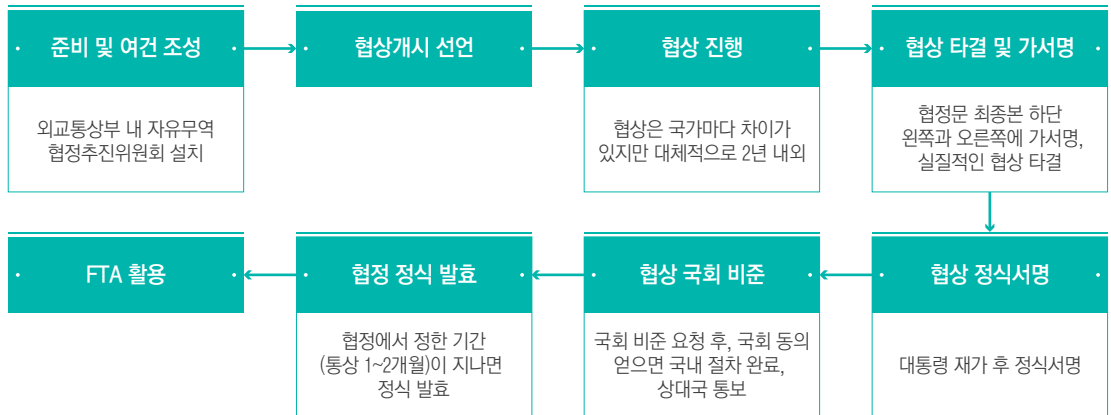
[쉬어가는 페이지] 알기 쉬운 FTA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014. 4)



| | |
|---------------|---|
| · 발효된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
| · 타결된 FTA |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
| · 협상중 FTA | 멕시코, 뉴질랜드, 중국, 일본, 중국-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GCC |
| · 협상 여건조성 FTA | MERCOSUR,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

FTA 체결과정



03

한-터키 FTA 1년,
그 의의와 성과



03

한-터키 FTA 1년, 그 의의와 성과

진병진(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한-터키 FTA 발효 1년, 양국 간 교역에서 확인되는 전체 수출입 및 품목별 수출입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향후 한-터키 FTA의 변화전망을 제시해 본다.

- 분석 배경 : 금년 4월말로 우리나라와 터키가 2년 5개월(2010년 3월~2012년 8월)간의 협상을 통해 타결한 한-터키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터키 FTA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한-터키 FTA의 발효 이후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분석 범위 : 한-터키 FTA발효 이후 성과분석의 범위는 권고 작성 당시 교역통계가 확보되는 한-터키 FTA 발효 후 8개월(2013년 5월~12월) 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의 비교 결과가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년 동기(2012년 5월~12월)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I. 한-터키 FTA의 개관

1. 한-터키 FTA의 체결 동기

터키는 유럽 및 중동과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7,580만에 달하는 많은 인구 및 젊은 소비층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잠재력, 유럽 및 중동시장 등 거대시장과의 인접성 등 유망시장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다.

특히, 역사적 관점에서 당나라에 밀려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기 전까지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던 투르크(돌궐)족의 후예로 삼국시대부터의 우리나라의 우방국으로, 1923년 터키공화국 건국 이후에도 한국전쟁 파병 등을 통해 형제의 나라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오고 있다.

경제개방측면에서 터키는 우리보다 빠른 시기에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6년 1월 1일 EU와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형성하여 무역인증 등 수출입 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다.

또한 터키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FTA체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6년 발효된 EU와의 관세 동맹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와의 FTA 역시 2009년 7월 한국이 EU와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터키 측의 관심이 증대⁷⁾되었고, EU 또한 우리나라에 터키와 가능한 조속히 FTA협상을 개시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⁸⁾.

터키의 FTA체결 희망 의사에 대해 우리나라도 유럽 및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터키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시장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한-터키 FTA를 체결하였다.

7) 터키-EU 관세동맹협정 제16조에는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터키도 그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

8) "The Community recalls that according to the Customs Union in force between the Community and Turkey, the latter has the obligations relation to countri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Community to align itself on the Common Customs Tariff and, progressively, with the preferential customs regime of the Community,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and negotiating agreements on mutually advantageous basis with the countries concerned., Consequently, the Community had invited Korea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urkey as soon as possible"(Joint Declaration on Turke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2009).

/ <그림 1-1>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 /



/ <표 1> 한-터키 FTA 추진 경과 /

| 일시 | 내용 | 장소 |
|-----------------|-----------------------------|-----|
| 2008.01. | 터키, 한국과의 FTA 체결 제안 | |
| 2008.06. |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 |
| 2008.09.25. | 한-터키 FTA 제1차 공동연구 회의 | 서울 |
| 2009.03.26. | 한-터키 FTA 제2차 공동연구 회의 | 앙카라 |
| 2009.05. | 한-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 |
| 2010.03.19. | 한-터키 통상장관회담에서 FTA협상 출범 선언 | 앙카라 |
| 2010.04.26.-30. | 한-터키 FTA 제1차 협상 | 앙카라 |
| 2010.07.19.-23. | 한-터키 FTA 제2차 협상 | 서울 |
| 2011.03.07.-11. | 한-터키 FTA 제3차 협상 | 앙카라 |
| 2012.03.07.-10. | 한-터키 FTA 제4차 협상 | 서울 |
| 2012.03.26. |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 |
| 2012.08.01. |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 |
| 2012.08.29.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
| 2012.11.23.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2013.01.10.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터키 의회 통과 | |
| 2013.05.01. | 한-터키 FTA 발효 | |
| 2014.04.30. | 한-터키 FTA 발효 1주년 | |

2. 한-터키 FTA의 주요 내용

한-터키 FTA는 서비스 및 투자협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협정이다.⁹⁾ 또한 농수축산물 등 우리의 민감 품목을 보호한다는 FTA추진전략이 충분히 발휘된 협정으로 ①공산품 전 품목의 7년 내 관세철폐, ②기 체결된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조치 확보, ③원산지 자율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FTA활용도 제고, ④관세환급 허용 및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등 많은 이익이 확보된 협정이기도 하다.

특히, 터키 측이 지속적인 양국 간 교역불균형을 이유로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쇠고기·돼지고기·신선과일·양념채소류 등 농수산물 민감 품목 모두 양허에서 제외되고 농수산물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를 동등 수준에서 양허함으로써 농수산물 분야에서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확보되었다.

한-터키 FTA에서는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9.6%, 터키는 10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품목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 철폐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상품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공산품은 양측 모두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철폐, 농수산물 양허품목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6.8%, 터키가 56.8%이고 수입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95.7%, 터키가 97.3%로 유사하나 단기철폐(5년 이내 철폐) 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터키가 70.4%로 우리나라의 48.0%보다 높고 특히, 40.7%에 해당하는 우리 측 민감 농수산물이 양허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양허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 장기관세철폐 등의 조치가 확보되어 있어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며, 농수산물 對터키 최대 수출품 및 수출 유망 품목¹⁰⁾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증대에 기여 가능하다.

/ <표 2> 한-터키 FTA 제조업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 양허유형 | 한국 주요 품목 | 터키 주요 품목 |
|-----------|---|--|
| 즉시철폐 |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모자, 냉장고, 아연판, 의류용기기, 양탄자, 광물성연료(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 | 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섬유판, 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 합판, 신변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
| 3년 철폐 |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 차량용 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가열난방기, 원동기와 펌프, 볼트와 너트, 기타산업기계 |
| 5년 철폐 |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쉬트, 화강암, 가솔린 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냉장고, 일부 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
| 7년 비선형 철폐 | - |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 세션) |
| 7년 철폐 | 양모사, 섬유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 양모 및 섬유모 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

9) 한-터키 FTA는 포괄적인 FTA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단일협정문을 한-ASEAN FTA방식인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으로 분리하여 상품무역협정을 우선 타결하고, 서비스·투자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포괄적인 FTA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고, 금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전망

10) 인스턴트커피, 담배,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량어 등

II. 한-터키 FTA의 활용상 특징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통한 한-EU FTA 동시 활용

한-터키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동물성 생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한-터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도 동시 활용 가능하다¹¹⁾.

한-터키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유사한 이유는 터키가 1964년 EU와 제후협정을 맺어 일종의 준회원국 자격을 취득한 후, 1987년부터 EU에 정식 가입을 시도하게 되고, 1996년 EU와의 관세동맹이 정식 발효되게 되어 향후 EU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EU와 제3국이 맺은 FTA의 협정을 거의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3> 한-터키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

(단위 : 개)

| 구분 | 완전생산 | 세번변경 | 부가가치 | 가공공정 | 선택기준 | 결합기준 | 기타유형 |
|-----|------|-------|------|------|-------|------|------|
| 터 키 | 411 | 1,225 | 302 | 858 | 1,983 | 259 | 14 |
| EU | 411 | 1,218 | 302 | 858 | 1,983 | 266 | 14 |

주 : 1. 각 유형별 개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2. 협정에서 '특정한 공정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와 '특정 물품으로부터의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가공공정기준으로 분류

3. '기타유형'에는 특정재료의 중량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 일반적 기준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를 분류

2. 간소화된 원산지증명 절차

한-터키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수출자 자율발급으로 특별히 규정된 양식 없이 운송장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문구를 기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한-EU FTA와 비교해 보아도 한-EU FTA가 6,000유로 이상의 수출을 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¹²⁾을 취득하여야만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출자의 FTA활용 편의가 확보되어 있다.

11) 특히, 설탕과제(HS 제1704호)·초콜릿 함유 식품(HS 제1806호)·기타 비스킷(HS 제1905.90호) 등의 경우 한-EU FTA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는 세번변경기준 1가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되어 있어 보다 쉽게 FTA활용 가능

12) 인증수출자는 수출업체에게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협정 및 모든 생산품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HS 6단위 기준으로 특정 협정 및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작성방법 〉

- 1) 한-EU FTA :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 2) 해당물품의 원산지 기재(예 : 한국산인 경우 'KR')
- 3) 원산지증명서 작성 장소 및 작성일 기재*상업서류에 이들 정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4) 수출자의 성명을 명확하게 적고 서명.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 가능

3. 일부품목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화

한-터키 FTA에서는 HS 4단위 기준으로 59개 세번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적용 시 동일 호(Heading)가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생산자의 재료선택 폭을 확대함으로써 FTA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원칙적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호(Heading)에 분류되는 비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한-터키 FTA에서는 동일한 호(Heading)에 분류되는 비원산지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다 하더

라도 계약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 및 수출자의 재료선택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FTA활용 편의가 확대되어 있다¹³⁾.

이들 물품의 경우 원재료의 선택에 있어 동일 세번 분류 물품은 원산지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다른 협정들에 비해, 보다 저렴하거나 양질의 비원산지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생산자 및 수출자의 FTA활용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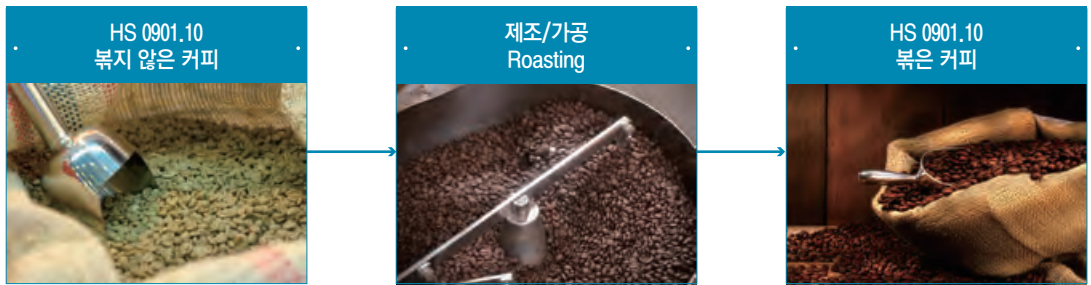
¹³⁾ 일반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약어로 표시할 때 'CTH(Change of Tariff Heading)'를 사용하는데, 한-터키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동일 호가 포함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이와 구분하기 위해 'within CTH'를 사용

/ <표 4> 한-터키 FTA HS 류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동일 호 포함 현황 /

| | | | | | | | | | | | |
|----|----|----|----|----|----|----|----|----|----|----|----|
| 류 | 09 | 류 | 15 | 류 | 25 | 류 | 38 | 류 | 68 | 류 | 81 |
| 개수 | 3 | 개수 | 4 | 개수 | 4 | 개수 | 1 | 개수 | 1 | 개수 | 13 |
| 류 | 11 | 류 | 19 | 류 | 27 | 류 | 39 | 류 | 71 | 류 | 95 |
| 개수 | 1 | 개수 | 2 | 개수 | 15 | 개수 | 1 | 개수 | 3 | 개수 | 1 |
| 류 | 13 | 류 | 21 | 류 | 30 | 류 | 44 | 류 | 74 | 류 | 96 |
| 개수 | 1 | 개수 | 1 | 개수 | 2 | 개수 | 2 | 개수 | 1 | 개수 | 3 |

주 : 한-EU FTA도 한-터키 FTA와 동일한 수준(HS 4단위 59개 세번)의 완화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 적용사례 > '볶음(Roasting) 공정'만으로 커피의 FTA특혜 혜택 가능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FTA특혜활용)

한-터키 FTA에서 '동일 호가 포함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HS 제0901호의 커피의 경우 볶지 않은 커피(HS 제0901.10호)를 수입(비원산지물품)하여 체약당사국에서 볶음(roasting)공정을 거쳐 볶은 커피(HS 제 0901.20호)를 생산한 경우 4단위 수준에서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인정되어 FTA특혜수출 가능

4. 엄격한 영해 밖 채포 수산물의 완전생산물품 인정범위 설정

한-터키 FTA에서는 영해 밖에서 어로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수산물의 완전생산품 인정요건인 당사국 선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여타의 협정들이 당사국 선박의 인정요건으로 '당사국에 등록되고 조업 당시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는 50% 이상의 소유권이 당사국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 <표 5> 협정별 당사국 선박 인정요건 /

| 국기게양 | 국기게양+등록 | 국기게양+등록+소유 |
|--------|--|------------|
| 한-EFTA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인 CEPA, 한-아세안, 한-미, 한-페루, 한-콜롬비아 | 한-터키, 한-EU |

III. 한-터키 FTA 활용성과

1. 對터키 교역동향

1) 연도별 교역 동향

對터키 수출은 1997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4년 20억 달러, 2006년 30억 달러, 2007년 40억 달러, 2011년 5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의 수출액인 56.6억 달러를 기록하여 향후 한-터키 FTA가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對터키 수입의 경우 1990년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8년에 들어서야 2억 달러를 넘어선 2.8억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졌고 2010년 5.1억 달러, 2011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8억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진 이후 한-터키 FTA 발효 직전인 2012년에는 전년보다 16.4%가 줄어든 6.7억 달러,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에는 이보다 조금 증가한 6.9억 달러가 수입되었다.

우리나라와 터키의 교역은 2013년말 기준 63.5억 달러로 이중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56.6억 달러이고 수입은 6.9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터키에 대해 49.6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는 과도한 출초구조를 이루었다.

무역수지흑자 확대 기초는 2014년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 1~2월 발생한 무역수지 흑자는 864백만 달러로 對터키 교역에서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던 2013년 동기의 562백만 달러와 비교해 보아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기반 강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계속해서 무역수지흑자폭이 확대 될 경우 터키의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적 개방 압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표 6> 우리나라와 터키 교역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1~2 |
|----|------------------|-----------------|-----------------|------------------|-----------------|------------|
| 수출 | 2,661 (-29.5) | 3,753 (41.1) | 5,070 (35.1) | 4,552 (-10.2) | 5,658 (24.3) | 988 (-) |
| 수입 | 434 (20.0) | 516 (18.8) | 805 (55.8) | 672 (-16.4) | 692 (2.9) | 123 (-) |
| 수지 | 2,226 (-35.8) | 3,237 (47.7) | 4,266 (31.8) | 3,879 (-9.1) | 4,966 (28.0) | 864 (-) |

2) 협정 발효 전후 교역 동향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한-터키 FTA 발효(2013.5.1)를 기준으로 8개월간 3.0% 증가한 반면, 터키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39.0%가 늘어나는 급성장을 보였다.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세계 수출이 2012년 대비 2013년 2.1% 증가에 그친 반면 터키 수출은 24.3% 증가하여 한-터키 FTA발효가 터키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터키에서의 수입은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개월간 15.1% 증가한 46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입 또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출증가폭과 금액이 수입증가폭과 금액을 상회함으로써 한-터키 FTA 발효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터키 무역수지흑자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만을 놓고 볼 때 전체 수입증가율은 2.9%에 불과하나,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입증가율은 15.1%에 달해 수출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가 우리나라의 터키로부터의 수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터키와의 교역이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01%, 수입이 0.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한-터키 FTA발효 후 역대 최고의 교역량을 기록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한-터키 FTA발효 직전인 2013년 1~2월의 교역액이 756백만 달러인데 반해, 2014년 1~2월의 교역액은 이와 비교하여 63.2% 증가한 1,234백만 달러로 이러한 교역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해 기간 동안의 교역액을 비교해 볼 때 수출은 2013년 1~2월의 661백만 달러에서 49.5% 늘어난 988백만 달러, 수입은 99백만 달러에서 24.2% 늘어난 12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발효 2년차인 금년에는 발효 직후에 비해 양국 간 교역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표 7> 우리나라와 對세계 및 對터키 교역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 2012년도 | | | 2013년도 | | | |
|-----|--------|--------------------|--------------------|------------------|------------------|-------------------|------------------|
| | 수출 | 수입 | 수지 | 수출 | 수입 | 수지 | |
| 對세계 | 전체 | 547,870 (-10.2) | 519,584 (-16.4) | 28,285 (-8.2) | 559,632 (2.1) | 515,586 (-0.8) | 44,047 (55.7) |
| | 5~12월 | 366,929 (-2.3) | 341,957 (-4.1) | 24,972 (27.4) | 378,157 (3.0) | 342,205 (0.1) | 35,952 (43.9) |
| 對터키 | 전체 | 4,552 (-10.2) | 672 (-16.4) | 3,879 (-9.1) | 5,658 (24.3) | 692 (2.9) | 4,966 (28.0) |
| | 5~12월 | 2,877 (-15.8) | 404 (-22.5) | 2,473 (-14.6) | 3,999 (39.0) | 465 (15.1) | 3,534 (42.9) |

2. 품목군별 수출 동향

1) 전체 수출 동향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MTI 1단위 기준으로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며,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한-터키 FTA발효 이후 전년 대비 65.1% 증가한 9천 6백만 달러가 수출되어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기계류는 최근 5년간 對터키 수출액의 4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발효 연도인 2013년의 경우 수출비중이 40% 이하로 떨어졌지만 금액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타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13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초로 수출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12.9억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한-터키 FTA 발효 전 석유제품에 대해 3.5~4.7%와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0~6.5%의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발효 즉시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자전기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연도인 2013년 단일 연도 최초로 10억 달러에 근접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터키의 당해 제품군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0~14% 수준으로 비교적 높아 관세철폐 기간이 즉시 또는 7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나 관세의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표 8> 품목별(MTI 1단위) 對터키 수출증감률 /

(단위 : 천 달러,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계 | 2,660,688 (100.0) | 3,752,906 (100.0) | 5,070,997 (100.0) | 4,551,618 (100.0) | 5,658,180 (100.0) |
| 농림수산물 | 7,540 (0.3) | 4,075 (0.1) | 13,405 (0.3) | 11,528 (0.3) | 10,455 (0.2) |
| 광산물 | 3,521 (0.1) | 6,250 (0.1) | 85,758 (1.7) | 12,936 (0.3) | 9,312 (0.2) |
| 화학공업제품 | 433,284 (16.3) | 611,096 (16.3) | 810,643 (16.0) | 776,581 (17.1) | 1,297,387 (22.9) |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112,997 (4.2) | 147,423 (3.9) | 228,383 (4.5) | 226,965 (5.0) | 273,012 (4.8) |
| 섬유류 | 182,164 (6.8) | 271,787 (7.2) | 297,601 (5.9) | 230,670 (5.1) | 275,474 (4.9) |
| 생활용품 | 18,139 (0.7) | 21,616 (0.6) | 20,863 (0.4) | 16,377 (0.4) | 18,959 (0.3) |
| 철강금속제품 | 262,893 (9.9) | 353,267 (9.4) | 437,655 (8.6) | 467,621 (10.3) | 596,691 (10.5) |
| 기계류 | 1,134,918 (42.7) | 1,729,946 (46.1) | 2,445,691 (48.2) | 2,132,891 (46.9) | 2,159,944 (38.2) |
| 전자전기제품 | 435,708 (16.4) | 534,280 (14.2) | 670,596 (13.2) | 583,995 (12.8) | 964,230 (17.0) |
| 잡제품 | 69,526 (2.6) | 73,167 (1.9) | 60,401 (1.2) | 92,054 (2.0) | 52,716 (0.9) |

주 : ()내는 당해 연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한-터키 FTA발효 전후 수출 동향

수출 증가 품목 7개, 감소 품목 3개, 전체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 39.0%, FTA발효 이후 상당한 수준의 수출증대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확인

(수출증가품목) 전자전기제품 > 화학공업제품 > 철강금속제품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섬유류 > 생활용품 >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출액의 77.7%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또한 103.2%에 달해 0~1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터키의 수입관세율이 높게 책정(0~14%)되어 있는 동 품목군의 특성상 관세인하효과가 수출증대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터키의 전자전기제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중국(25%)과 슬로바키아(21%)에 이어 1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3위(2011년말 기준)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을 바짝 추격하여 터키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공업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출액의 73.8%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또한 93.6%에 달해 관세의 즉시 철폐 및 인하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재확인하는 사례이다.

기타 수출이 증가한 5개 품목군 중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을 제외한 4개 품목군은 수출증가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액이 극히 적었던 2012년을 제외하고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한-터키 FTA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수출증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수출감소품목) 잡제품 >광산물 >농림수산물

가장 감소폭이 큰 잡제품의 경우 2012년도 수출액이 평년 보다 월등히 높았던 관계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감소 금액 기준으로도 평년에 비해 낮은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10% 이상 수출이 감소한 광산물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출액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수출액이 극히 높았던 2011년~2012년을 제외한 평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2.8%의 수출 금액이 감소한 농림수산물 또한 광산물과 같이 수출액이 높았던 2011년~2012년을 제외하고는 평년 수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표 9> 한-터키 FTA발효 전후 품목별(MTI 1단위) 수출동향 /

(단위 : 천 달러, %)

| 구분 | 전년 동기 (2012.5~12) | | 발효 후 8개월 (2013.5~12) | | 증감율 (B/A) |
|---------------|----------------------|-------|-------------------------|-------|--------------|
| | 금액(A) | 비중 | 금액(B) | 비중 | |
| 합 계 | 2,877,415 | 100.0 | 3,998,969 | 100.0 | 39.0 |
| 농림수산물 | 7,709 | 0.3 | 7,497 | 0.2 | -2.8 |
| 광산물 | 6,409 | 0.2 | 5,751 | 0.1 | -10.3 |
| 화학공업제품 | 494,549 | 17.2 | 957,438 | 23.9 | 93.6 |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150,363 | 5.2 | 189,864 | 4.7 | 26.3 |
| 섬유류 | 153,346 | 5.3 | 188,541 | 4.7 | 23.0 |
| 생활용품 | 11,015 | 0.4 | 12,347 | 0.3 | 12.1 |
| 철강 금속제품 | 302,667 | 10.5 | 418,943 | 10.5 | 38.4 |
| 기계류 | 1,310,566 | 45.6 | 1,430,260 | 35.8 | 9.1 |
| 전자전기제품 | 369,052 | 12.8 | 749,613 | 18.8 | 103.1 |
| 잡제품 | 71,739 | 2.5 | 38,715 | 1.0 | -46.0 |

3)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출 상위 품목군의 수출 주도 물품

여기에서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출금액 기준으로 對터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3대 수출 품목군(MTI 1단위 기준)인 기계류·화학공업제품·전자전기제품의 수출 상위 물품을 살펴본다.

(기계류) 기계류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터키로 수출된 품목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을 기록한 품목군으로 이중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및 건설광산기계가 기계류 수출을 견인차 역할하였다.

자동차 중에서는 압축점화식의 2,500CC이하의 (승용)차량이 1.8억불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건설광산기계의 경우 지게차의 수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터키의 수입 관세율은 5~10% 수준으로 품목에 따라 한-터키 FTA발효 이후 즉시~7년의 기간을 두고 비선형 철폐되도록 되어 있는데, 터키의 자동차 분야는 가장 활발한 산업분야 중 하나로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내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완성차와 부품 분야 모두 동시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화학공업제품)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합성수지와 기타석유화학제품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들은 한-터키 FTA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전기제품) 전자전기제품은 터키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게 되어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0> 수출주도 3대 품목군 수출현황 /

(단위 : 천 달러, %)

| 품명 | | 총수출액 | FTA대상 수출액(a) | FTA적용 수출액(b) | FTA활용률 (b/a) |
|---------|--------------|---------|--------------|--------------|--------------|
| MTI 1단위 | MTI 3단위 | | | | |
| 기계류 | 자동차부품 | 378,982 | 247,024 | 172,380 | 69.8 |
| | 자동차 | 337,385 | 215,046 | 204,108 | 94.9 |
| | 건설광산기계 | 249,359 | 14,977 | 10,666 | 71.2 |
| 화학공업제품 | 합성수지 | 734,816 | 490,054 | 415,063 | 87.7 |
| | 기타석유화학제품 | 107,393 | 74,282 | 62,371 | 84.0 |
| | 합성고무 | 96,750 | 0 | 0 | 0.0 |
|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424,210 | 1,116 | 766 | 68.6 |
| 전자전기제품 | 무선통신기기 | 113,238 | 11,185 | 5,148 | 46.0 |
| | 영상기기 | 79,803 | 77,340 | 74,959 | 96.9 |

주 : 1. FTA활용률은 '실제특혜관세혜택 수출/특혜관세자격 수출'로 계산
 2. 수출기간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2013년 5월~12월) 기준

14) 터키는 연간 약 30만대의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승용차가 2/3정도로 승용차 수입비중이 높으며, 터키 국민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인구 1,000명당 75대 수준으로 EU평균인 450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내수시장 확대 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전자전기제품군 중 수출금액기준으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무선통신기기가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나, 이들 두 개 품목은 발효 초기 관세인하폭이 적고 FTA활용 실익이 발생하는 물품 또한 적어 즉각적인 FTA수혜 품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품목군별 수입 동향

1) 전체 수입 동향

우리나라의 터키 수입은 MTI 1단위 기준으로 광산물과 화학공업제품 및 기계류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며, 농림수산물의 경우 한-터키 FTA발효 이후 전년 대비 55.6% 증가한 7천6백만 달러가 수입되어 최대의 수입실적을 달성했다.

/ <표 11> 품목별(MTI 1단위) 터키 수입증감률 /

(단위 : 천 달러,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계 | 434,435 (100.0) | 516,290 (100.0) | 804,624 (100.0) | 672,311 (100.0) | 691,835 (100.0) |
| 농림수산물 | 47,693 (11.0) | 53,607 (10.4) | 53,174 (6.6) | 49,276 (7.3) | 76,664 (11.1) |
| 광산물 | 165,595 (38.1) | 135,308 (26.2) | 329,207 (41.0) | 329,970 (49.1) | 226,153 (32.7) |
| 화학공업제품 | 22,419 (5.2) | 45,976 (8.9) | 55,963 (6.9) | 42,673 (6.3) | 116,607 (16.9) |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6,693 (1.6) | 13,365 (2.6) | 13,491 (1.7) | 13,772 (2.0) | 19,146 (2.8) |
| 섬유류 | 37,972 (8.7) | 51,425 (10.0) | 56,189 (7.0) | 62,960 (9.4) | 67,753 (9.8) |
| 생활용품 | 3,611 (0.8) | 8,652 (1.7) | 14,575 (1.8) | 15,215 (2.3) | 13,347 (1.9) |
| 철강금속제품 | 27,394 (6.3) | 17,096 (3.3) | 29,483 (3.7) | 21,906 (3.3) | 28,669 (4.1) |
| 기계류 | 93,496 (21.5) | 161,405 (31.3) | 211,235 (26.2) | 104,418 (15.5) | 107,046 (15.5) |
| 전자전기제품 | 29,434 (6.8) | 29,183 (5.6) | 41,022 (5.1) | 31,849 (4.8) | 36,053 (5.2) |
| 잡제품 | 128 (0.0) | 273 (0.0) | 284 (0.0) | 271 (0.0) | 396 (0.0) |

주 : () 내는 당해 연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산물은 한-터키 FTA 발효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2010년도를 제외하고 터키 수입액의 3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31.5%가 감소한 2억2천6백만 달러가 수입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13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초로 수입 1억 달러를 상회하는 1.2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증가 원인과 마찬가지로 한-터키 FTA 발효 전 석유제품에 대해 0~8%와 석유 화학제품에 대해 3~8%의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발효 즉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어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계류는 한-터키 FTA발효 연도인 2013년 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입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로 높은 편이나, 금액 및 비중 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터키 FTA발효 전후 수입 동향

수입 증가 품목이 7개, 감소 품목 3개, 전체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수입시장에서도 터키와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수입증가품목) 철강금속제품 > 화학공업제품 > 농림수산물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전자전자제품 > 기계류 > 섬유류

화학공업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입액의 52.2%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96.9%로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증가요인과 같이 FTA발효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수입을 증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농림수산물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입액의 71.7%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 또한 67.6%에 달해 상대적으로 수입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동 품목군의 특성상 관세인하효과가 수입증대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은 최근 5년간 2010년도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하이던 것이 2.8%로 증가하였고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수입증가율이 40.3%로 매우 높은 수준의 수입증대효과가 발생했다.

기타 수입이 증가한 품목군 중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개월에 전체 2013년도 전체 수입의 73.2%가 집중되었고, 기계류와 섬유류의 수입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감소품목) 잡제품 > 광산물 > 생활용품

가장 감소폭이 큰 잡제품의 경우 전체 수입액은 2012년도를 비해 증가하였으나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입실적이 감소했다.

광산물의 경우 잡제품 다음으로 수입액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2012년도 수입액이 평년보다 월등히 높았던 관계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수입금액이 많았던 2011년~2012년을 제외하고 높은 수입금액을 기록했다.

생활용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6.5%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해 연도 총수입액과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2> 한-터키 FTA발효 전후 품목별(MTI 1단위)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

| 구분 | 전년 동기 (2012.5~12) | | 발효 후 8개월 (2013.5~12) | | 증감율 (B/A) |
|---------------|----------------------|-------|-------------------------|-------|--------------|
| | 금액(A) | 비중 | 금액(B) | 비중 | |
| 합계 | 404,370 | 100.0 | 465,267 | 100.0 | 15.1 |
| 농림수산물 | 32,809 | 8.1 | 55,003 | 31.5 | 67.6 |
| 광산물 | 188,604 | 46.6 | 161,630 | 27.0 | -14.3 |
| 화학공업제품 | 30,890 | 7.6 | 60,819 | 10.2 | 96.9 |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10,464 | 2.6 | 14,686 | 2.5 | 40.3 |
| 섬유류 | 42,695 | 10.6 | 45,174 | 7.5 | 5.8 |
| 생활용품 | 9,954 | 2.4 | 9,304 | 1.6 | -6.5 |
| 철강금속제품 | 9,236 | 2.3 | 22,372 | 3.7 | 142.2 |
| 기계류 | 59,710 | 14.8 | 69,748 | 11.6 | 16.8 |
| 전자전기제품 | 19,857 | 4.9 | 26,408 | 4.4 | 32.9 |
| 잡제품 | 151 | 0.0 | 123 | 0.0 | -18.5 |

3)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입 상위 품목군의 수입 주도 물품

여기에서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금액기준으로 터키로부터의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3대 수입 품목군(MTI 1단위 기준)인 광산물·기계류·농림수산물의 수입 상위 물품을 살펴본다.

(광산물) 광산물은 2013년 터키로부터 수입된 품목중 수입금액 비중이 32.7%로 가장 높으며 FTA발효 이후 8개월 간의 경우에도 27.0%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다.

터키로부터 수입된 광산물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물품은 석유제품으로 이들 제품은 FTA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것이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계류) 기계류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터키로부터 수입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입금액을 기록한 품목군으로 이중 자동차부품과 원동기 및 펌프의 수입액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계류의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3대 품목의 관세 혜택이 발효 즉시 0%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재 50% 이하에 머물러 있는 FTA활용률이 개선될 경우 이들 품목을 위주로 한 수입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식물성 물질과 기호식품, 어육 및 어란의 순으로 수입되었으며, 가장 수입금액이 많았던 식물성물질은 사료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다음으로 기타식물성유지와 식물성액즙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3> 수입주도 3대 품목군 수입현황 /

(단위 : 천 달러, %)

| 품명 | | 총수입액 | FTA대상 수입액(a) | FTA적용 수입액(b) | FTA활용률 (b/a) |
|---------|----------|---------|-----------------|-----------------|-----------------|
| MTI 1단위 | MTI 3단위 | | | | |
| 광산물 | 석유제품 | 182,903 | 182,876 | 131,947 | 72.2 |
| | 기타비금속광물 | 12,111 | 12,106 | 6,460 | 53.4 |
| | 금은 및 백금 | 11,645 | 2,701 | 0 | 0.0 |
| 기계류 | 자동차부품 | 51,843 | 51,842 | 22,567 | 43.5 |
| | 원동기 및 펌프 | 15,706 | 15,697 | 2,444 | 15.6 |
| | 기계요소 | 13,732 | 13,654 | 6,406 | 38.5 |
| 농림수산물 | 식물성물질 | 20,866 | 3,030 | 1,187 | 39.2 |
| | 기호식품 | 18,380 | 15,593 | 1,720 | 11.0 |
| | 어육 및 어란 | 11,829 | 11,829 | 0 | 0.0 |

주 : 1. FTA활용률은 '실제특혜관세혜택 수입/특혜관세자격 수입'으로 계산
 2. 수입기간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2013년 5월~12월) 기준



터키 공화국
(Republic of Turkey)

수도 : 앙카라

언어 : 터키어

면적 : 783,562km²

인구 : 약 81,619,392명 (세계 16위)

종교 : 이슬람교 99%

터키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많아 형제의 나라라고도 부른다. 터키인의 조상은 훈족과 튀르크족으로, 한자식 이름은 흉노와 돌궐이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연합군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이 전쟁에서 많은 터키 군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터키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매우 친하게 생각하여 칸카르데쉬, 즉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부른다.

04

FTA 산업별 FTA이행 현황과 전망



04

FTA 산업별 FTA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업 부문

송경은(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 분석 배경 :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농림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협상 때마다 농림수산물은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개별 FTA별 농림수산물의 교역현황 및 특혜수출입 동향을 통해 협정별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본다.
- 분석 범위 : 농림수산물(MTI 1단위 기준)

I. 농림수산물의 교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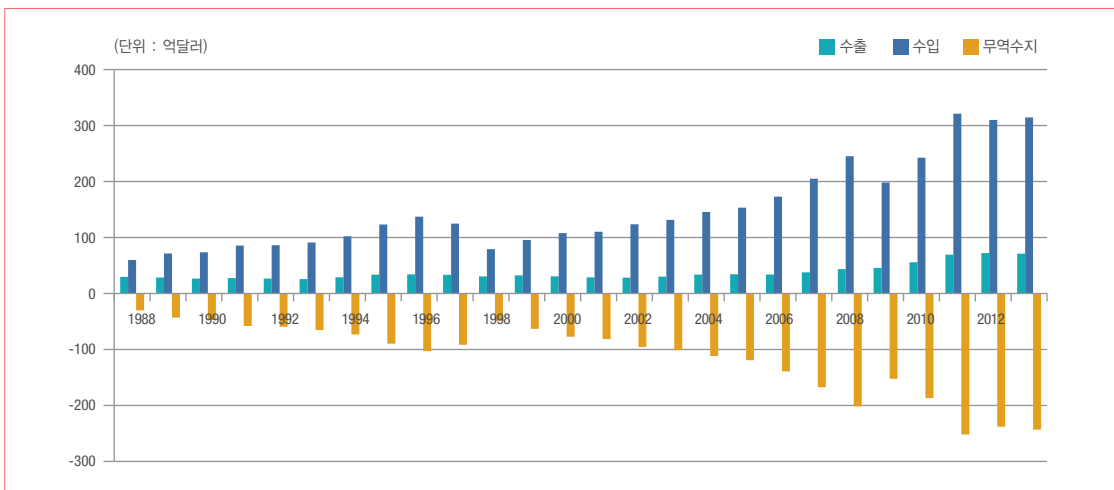
1. 전체 교역동향

우리나라 농림수산물¹⁵⁾과 관련한 2013년 對세계 수출은 71억 달러, 수입은 31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4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2, 3차로 고도화 되면서 농림수산물은 전체 수출의 약 1.3%, 수입의 약 6.1%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원천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최근 건강·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농림수산물 교역의 특징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의 수출 급성장을 꼽을 수 있다. 1995년 30억달러대에서 2008년 40억달러대를 달성한 이후 최근 5년 사이 72억 달러까지 급성장하였다.

/ <그림 1> 농림수산물의 무역현황 (1988~2012) /



15) 본 글에서 농림수산물은 MTI 1단위 기준을 의미한다.

／〈표 1〉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입 ／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 수출 | | | 수입 | | |
|-------|-------|-------|---------|--------|--------|---------|
| | 對세계 | 對FTA | FTA 점유율 | 對세계 | 對FTA | FTA 점유율 |
| 2012년 | 7,214 | 1,964 | 27.2 | 31,010 | 16,081 | 51.9 |
| 2013년 | 7,123 | 2,151 | 30.2 | 31,442 | 16,008 | 50.9 |

한편 농림수산물 수입의 경우 최근 5년간 5.1%로 수출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수출의 4배 이상으로 농수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FTA 시작 시점으로 보면, 농림수산물 수입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145.6억달러에서 2013년 314.4억 달러로 약 2.2배 증가하였다.

2013년 농림수산물의 FTA 체결국으로 수출은 21.5억 달러, 수입은 16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농림수산물의 對FTA 체결국 수출 비중은 2012년 27.2%에서 2013년에 30.2%로 약 3%p.가량 증가하였다. 수입 비중은 2012년 51.9%에서 2013년 50.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의 타결에 따라 FTA국과의 무역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주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제4위 수입국으로 주요 대상국이다.

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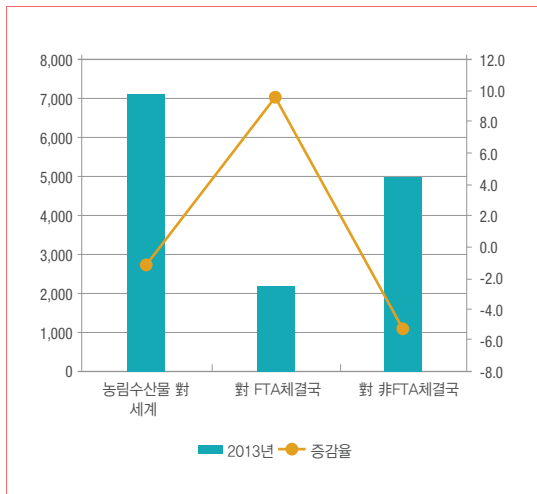
FTA 체결국 중심의 수출 증가

(FTA 체결국 전년대비 9.5% 수출 증가, 비FTA 체결국 -5.3% 감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對세계수출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하였는데, FTA 체결국으로는 9.5% 증가한 반면, 비체결국으로는 -5.3% 감소하였다.

／〈그림 2〉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증감률 (2013) ／

(단위 : 백만달러, %)



／〈표 2〉 농림수산물 상위 10대 수출국 (2013) ／

(단위 : 백만달러, %)

| 순위 | 국가 | 금액 | 증감률 |
|----|----------|-------|-------|
| 1 | 일본 | 7,123 | -1.3 |
| 2 | 중국 | 2,033 | -12.2 |
| 3 | 미국 | 1,151 | 5.1 |
| 4 | 베트남 | 680 | 12.4 |
| 5 | 홍콩 | 382 | 25.4 |
| 6 | 태국 | 358 | 30.4 |
| 7 | 대만 | 257 | -14.5 |
| 8 | 러시아 연방 | 244 | 12.3 |
| 9 | 아랍에미리트연합 | 230 | -3.5 |
| 10 | 인도네시아 | 188 | -15.2 |
| | 기타 | 147 | 15.5 |
| | 총계 | 1,452 | -4.1 |

농림수산물 수출은 FTA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로의 높은 수출 성장세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의 국가별 수출 동향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상위 10대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순으로 상위 10위 가운데 FTA 체결국은 미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39.0%), 태국(20.1%) 등 ASEAN 국가들이다.

최근 우리 농림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한류 열풍에 의한 인지도 상승 등으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수출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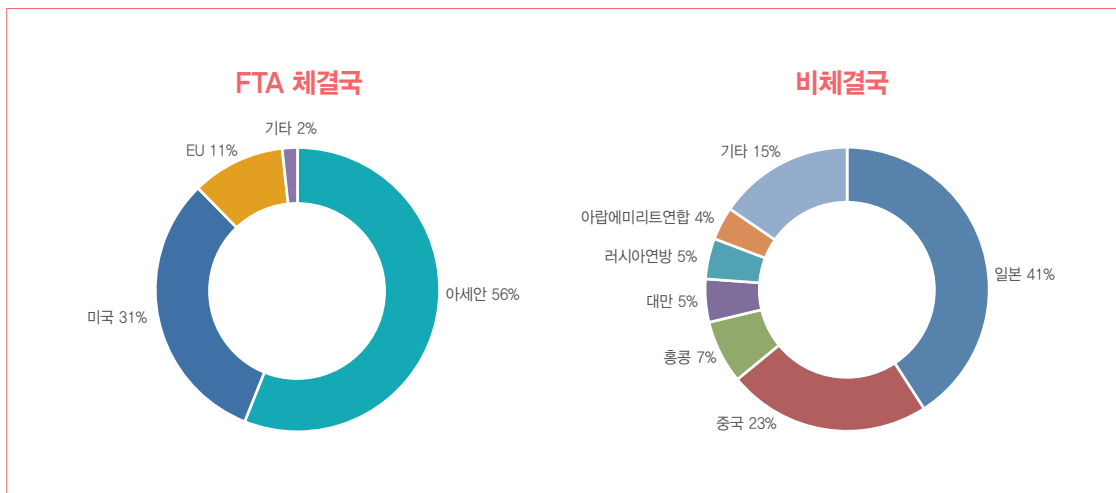
對FTA 수출 : 미국, EU, ASEAN 등이 98.3% 점유

2013년 FTA 체결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 가운데 약 12.1억달러(56.1%)는 ASEAN으로 6.8억달러(31.6%)는 미국, 2.3억달러(10.6%)는 EU로 수출되어 세 국가(군)가 98.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 밖에 FTA 체결국인 인도, 터키, EFTA, 칠레, 페루 등은 도합 0.4억달러(1.7%) 수준에 불과하다.

FTA 비체결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은 일본 20억달러(40.9%), 중국 11.5억달러(23.2%) 등 주변국이 64.1%를 점유하고 있으며, 홍콩 3.6억달러(7.2%), 대만 2.4억달러(4.9%)를 점유하고 있다. 즉 농림수산물의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은 아세안과 더불어 선진경제권인 미국과 EU에 집중, 비체결 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요약된다.

/ <그림 3> 농림수산물의 국가별 수출 비중(2013) /

(단위 : %)



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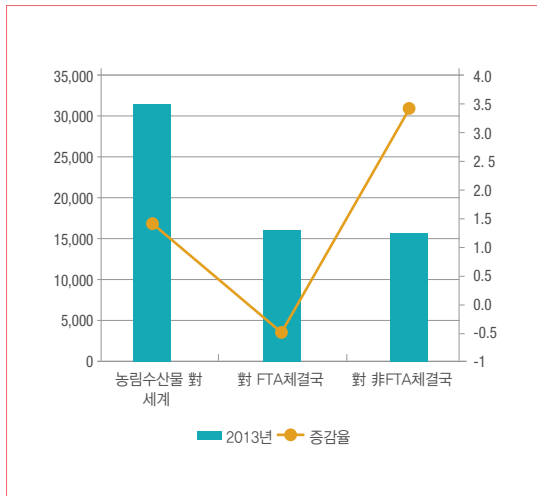
FTA 체결국 전년대비 -0.5% 수입감소, 주요 수입품목의 작황 등 생산충격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對세계 수입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는데, FTA 체결국으로는 -0.5% 감소한 반면, 비FTA체결국으로는 3.4%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 농림수산물의 국가별 수입은 [표 3]과 같다. 주변의 제1위 수입국인 對미국 전년대비 -9.0% 수입 감소, 제2위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전년대비 10.4%의 수입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2013년 제3위 수입국으로 부상한 브라질로부터의 무려 전년대비 31.4%에 달하는 수입증가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2013년 비FTA체결국으로의 수입증가 원인은 최근 북미대륙의 가뭄으로 인한 미국의 옥수수 작황악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료작물의 수입선을 미국에서 브라질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그림 4> 농림수산물의 수입액과 증감률 (2013) /

(단위 : 백만달러, %)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의 국가별 수입 동향은 다음의 [표 3]와 같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상위 10대 수입국은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태국 순으로 상위 10위 가운데 FTA 체결국은 미국, 태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아르헨티나(19.0%), 베트남(18.2%), 브라질(16.2%), 인도(10.3%), 태국(10.0%) 등이다. FTA 체결국으로는 인도와 성장세가 눈에 띈다.

/ <표 3> 농림수산물 상위 10대 수입국 (2013) /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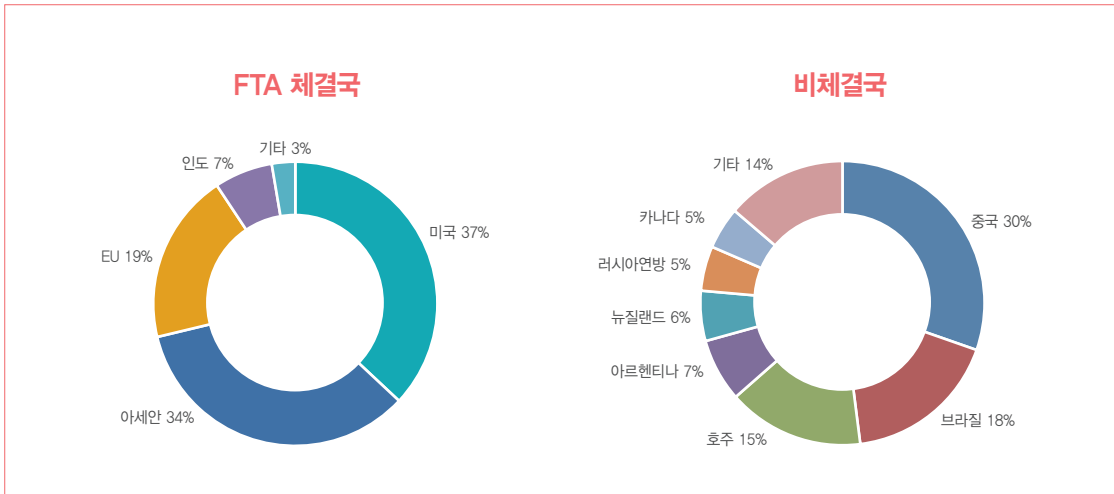
| 순위 | 국가 | 금액 | 증감률 |
|----|-------|--------|-------|
| 1 | 미국 | 5,694 | -9.0 |
| 2 | 중국 | 4,685 | 10.4 |
| 3 | 브라질 | 2,723 | 31.6 |
| 4 | 호주 | 2,397 | -15.0 |
| 5 | 태국 | 1,436 | -10.2 |
| 6 | 베트남 | 1,115 | -1.5 |
| 7 | 아르헨티나 | 1,107 | 17.5 |
| 8 | 인도 | 1,025 | 52.3 |
| 9 | 인도네시아 | 1,022 | -6.6 |
| 10 | 말레이시아 | 918 | -5.8 |
| | 기타 | 9,321 | 1.3 |
| 총계 | | 31,442 | 1.4 |

對FTA 수입 : 미국, EU, ASEAN, 인도 등이 93.6% 점유

2013년 FTA 체결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입 1,600.8억달러 가운데 569.4억달러(35.6%)는 미국, 527.9억달러(33.0%)는 ASEAN, 299.3억달러(18.7%) EU, 10.2억달러(6.4%)는 인도로부터 수입되어 네 국가(군)이 93.6%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 터키, EFTA, 칠레, 페루 등은 포함 41억 달러(6.4%) 수준이다. 비FTA 체결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입은 총 1,543.4억달러로 이 가운데 468.5억달러 30.4%는

/ <그림 5> 농림수산물 수입 비중(2013) /

(단위 : %)



중국, 272.3억달러(17.6%)는 브라질, 239.7억달러(15.5%)는 호주 등이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 주요 수입 품목인 옥수수 사료, 육류 등의 대규모 생산지역이다.

한-호주 FTA의 정식 서명으로 농림수산물의 對FTA 수입 확대 예상. 밀, 소고기 등 국내 시장 내에서의 경쟁 심화 예상

한편 2014년 3월 한-호주 FTA 공식 서명은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수입의 약 60%를 FTA 체결국과의 교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호주는 전체 농산물수출의 약 6%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밀, 보리, 쇠고기 등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품목이다. 향후 호주산 농산물은 국내 시장에서 관세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저가의 인도·중국산과 기FTA 발효국인 미국 등과 시장점유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향후 동향

식량자급률 지속 하락에 따른 국내 수입시장 경쟁 강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약 23.6%에 불과하다. 1998년 31.4%이후 30% 내외에 머물다가 사료용 수입증가 등에 따라 2003년부터 30% 이하로 하락, 2013년 23.6%가 되었다. 사료용을 제외하더라도 식량자급률은 45.3%로 절반이하의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이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시장은 인접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농산물과 FTA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림수산물에 소득에 비례적인 식품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민감성, 기후 변화에 따른 상대국의 작황변동, 국제 곡물 가격 추세 등의 부차적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부문으로 교역에 여러 변수를 항시 고려해야 한다.

/ <표 4>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2008~2012) /

(단위 :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식량(사료용 포함) | 27.8 | 29.6 | 27.6 | 24.3 | 23.6 |
| 식량(사료용 제외) | 51.8 | 56.2 | 54.0 | 45.3 | 45.3 |
| - 쌀 | 94.3 | 101.1 | 104.5 | 83.3 | 86.1 |
| 축산육류 | 71.7 | 73.5 | 72.6 | 61.9 | 69.2 |
| - 쇠고기 | 47.6 | 50.0 | 43.2 | 42.8 | 48.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증가 추세, 향후 수출산업경기전망 (EBS) 약보합세 개선

한편 FTA로 인한 우리 농림수산물 수출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 농림수산물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률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이전의 농림수산물의 수출 추세는 1995년 30억 달러 대에 도달한 이후 약 10년간 정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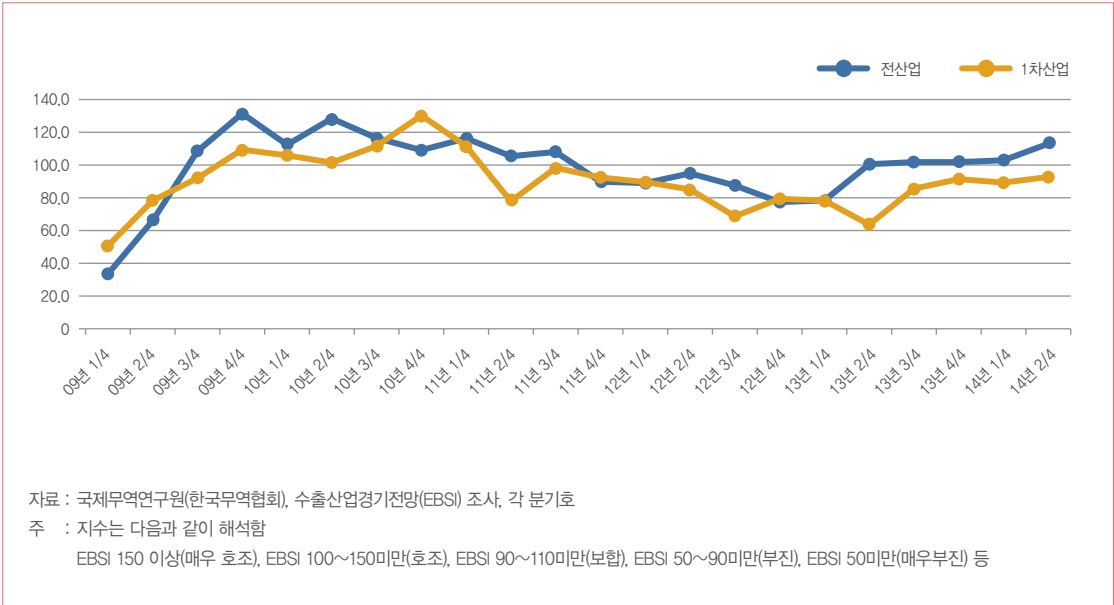
더불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출은 수출산업경기전망 (EBS)¹⁶⁾지수를 통해서도 호전되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업체 약 2,000개를 대상으로 시행된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은 2013년 2사분기 이후 수출

산업경기전망지수가 100.5로 회복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1년간 농림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88.2~97.7에 분포하여 약보합세였다.

부문별로는 수출상담 부문 및 수출계약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상품 제조 원가, 수출 채산성 등에서의 수출 여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등 시장 확대에 대해 기업의 기대감이 높은 수준이나,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이외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수출 여건에 대해 기업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6)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 Export Business Survey Index)는 수출산업의 경기동향과 관련있는 수출상담, 수출상품 제조원가, 수출채산성, 무역 환경 등의 전망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 지표를 산출하여 무역업계의 합리적인 경영계획과 무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된다. 조사항목은 수출산업에 고유한 항목(수출상담, 수출계약, 수출상품 제조원가, 수출단가, 수출채산성, 수출대상국 경기, 국제수급상황, 수입규제·통상마찰 등 8개 항목), 일반적 조사항목(설비가동률, 자금사정 등 2개 항목) 등이다.

/ <그림 6> 수출 EBSI 지수 추이 (2009.1사분기~2014.2사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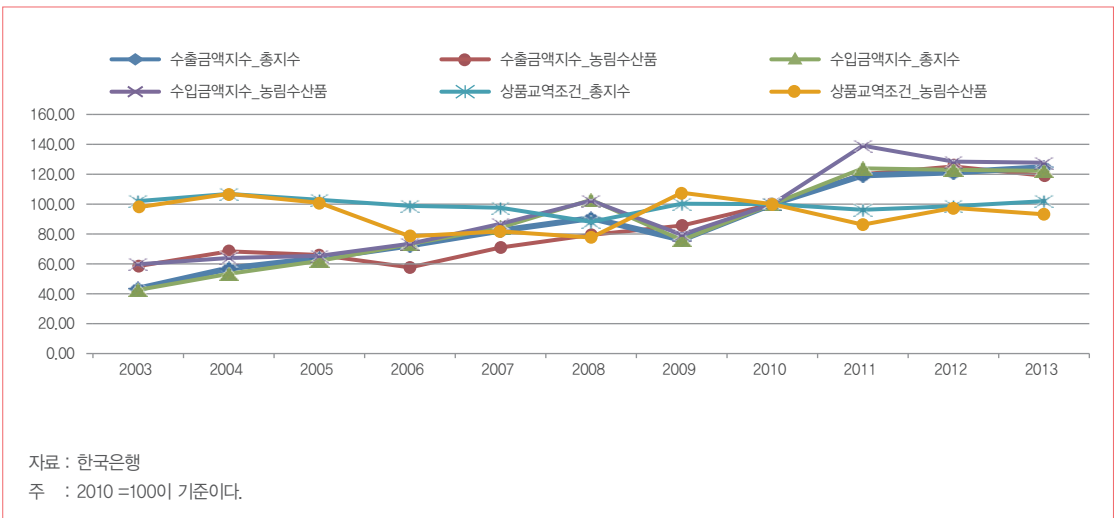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농림수산품의 교역지수 : 회복과 개선

마지막으로 FTA 전후 국내 농림수산물에 대한 교역조건 지수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 [그림 7]이다. 상품교역조건은

수출단가에 대한 수입단가의 비율(상대가격)로서 동지수의 상승은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더 상승한 것을 의미 하며, 하락은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더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 <그림 7> 상품교역조건지수추이 (2003~2013) /



우선 2003~2013년간 전체 산업에 대한 상품교역조건은 100을 전후한 안정적인 추이가 확인된다. 이는 동기간 수출과 수입단가가 같은 방향과 비율로 완만하게 증가하여 기 때문이라 하겠다.

반면 농림수산물의 경우 2003~2006년간 교역조건이 악화되다가 한-ASEAN, 한-EFTA 등 FTA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중반이후 교역지수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수입의 경우 국제 무역환경에 의해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 는 반면, 수출은 안정적으로 수출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 확인된다. 농림수산물의 상품교역조건 추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수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수입 부문에 의해 교역여건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즉 농림수산물의 경우 FTA에 따른 관세 하락 등 수입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상대국의 작황 등 불안정적 요소가 여전히 수입단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 농림수산물의 FTA 특혜 수출입 동향

1. FTA대상국의 무역

수출증가율 : 페루(20.0%) > 미국(12.4%) > 아세안(10.5%)
수입증가율 : 터키(55.6%) > 인도(52.3%) > EU(13.0%) > EFTA(6.2%)

2013년 농림수산물의 FTA대상국으로의 무역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우선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페루(20.0%)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물의 對페루 수출규모는 0.8백만달러로 전체 FTA대상국 가운데 약

/ <표 5> 농림수산물의 對FTA 수출입과 증감률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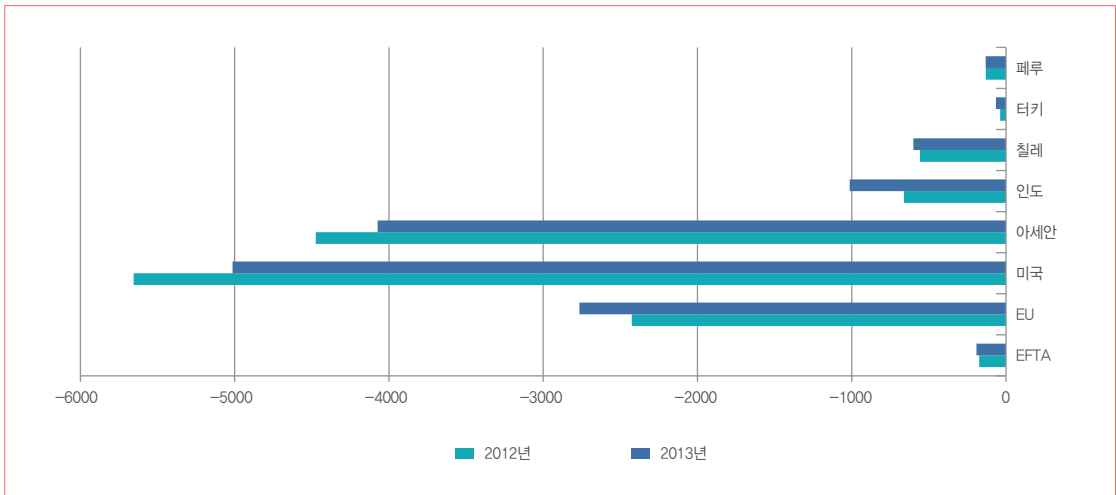
| | 수출 | | | 수입 | | |
|------|-------|-------|-----------|-------|-------|-----------|
| | 2012년 | 2013년 | 전년 대비 증감률 | 2012년 | 2013년 | 전년 대비 증감률 |
| EFTA | 15 | 9 | -39.6 | 189 | 201 | 6.2 |
| EU | 224 | 228 | 1.9 | 2,650 | 2,993 | 13.0 |
| 미국 | 605 | 680 | 12.4 | 6,260 | 5,694 | -9.0 |
| 아세안 | 1,092 | 1,206 | 10.5 | 5,566 | 5,279 | -5.2 |
| 인도 | 11 | 11 | 3.9 | 673 | 1,025 | 52.3 |
| 칠레 | 5 | 5 | 3.2 | 563 | 607 | 7.8 |
| 터키 | 12 | 10 | -9.6 | 49 | 77 | 55.6 |
| 페루 | 1 | 1 | 20.0 | 131 | 133 | 0.8 |

0.04%에 불과하여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국가는 미국으로 2012년 대비 12.4% 증가하였다. 이에 2013년 대비 농림수산물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

여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수출 증가가 나타난 지역은 ASEAN으로 2012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기간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

/ <그림 8> 對FTA국 농림수산물 무역 수지 (2012~2013) /

(단위 : 백만달러)



對터키, 인도의 수입 증가 견인 : 사료용 곡물, 미국으로부터 터의 수입 전환

수입증가율이 높은 FTA국가는 터키, 인도, EU, EFTA 등이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럽에 위치한 국가군들이다. 가장 수입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터키로 전년대비 55.6% 증가하였다. 對터키 수입 증가를 견인한 주요 품목은 사료용 곡물 제품(HSK 1001.99-1090)으로 2013년 15.4백만달러의 수입이 있었다. 동 제품은 2012년에는 수입 실적 없었던 품목이다.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동일 제품의 수입이 2012년 157,597백만달러에서 2013년 402,933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55.7%의 증가가 있었다.

한편 해당품목의 전체 수입실적은 2012년 919.7백만달러에서 2013년 752.7백만 달러로 -18.2%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 호주가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됨에 따라 잠정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2013년에는 유럽 인근과 인도로 수입선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¹⁷⁾.

2.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FTA 활용비중

수출 FTA 활용비중¹⁸⁾ : EFTA(82.2%) > EU(52.0%) > 미국(51.8%) 등 이외 국가 저조

2013년 농림수산물의 對FTA 체결국으로 FTA 특혜수출 활용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2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는 국가군은 페루, EFTA 등이다. EFTA의 경우 특혜수출 활용비중이 전년대비 -8.1%의 감소가 있었으나 82.2%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가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17) 2012년 미국으로부터 327.8백만달러, 호주로부터 356.3백만달러의 수입이 있었으나, 2013년에는 1.4백만달러, 0.04백만달러로 수입이 급감하였다. 지난해 미국 오리건주에서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밀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된 것이 그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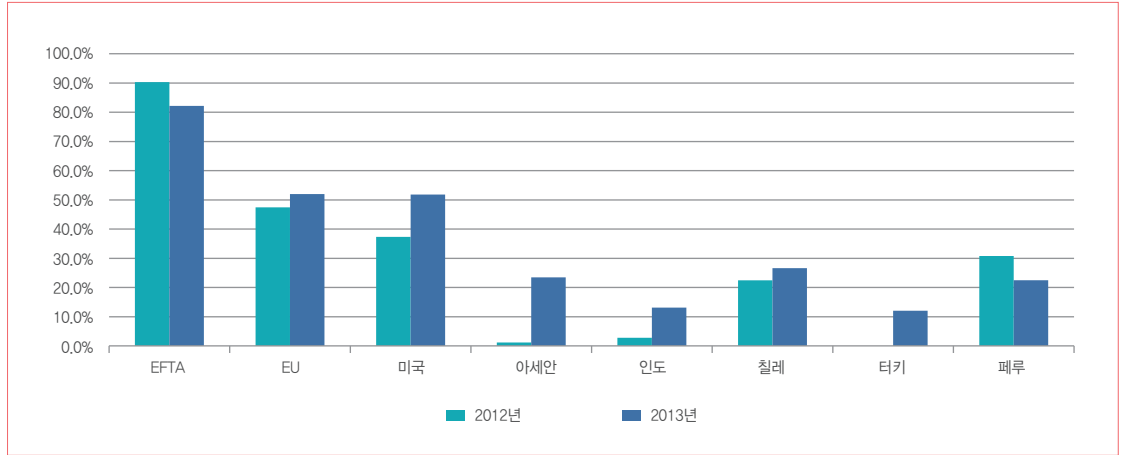
18) FTA 특혜수출 활용비중은 원칙적으로 상대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가장 정확한 수치이다. 본 글에서 분석한 수치는 기준세율과 FTA 특혜세율간의 차가 존재하는 즉,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세번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시 수출신고필증에 C/O를 발급하였다고 표기된 품목을 기본 통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추정치임을 밝혀둔다.

EFTA를 제외한 EU, 미국 등으로의 FTA 특혜수출 활용비
 증은 각각 52.0%, 51.8%로 나타났다. 對EU FTA 특혜수
 출 활용비중은 전년대비 4.5%, 對미의 경우 14.5% 증가하

였다. 그리고 FTA 이행 10년차를 채운 2013년 對칠레
 FTA 특혜수출 활용비중은 2012년 대비 4.1%가 증가하였
 으나 여전히 30%이하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그림 9>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출 활용비중 (2012~2013)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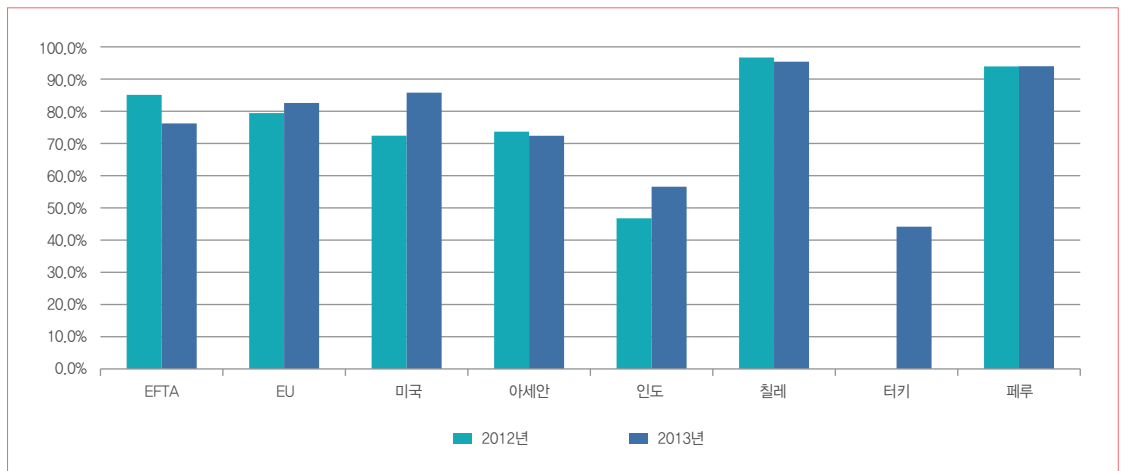
수입 FTA 활용비중 : 칠레(96.3%) > 페루(94.9%) > 미국
 (86.6%) > EU(83.4%) 등

있었으나 수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외의 국가
 에서 2012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수입활용
 비중은 전년대비 -1.3%의 감소가 있었으나 96.3%로 우
 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가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대EU, 對미 특혜수입 활용비중은 각각 83.4%

2013년 농림수산물의 對FTA 체결국으로 FTA 특혜수입
 활용비중은 EFTA, ASEAN, 칠레 등에서 약간의 감소가

/ <그림 10>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비중 (2012~2013) /

(단위 : %)



와 86.6%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對EU FTA 특혜 수입 활용비중은 전년대비 4.5%, 對미 FTA의 경우 14.5% 증가하였다. 다만 2013년에 체결한 한-터키 FTA는 발효 1년차 FTA 특혜 활용비중이 44.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3. 주요 특혜활용 품목

2013년, 기호식품(115.8%), 식물성물질(391.4%) 등 특혜 수출증가, 어류(-52.1%) 감소

2013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MTI 3단위 기준 상위 특혜 활용 수출품목은 농산가공품이 2012년에 이어 1위 품목을

유지하였다. 상위 10대 품목의 경우 전년 대비 5.8~391.4%의 특혜수출 증가가 시현되었다. 2013년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식물성 물질로 2012년에는 11위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7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어류, 어육 및 어란은 저조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FTA 체결 확대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여전히 FTA 특혜수출규모는 수입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표 6〉 FTA적용 대상 C/O 발급 상위 20대 품목(MTI 3단위 기준) ／

(단위 : 천달러, %)

| | | 2012년 | 2013년 | 증감률 |
|----|--------|--------|---------|-------|
| 1 | 농산가공품 | 70,840 | 113,371 | 60.0 |
| 2 | 기호식품 | 45,713 | 98,631 | 115.8 |
| 3 | 해조류 | 25,752 | 50,608 | 96.5 |
| 4 | 축산가공품 | 20,875 | 37,881 | 81.5 |
| 5 | 수산가공품 | 18,303 | 34,518 | 88.6 |
| 6 | 식물성 재료 | 14,915 | 26,659 | 78.7 |
| 7 | 식물성물질 | 4,498 | 22,102 | 391.4 |
| 8 | 곡실류 | 14,279 | 19,189 | 34.4 |
| 9 | 어육및어란 | 17,434 | 18,437 | 5.8 |
| 10 | 산식물 | 13,514 | 17,435 | 29.0 |
| 11 | 어류 | 17,401 | 8,341 | -52.1 |
| 12 | 목재류 | 2,738 | 4,925 | 79.8 |
| 13 | 연체동물 | 2,312 | 3,311 | 43.2 |
| 14 | 축산부산물 | 1,725 | 2,272 | 31.7 |
| 15 | 종자류 | 1,150 | 1,770 | 53.9 |
| 16 | 수산부산물 | 144 | 854 | 493.4 |
| 17 | 갑각류 | 175 | 599 | 241.5 |
| 18 | 육류 | 0 | 285 | |
| 19 | 임산부산물 | 12 | 43 | 245.4 |
| 20 | 기타농산물 | 5 | 8 | 55.4 |

2013년, 축산가공품(60.1%), 임산부산물(1008.7%) 등 특혜수입증가, 연체동물·해조류 등 감소

2013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MTI 3단위 기준 상위 특혜 활용 수입 품목은 식물성물질, 육류, 기호식품, 곡실류 등이 2012년에 이어 1~4위 품목을 유지하였다. 1위에 기록된 식물성물질은 다른 상위품목에 비해 특혜수입증가율이 3.9%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옥수수 사료의 해당국의 가뭄으로 인한 작황부진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브라질 등 비FTA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상위 10대 품목의 경우 전년 대비 3.9~60.1%의 특혜수입 증가가 시현되었다. 2013년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임산부산물 2013년에는 전년대비 1008.7%의 특혜수입 증가를 기록하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 어류 품목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표 7> MTI 3단위 기준 상위 FTA적용수입품 /

(단위 : 천달러, %)

| | | 2012년 | 2013년 | 증감률 |
|----|--------|-----------|-----------|--------|
| 1 | 식물성물질 | 1,471,385 | 1,528,459 | 3.9 |
| 2 | 육류 | 1,192,938 | 1,513,856 | 26.9 |
| 3 | 기호식품 | 1,240,262 | 1,339,481 | 8.0 |
| 4 | 곡실류 | 941,511 | 1,214,081 | 29.0 |
| 5 | 축산가공품 | 554,075 | 886,997 | 60.1 |
| 6 | 목재류 | 452,980 | 578,321 | 27.7 |
| 7 | 농산가공품 | 306,751 | 427,956 | 39.5 |
| 8 | 산식물 | 327,326 | 419,269 | 28.1 |
| 9 | 수산가공품 | 275,057 | 302,103 | 9.8 |
| 10 | 어육및어란 | 214,720 | 218,290 | 1.7 |
| 11 | 어류 | 151,476 | 189,587 | 25.2 |
| 12 | 연체동물 | 153,852 | 146,655 | -4.7 |
| 13 | 갑각류 | 56,320 | 92,381 | 64.0 |
| 14 | 식물성 재료 | 66,587 | 76,721 | 15.2 |
| 15 | 임산부산물 | 4,449 | 49,329 | 1008.7 |
| 16 | 산동물 | 17,429 | 30,247 | 73.5 |
| 17 | 수산부산물 | 18,366 | 18,657 | 1.6 |
| 18 | 기타수산물 | 14,256 | 12,438 | -12.8 |
| 19 | 축산부산물 | 8,993 | 9,963 | 10.8 |
| 20 | 해조류 | 10,215 | 6,648 | -34.9 |

Ⅲ.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1. 수출부문

협정별 1위 FTA 수출품목 : 해조류, 어육 및 어란,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등

2013년 FTA 협정별 MTI 3단위 기준 'FTA적용 C/O 발급액' 1위 품목은 미국 해조류(김), EU 어육 및 어란(다랑어 필레), ASEAN 기호식품(커피크리머), EFTA 농산가공품(라면), 인도 목재류(박스팰릿류), 페루·칠레 기호식품(기타 음료), 터키 식물성 물질(에폭시화 대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 EU로의 FTA활용 1위 수출 품목은 그 실적이 전년대비 95.8%, 77.7%로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 對 EU 농림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기타 냉동 다랑어 필레는 기준세율이 18%인 품목이다. 한-EU FTA로 5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이 감축되고 있다. 관세하락에 따른 수출 유효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품목은 ASEAN으로의 커피크리머 수출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현지 입맛 조사 및 공략으로 성공적인 수출 증가를 이루어낸 사례라 하겠다.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식문화는 '향'으로 대변된다. 아세안 국가는 오랜 식문화 습관 속에 야자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독특한 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SEAN 지역에 수출되는 커피 크리머는 주로 커피믹스 제조시에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對ASEAN 수출용 커피크리머에 코코넛 오일을 넣는 등 향을 보강하여 현지 입맛을 공략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수출 확대로까지 이어졌다¹⁹⁾.

/ <표 8> 협정별 FTA 적용 C/O 발급액 1위 품목 /

(단위 : 천달러, %)

| | MTI 3단위 | 주요 품목 | 2012년 | 2013년 | 전년대비증감률 |
|-------|---------|--------------|--------|--------|---------|
| 미국 | 해조류 | 김 | 22,822 | 44,695 | 95.8 |
| EU | 어육 및 어란 | 기타 다랑어 냉동 필레 | 10,253 | 18,221 | 77.7 |
| ASEAN | 기호식품 | 커피크리머 | 0 | 17,944 | - |
| EFTA | 농산가공품 | 라면 | 2,766 | 2,659 | -3.9 |
| 인도 | 목재류 | 박스팰릿류 | 0 | 560 | - |
| 칠레 | 기호식품 | 기타 음료 | 172 | 280 | 62.7 |
| 페루 | 기호식품 | 기타 음료 | 30 | 34 | 15.3 |
| 터키 | 식물성물질 | 에폭시화한 대두 | 0 | 140 | - |

19) 경남도민일보 (2013.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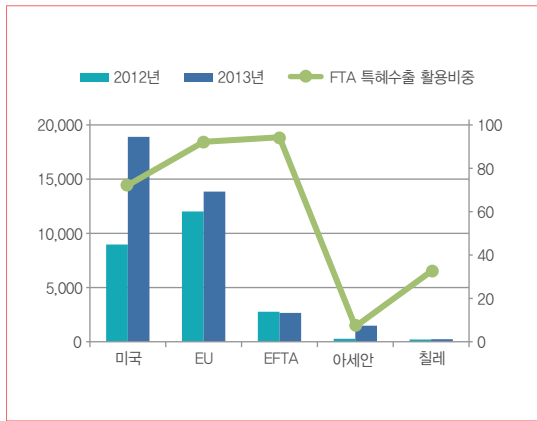
주력 가공식품 중심 수출의 강세 지속 : 해조류(조미김), 라면 등

앞서 [표 6]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가장 주력으로 FTA 활용되는 수출 품목은 '농산가공품'이다. 이 가운데서 라면은 FTA 특혜 대상이 아닌 터키, 페루 등을 제외한 FTA 체결국에서 주요하게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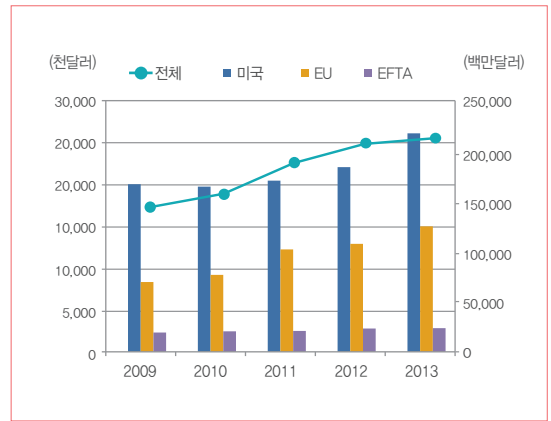
2013년 라면의 전년대비 FTA 특혜수출금액 증가율은 미국(110.7%), EU (15.3%), EFTA(-3.9%), ASEAN(436.4%), 칠레(13.1%)였다. 對EFTA 수출 일부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정도이다. 무엇보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ASEAN 에서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림 11> 라면의 FTA 특혜수출 실적 및 활용비중 /

(단위 : 천달러, %)



/ <그림 12> 라면의 수출(2009~2013) /



라면은 FTA 이전 관세부과 품목이었다. 일례로 미국은 FTA로 기존의 6.4%→0%로, EU는 6.4+24.6·/100kg/net→0%, 스위스는 67.95%가 연차적으로 철폐되었다. 관세하락은 가격경쟁력 상승 및 수출 증대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라면의 FTA 특혜 수출활용비중은 미국, EU, EFTA 등 선진 경제권에서는 대체로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ASEAN은 여전히 7%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ASEAN은 전산업의 FTA활용이 낮은 국가군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 주요 대상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수출의 약 74~81%를 점유해 왔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은 그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 36.2%에 달했으나 2013년 22.3%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보다는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및 수출 확대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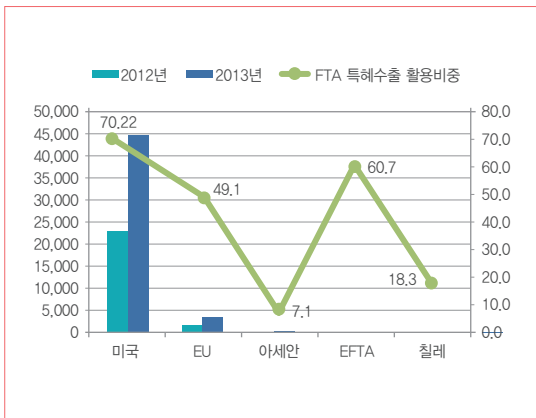
실제 김의 對미 수출은 2009년 16.3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63.6백만달러로 약 3.9배 증가하였다. 미국은 김에 대해 6.4%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 의해 해당관세를 0%로 즉시 철폐하였다.

FTA 대상국의 전년대비 수출 증감율을 살펴보면, 對미수출은 2012년 대비 35.5%, 對EU 수출은 70.8%, 對EFTA 수출은 711.2%, 對ASEAN 수출은 18.8%증가한 반면, 비

FTA 경제권인 對일 수출은 -17.8%의 감소가 있었다. 그 외 최근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전년대비 28.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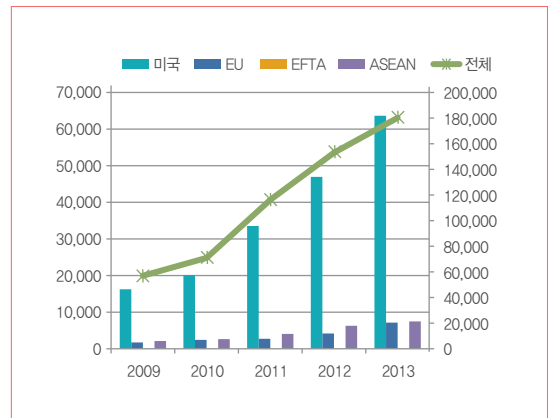
/ <그림 13> 김 FTA 특혜수출 실적 및 활용률 /

(단위 : 천달러, %)



/ <그림 14> 김 수출(2009~2013) /

(단위 : 천달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전통식품인 간장, 고추장, 된장은 과거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교포 밀집지역으로 집중되던 수출 품목이다. 최근 한류로 지칭되는 우리문화가 세계에 전파되면서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표 9]는 2004~2013년간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세 개 품목의 수출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제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8%의 수출액 증가가 확인된다.

한편 [표 9]에서와 같이 지난 10년간 장류의 수출량은 1.7배 증가한 가운데 수출액은 2.1배 증가하였다. 즉 수출량에 비해 수출금액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

/ <표 9> 장류의 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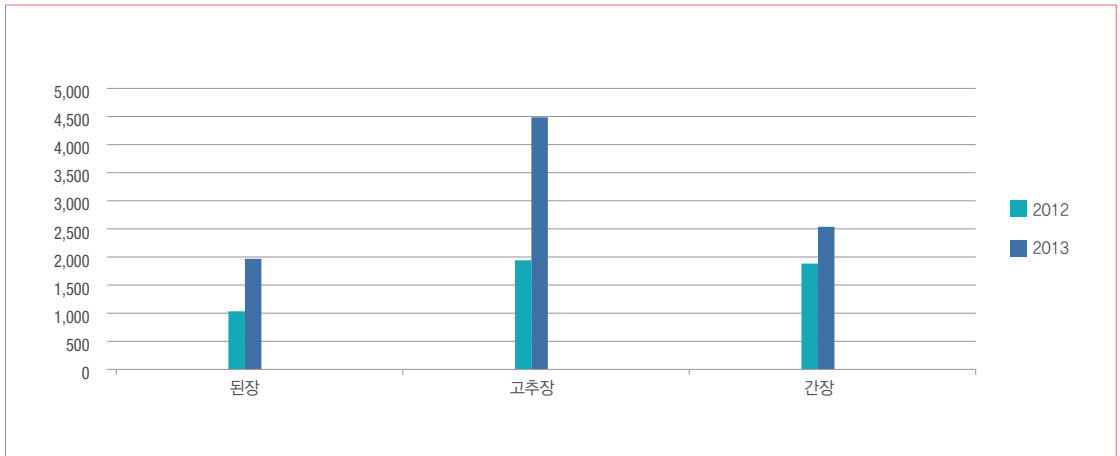
| 구분 | 종류 | 2004년(A) | 2013년(B) | (B)/(A) | 연평균증가율 |
|----|-----|----------|----------|---------|--------|
| | | 수출량 | 15,264 | 25,586 | |
| 총계 | 수출액 | 21,768 | 46,366 | 2.1 | 8.8 |
| | 단가 | 1.4 | 1.8 | | |
| | 수출량 | 5,623 | 8,422 | 1.5 | 4.6 |
| 미국 | 수출액 | 7,643 | 14,649 | 1.9 | 7.5 |
| | 단가 | 1.4 | 1.7 | | |

라 해당품목의 전체 수출단가는 지난 10년간 톤당 1.4천 달러에서 1.8천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류 전체 수출의 약 31.6%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3년 해당 품목의 단가가 톤당 1.7천달러로 전체평균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 된장, 고추장, 간장의 對미 FTA활용 특혜 수출 비중은 각각 69.8%, 48.9%, 59.3%로 나타나고 있으며, FTA 활용수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90.4%, 131.1%, 34.8%로 높은 증가가 확인된다.

/ <그림 15> 장류의 FTA 활용 특혜 수출 금액 /

(단위 : 천달러)



대게살, 게살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특혜수출 요건 충족 여부 관련

2013년 수산물가공품 가운데 수출 증가가 크게 나타난 품목은 붉은 대게살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FTA를 적용하여 C/O를 발급한 금액이 2,692천달러에서 5,896천달

러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FTA 특혜수출 활용비중도 50.7% 79.4%로 증가하였다. 해당품목의 미국 다음의 주요 FTA 수출국은 EU이다. 미국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2013년 수출규모가 1,586천달러에서 4,269천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대게살에 대한 對EU FTA 특혜수출 활용 비중은 20.3%에서 41.5%로 증가하였다.

/ <표 10> 붉은대게살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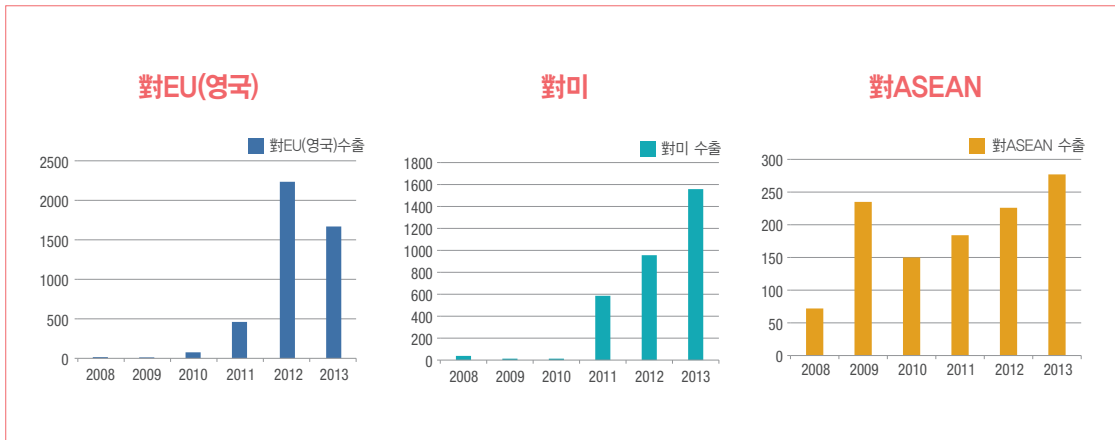
| 미국 | EU |
|--|---|
| 다른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붉은 대게살에 대한 EU의 FTA 특혜수출 활용비중이 일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50%이하의 낮은 수준인데, 이는 한-EU FTA 상 해당품목의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 대게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세번변경기준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하다. 반면 EU의 경우 대게살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은 해당 품목의 FTA 특혜 수출 활용에 반영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수산가공물 중 대게살과 유사한 품목으로 EU로 많이 수출되는 품목인 게맛살의 경우 붉은 대게살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이나 FTA 특혜수출 활용비중이 10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정조건 하²⁰⁾ 원산지결정기준 면제 물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이행 1년차 연쿼터 2000톤, 이행2년차 2500톤, 이행 3년차 이후 3500톤이다. 2013년 對EU 게살맛 어묵 수출물량은 2,419톤으로 대부분의 수출물량은 쿼터내 물품이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상의 주요 결과는 실제 특혜 수출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림 16> 감굴의 영국, 미국, ASEAN 수출 현황(2008~2013) /

(단위 : 천달러)



제주감굴의 영국, ASEAN 등 수출량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2013년 제주감굴의 수출국은 전체 5,343천달러 가운데 영국(1,669천달러), 미국(1,558천달러), 캐나다(734천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전체 12.8%가 증가한 가운데 영국이 -25.0%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63.0%의 높은 증가가 있었다.

제주감굴의 對EU(영국) 수출은 [그림 16]에서 확인되듯이 한-EU FTA 발효 직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2천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76천 달러로 증가 2011년에는 461천 달러, 2012년 2235천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 증가에는 오렌지 생산이 중단되는 1~2월의 단경기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이 성공한 데 있다. EU 지역은 스페인이라는 주요오렌지 생산국가가 소재하고 있으

20) 어묵 조제품의 총량 당 최소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중 사용

나 해당지역의 1등급 오렌지는 12월에 생산이 끝나고 2월 이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렌지가 공급되는 구조로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 것이 해당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²¹⁾.

한편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수출 여건 개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2012년 한-필리핀 간 검역개정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출자는 수입허가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국의 고급 백화점 납품용 감귤 수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감귤농민의 소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²⁾.

요컨대 감귤류 등은 FTA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량 및 수출대상국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그러나 對EU 수출의 경우 FTA에 의해 해당품목의 현행 관세율을 15년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FTA를 활용한 특혜 수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감귤류를 활용한 잼류 등 조제식품 등은 특혜혜택이 가능한 품목이므로 해당 원재료를 2차 가공하는 등 품목 개발을 통해 FTA 특혜수출을 다변화하는 데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2. 수입부문

협정별 1위 FTA 수입품목 : (소비용) 삼겹살, 연어, 커피, 포도, (생산원료) 유박, 밀

2013년 FTA 협정별 MTI 3단위 기준 'FTA적용수입액품목'은 미국 곡실류(밀), EU 육류(삼겹살), ASEAN 식물성물질(팜너트 유박), EFTA 어류(연어), 인도 식물성 물질(대두유 원료), 페루 기호식품(커피), 칠레 곡실류(포도), 터키 수산가공품(가공수생무척추동물)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EU, 인도, EFTA로부터의 FTA활용 1위 수입 품목 실적이 전년대비 84.4%, 62.0%, 57.9%로 크게 증가하였다. 對EU, 對EFTA 농림수산물 특혜수입 1위 품목인 삼겹살과 연어는 시장에서 국내 제품과 직접 혹은 대체재로서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FTA 체결국로부터 특혜수입되는 농림수산물 1위 품목은 직접 혹은 일부가공 후 소비되는 포도, 연어, 삼겹살, 커피 등과 밀, 대두 유박, 팜저트 유박 등 원료 제품으로 양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 <표 11> 협정별 FTA적용수입액 1위 품목 /

(단위 : 천달러, %)

| | MTI 3단위 | 주요 품목 | 2012년 | 2013년 | 전년대비증감률 |
|-------|---------|--------------|---------|---------|---------|
| 미국 | 곡실류 | 밀 | 321,803 | 409,985 | 27.4 |
| EU | 육류 | 삼겹살 | 149,161 | 275,034 | 84.4 |
| ASEAN | 식물성물질 | 팜너트 유박 | 123,893 | 157,916 | 27.5 |
| 칠레 | 곡실류 | 포도 | 115,487 | 130,592 | 13.1 |
| 인도 | 식물성물질 | 대두유 오일케이크·유박 | 73,286 | 118,716 | 62.0 |
| EFTA | 어류 | 연어 | 28,278 | 44,653 | 57.9 |
| 페루 | 기호식품 | 커피 | 38,918 | 36,923 | -5.1 |
| 터키 | 수산가공품 | 수생무척추동물 | - | 4,302 | -4.4 |

21) 농민신문, 2014년 2월 19일자

22) 한라일보, 2013년 11월 20일자

그리고 EU의 2012년 1위 품목인 스카치 위스키가 2013년 삼겹살로, ASEAN은 2012년 팜유와 분획물에서 2013년 팜넛 유박으로, 페루는 2012년 조미오징어에서 2013년 커피 등으로 국내 시장의 변화에 따라 농림수산물 특혜수입 1위 품목이 변동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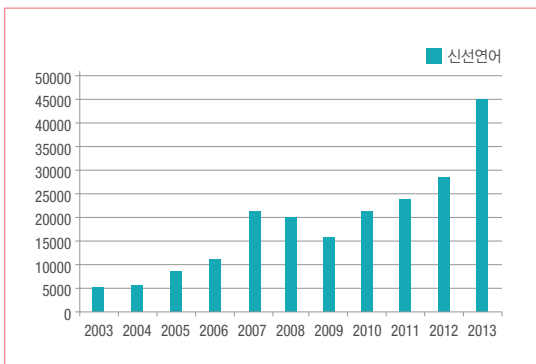
삼겹살 등 돼지고기 수입단가 하락, 특혜관세 우위의 미국 점유율 증가

對EU 냉동삼겹살의 FTA 특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전체 수입액은 2012년 364.7백만달러, 2013년 275.1백만달러로 오히려 전년보다 -24.4%감소하였다. 국내 돼지 도축 물량 증가 등으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국외산 수요 및 가격경쟁력을 다소 상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는 3.2\$/kg('12)→ 3.0\$('13)로 미국산 역시 3.0\$/kg('12)→ 2.8\$('13)로 하락하였으나 전년보다 많은 수입수요를 유발하지 못했다²³⁾.

한편 냉동삼겹살에 대해 EU는 18.1%, 미국의 경우 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수입대체도 일부 진행이 더불어 확인되었다. 실제 미국의 냉동삼겹살의 수입은 전년대비 91.0%의 증가가 있었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33%에서 2013년 35%로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다.

/ <그림 17> 對노르웨이 신선 연어 수입액 /

(단위 : 천달러)



노르웨이 신선 연어 수입 증가 급증, 국내 공장설비 구축 등 노르웨이 기업 진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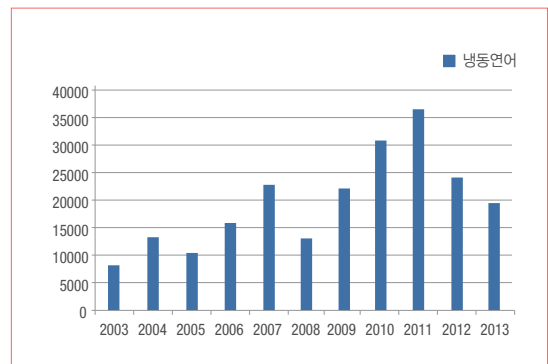
연어는 웰빙 수산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수입수산물이다. 주 생산국은 노르웨이로 최근 5년간 수입된 비중이 99%에 달하고 있다. 신선 연어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그림 17] 및 [그림 18]에서와 같이 한-EFTA FTA가 발효된 2006년 이후이다. 신선연어 수입은 2005년 1,326톤에서 2013년 4,294톤으로 무려 3.2배 증가하였다.

2013년 노르웨이 신선연어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55.9% 증가한 반면 냉동연어 수입은 -34.9%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2013년 신선연어의 수입증가는 세계 1위 연어 양식 가공기업인 M사가 가공공장을 국내(인천)에 준공 및 가동이 개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EFTA FTA 이후 對노르웨이 연어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율 하락에 따라 국내 연어소비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FTA 대상국에 소재한 기업이 전략적으로 한국에 유통뿐만 아니라 가공기지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노르웨이에서 양식 포획한 1차 가공상태인 연어가 전세 항공기를 통해 공급되어 수송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게 되었다. 즉 상대국의 제품이 국내 가공기지 건설로 수출 환경이

/ <그림 18> 對노르웨이 냉동 연어 수입액 /

(단위 : 천달러)



23) FTA 체결국 농축수산물 수입동향(2013년 4분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다 용이해 졌고 2013년 고가의 신선 연어 수입이 확대, 저가의 냉동연어의 수입은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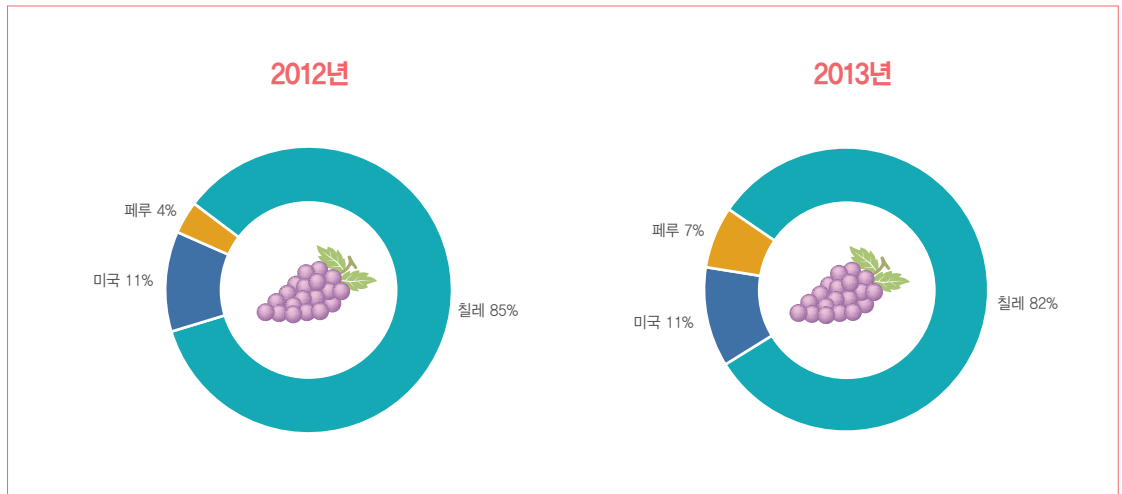
페루산의 시장점유율 증가, 미국과 칠레의 계절적 공급 틈새 공략

포도는 계절관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5~10월까지는 기준관세가 부과되며, 11월부터 4월까지의 각 FTA 협정에 의해 관세가 감축되고 있다. 2013년 기준 포도의 관세는 칠산 4.1%, 미국산 및 페루산 18.0%가 부과되어 기체 결된 칠레가 관세혜택을 선점하고 있는 구조라 하겠다.

[그림 19]에서와 같이 2013년 우리나라의 신선포도의 수입국은 칠레, 미국, 페루 등이다. 기존의 수입포도시장은 칠레와 미국이 양분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한-페루 FTA의 발효에 따라 페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페루의 신선포도 수입비중은 2012년 4%에서 2013년 7%로 증가하였다.

한편 칠레, 미국, 페루는 각기 다른 수입시기로 국내에 포도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20]에서와 같이 칠레산 포도수입은 주로 4~5월, 미국산 포도는 9~10월, 페루산 포도는 12~2월에 주로 수입되고 있다. 즉 칠레와 미국으로부터의 포도 수입이 주춤한 겨울철 틈새를 기회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 가고 있다.

/ <그림 19> 신선포도의 국가별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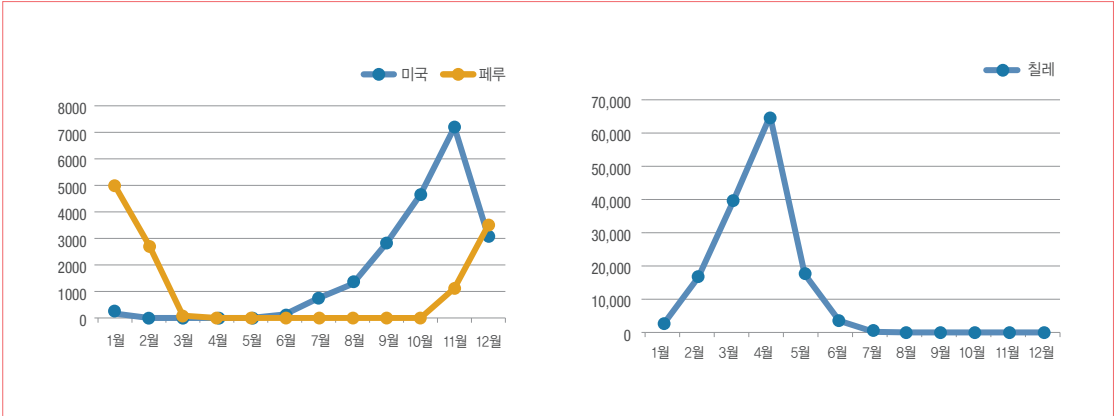


이처럼 새로운 포도 수입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페루는 11~4월기간 중 2013년의 경우 미국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2014년은 관세율이 미국의 12%보다 3% 낮은 9%가 적용된다.

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은 국내 포도 수입시장에서의 페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유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20> 미국, 칠레, 페루산 신선포도의 월별 수입실적 /

(단위 : 천달러)



[특집] 기업의 FTA 민원으로부터 본 우리나라 FTA 10년

윤호성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1. 서론

FTA 이행 10년차 기업에게 FTA 활용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경제학 이론으로 보자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기본적으로 관세절감의 이익을 내포한다. 기업은 원자재 수입시 원가절감을 실현할 수 있고, 완제품 수출시에는 가격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양국 소비자는 수입상품을 기존보다 값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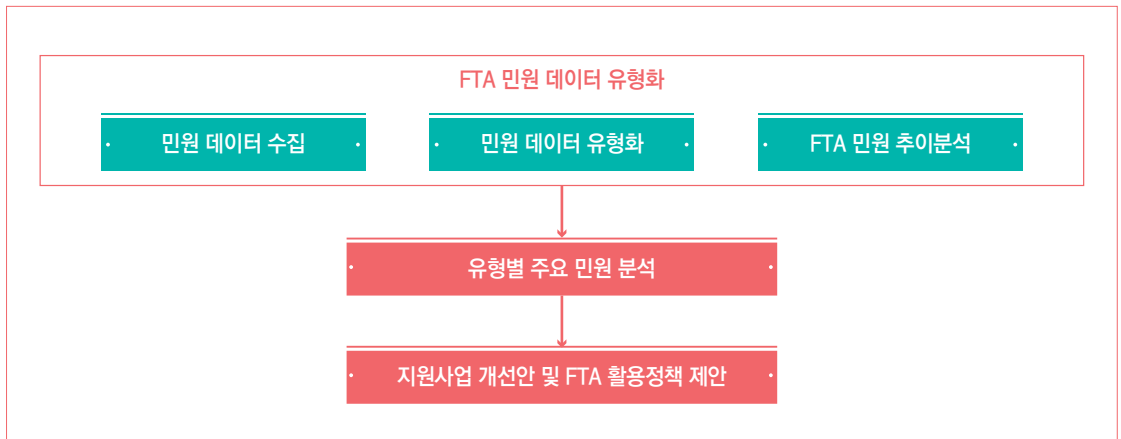
그러나 개방의 특혜는 실무에서 그냥 손에 쥐여지지 않는다. 기업은 FTA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로 대변되는 제도적 기반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에게 FTA는 기존의 수출입의 시스템을 'FTA 수출입'으로 180도 바꾼 제도적 변환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우리나라는 FTA 10년차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이 FTA에 대해 어떠한 점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FTA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바로 'FTA 민원'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FTA 이행 정책을 위해 FTA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FTA 민원 및 질의응답을 접수 받아 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FTA 이행 11년차를 맞아 개별 기관별로 흩어진 'FTA 민원'을 수집하고, 민원의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기업친화적인 FTA 이행환경 조성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그림 1> FTA 민원 데이터 유형과 이슈 분석 체계도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다년간 축적된 FTA 민원 데이터의 현황 분석을 통해 FTA 이행의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FTA 활용실무에서 겪고

있는 민원질의를 유형화하고 FTA 민원 제기 추이를 분석하였다.

2. FTA 민원데이터의 유형화와 특징

관세청 등으로부터 수집된 FTA 민원은 약 18,477건이다.

수집된 FTA 민원 데이터는 관세청과 무역협회 자료로 2007년~2013년 5월까지 총 18,477건에 달한다. 주로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 아울러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일부 비공개 자료도 획득하였다.

관세청은 「FTA PORTAL」 및 「관세청 고객지원 센터」를 통하여 질의응답 및 FTA 민원과 해외통관애로를 접수 받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 FTA 민원데이터 수집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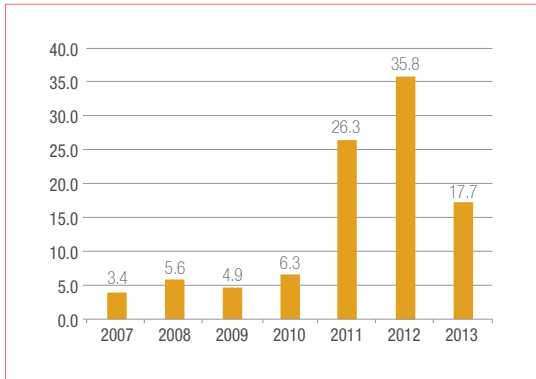
| 기관명 (지원 웹페이지) | 자료유형 | 자료내용 |
|------------------------------|----------------------|---|
| 무역협회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 인터넷 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관세율 문의 · 원산지결정기준 문의 · 인증수출자 · 원산지증명관련 · FTA 활용 실무 등 |
| 관세청 (FTA PORTAL 및 고객지원센터) | 질의 응답 및 FTA 민원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관세율 문의 · 원산지결정기준 문의 · 인증수출자 · 원산지증명관련 · FTA 활용 실무 등 |

FTA 민원질의 2012년 가장 활발, 한-EU FTA 질의 빈도 최다

수입관련 FTA 질의(38%) > 수출관련 FTA 질의(26%)

연도별로 FTA 민원은 2012년(6,624건/35.8%)에 가장 많은 질의가 제기되었다.

/ <표 2> 연도별 FTA 민원 질의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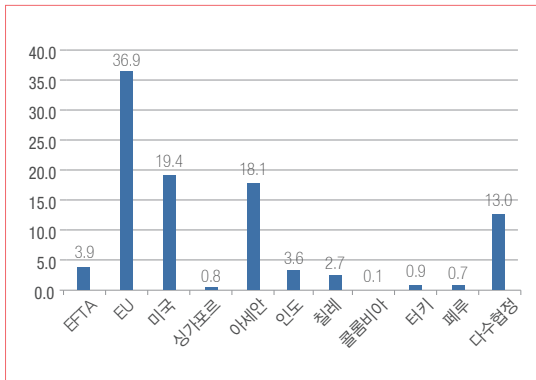


협정별로는 한·EU FTA관련 질의가 6,814건(35.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수출입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입관련 질의가 7,102건(38.4%), 수출 4,794건(25.9%)로 수입관련 질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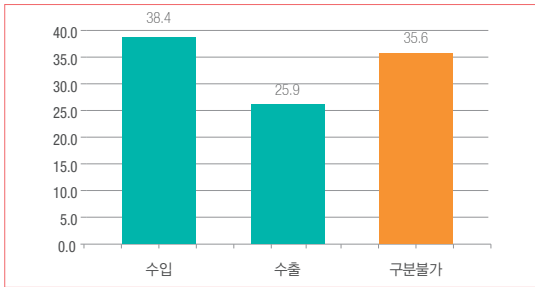
| 구분 | 빈도 | 비중 |
|------|--------|-------|
| 2007 | 627 | 3.4 |
| 2008 | 1,026 | 5.6 |
| 2009 | 899 | 4.9 |
| 2010 | 1,170 | 6.3 |
| 2011 | 4,857 | 26.3 |
| 2012 | 6,624 | 35.8 |
| 2013 | 3,274 | 17.7 |
| 총합계 | 18,477 | 100.0 |

/ <표 3> 협정별 FTA 민원 질의 건수 /



| 구분 | 빈도 | 비중 |
|-------|--------|-------|
| EFTA | 714 | 3.9 |
| EU | 6,814 | 36.9 |
| 미국 | 3,581 | 19.4 |
| 싱가포르 | 140c | 0.8 |
| 아세안 | 3,352 | 18.1 |
| 인도 | 671 | 3.6 |
| 칠레 | 497 | 2.7 |
| 콜롬비아 | 11 | 0.1 |
| 터키 | 160 | 0.9 |
| 페루 | 137 | 0.7 |
| 다수 협정 | 2,400 | 13.0 |
| 총합계 | 18,477 | 100.0 |

/ <표4> 수출입 유형별 FTA 민원 질의 건수 /



| 구분 | x빈도 | 비중 |
|------|--------|-------|
| 수입 | 7,102 | 38.4 |
| 수출 | 4,794 | 25.9 |
| 구분불가 | 6,581 | 35.6 |
| 총합계 | 18,477 | 100.0 |

가. FTA 민원 데이터의 대속성과 특징

약 1만 8천 건의 FTA 민원데이터에 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FTA 이행 제도 및 FTA 활용 실무 절차 등을 고려하

여 대속성→중속성→세부속성의 3단계에 따라 데이터 유형화 기준 및 분류내용을 설정하였다(부록 참고).

| 대속성 | 주요 내용 |
|----------|--|
| FTA 기본정보 | FTA활용을 위해 필요한 이해도(교육 및 컨설팅) 및 FTA 활용을 위한 제도전반의 이해와 협정 및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
| FTA 활용정보 | 기업들이 FTA활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항목 (예, 협정별 양허세율 및 양허일정, 품목분류관련 정보 등) |
| FTA 이행정보 | 실제로 FTA 이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 발급 및 작성, 원산지판정의 근간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 등 |

FTA 이행정보(42%) > FTA 기본정보(31%) > FTA 활용정보 (23%)

원산지 증명 및 세율정보 관련 질의 빈도도 높은 수준 협정관세적용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민원 건수 7천건 이상

대속성 중 'FTA 이행정보' 관련 질의가 42.1%(7,774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FTA 기본정보' 관련 민원이 31.7%(6,407건), 'FTA 활용정보' 관련 민원이 23.3%(4,296건)를 차지하였다.

각 세부속성별로 민원 질의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순위는 'FTA 기본정보'의 하위에 속하는 '협정관세 적용여부'로 21.06%(3,892건)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FTA 이행정보'의 하위에 속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17.6%(3,252건)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세 번째는 'FTA 활용정보'의 하위에 속하는 '품목의 세율정보'가 17.29%(3,195건)를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관련 민원질의 빈도는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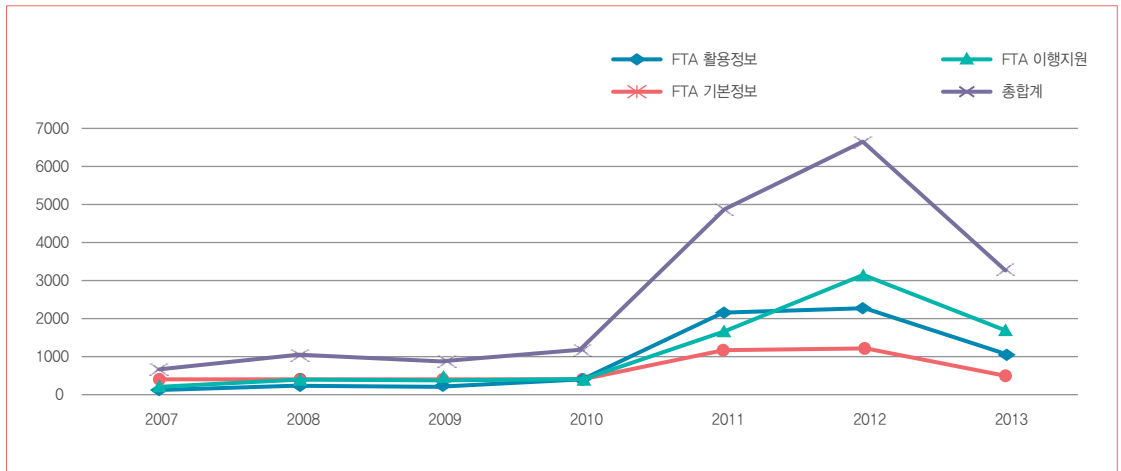
이외의 민원질의를 인증수출자 9.29%(1,714건),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8.13%(1,502건),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6.02%(1,113건)도 기타 항목들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민원질의는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교육 및 컨설팅, 품목 분류, FTA 활용정보, 품목분류 등이 10%대 이하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0이후 FTA 민원 폭증, 한-EU 및 한-미 FTA 영향 때문

연도별 FTA 민원은 2007년 627건에 불과 했으나, 2011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 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질의응답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총 질의 건수가 무려 전년대비 315.1%로 폭발적 증가가 확인된다. 대속성 기준으로는 'FTA 기본정보' 관련 질의가 463.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FTA 이행정보' 292%, 'FTA 활용정보' 191.6% 증가하였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 및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인한 질의응답 급증으로 판단된다.

/ <그림 3> 연도별 민원제기 빈도 추이 /



'FTA 기본정보' 관련 민원 매년 평균 30% 내외 수준

[그림 4]의 연도별 각 대속성의 질의 비중을 살펴보면 'FTA 기본정보' 관련 민원질의는 2007~2009년까지 25%이하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30%이상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FTA 활용역량 강화로 'FTA 활용정보' 관련 민원 매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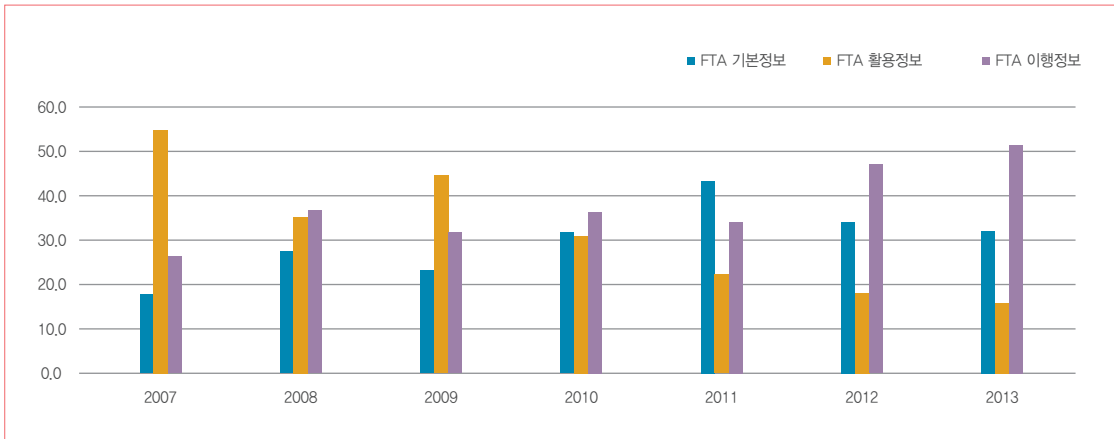
'FTA 활용정보' 관련 민원질의는 2007년 비중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20%대 이하의 낮은 비중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FTA 활용 정보 확인 역량이 FTA이행 초기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 가능하다.

FTA 이행 정보 관련 민원 2012년 이후 증가세 뚜렷

FTA이행 정보 항목은 2007년에는 27%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 30%이상, 2012년에는 47.5%로 확대되었다.

/ <그림 4> 연도별 대속성관련 민원제기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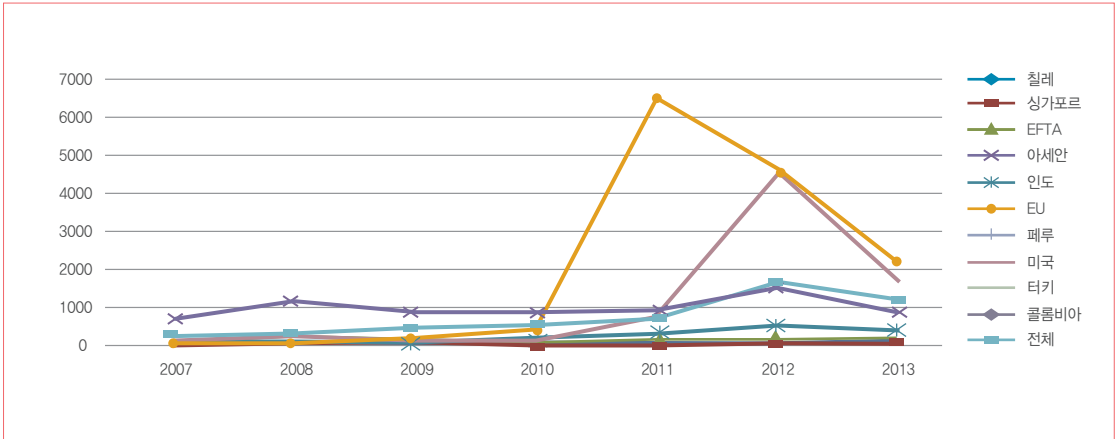
나. 협정별 FTA 민원 데이터의 특징

협정별 민원빈도: EU(37%) > 미국(19%) > 아세안(18%) > EFTA(4%)

협정별 민원질의 빈도를 살펴보면, 한-EU FTA 관련 민원이 36.9%(6,814 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 칠레의 497건(2.7%), 싱가포르 140건(0.8%), EFTA 714건(3.9%), 아세안 3,352건(18.1%), 인도 671건(3.6%), 페루 137건(0.7%), 미국 3,581건(19.4%), 터키 160건(0.9%), 콜롬비아 11건(0.1%), 협정 구분 불가(다수 협정질의 및 구분불가) 2,400건(13.0%)으로 분류 되었다.

한-EU FTA는 6000유로 이상 특혜수출자 인증수출자라는 자격요건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경제권과의 최초 FTA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인 EU로의 특혜 수출을 위해 기업이 본격적으로 인증수출자 제도, 특혜 여부 등 FTA활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한-EU FTA가 발효한 2011년 EU관련 민원질의가 전년대비 1,795.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그림 5> 협정별 질의제기 빈도 추이 /



협정별 민원 추이는 해당 협정 발효시기 전후에 집중되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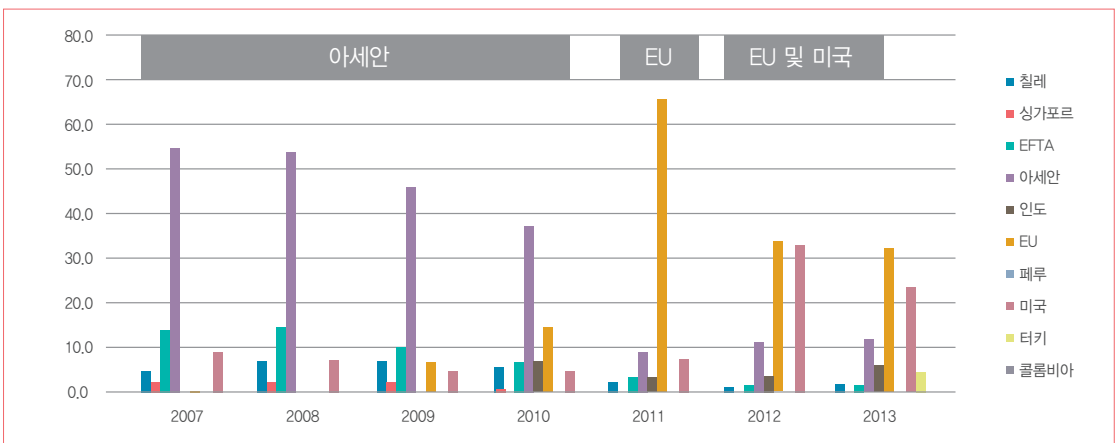
2007~2010년 아세안, 2011년 EU, 2012년 EU 및 미국 중심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의 질의 제기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07~2010년까지 아세안 관련 민원질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부터

EU와 미국의 비중이 높으며, 칠레, 싱가포르, EFTA, 인도 등의 협정은 점점 차지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민원질의 추이로부터 연도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FTA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활용이 정착 되는 현황을 유추할 수 있다.

/ <그림 6> 협정별·연도별 FTA 민원제기 빈도 변화 /



3. FTA 민원 데이터 주요 이슈와 시사점

가. 민원데이터 주요 이슈 종합분석

'FTA 활용정보' 관련 민원 감소추세

첫째, 기업들의 FTA활용을 위한 기초 정보의 확인 역량이 향상된 것이 확인된다.

FTA 활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FTA 활용정보'와 관련한 민원질의 제기건수가 2007~2009년 까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FTA 활용정보'와 관련한 민원질의 빈도는 가장 낮은 비중 추이를 보인다.

기업들 FTA활용 실무영역,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등 지원 원해

둘째, 최근 3년간 공통적으로 'FTA 이행정보' 및 'FTA 기본정보' 질의빈도가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주로 FTA 활용을 위한 실무들이다. 이와 관련한 민원질의 가 많다는 것은 기업들은 FTA 활용 실무영역관련 정보, 특혜관세 혜택 적용여부 및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 작성 방법 등과 같은 부분의 정부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표 9> 속성별 민원 제기 주요 항목현황 /

| 대속성 | 중속성 | 세부속성 |
|----------|------------|---|
| FTA 기본정보 | FTA협정 및 법령 | 협정관세적용여부, 인증수출자, 특혜전제조건, 협정 및 법령해석 |
| | 교육 및 컨설팅 | FTA활용전반, 실무교육 및 컨설팅, 교육자료 |
| FTA 활용정보 | FTA활용정보 | FTA기본정보, 상대국정보 |
| | 세율정보 | 품목의 세율정보, 기타 세율정보 |
| | 품목분류 | HS코드확인, HS코드상이, 품목분류체계 |
| FTA 이행정보 | 원산지결정기준 |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해석, 원산지판정,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
| | 원산지증명 |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 원산지증빙서류, 포괄증명기간, 원산지증명주체, 중고품원산지증명, 원산지관리시스템 |
| | 원산지검증 |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사전심사, 인장조회, 검증절차 및 대상여부, 서류보관의무 및 보관서류,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세부적으로 FTA 협정 및 법령, 세율정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속성의 민원빈도가 그 이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확인된다. 인증수출자, 특허관세적용여부, 품목의 세율정보,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증빙서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 주요 사항이다. 이는 FTA의 이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컨설팅, 질의응답,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입장에서는 해당 부문을 실무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9]의 밑줄처리한 부문은 민원질의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속성들이다. 기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부문으로 새로운 FTA를 이행함에 있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부문이다.

이러한 민원질의를 대비하여 정부는 새로운 FTA 이행시 사전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향후 발효할 FTA에 효율적인 사전대비는 물론 FTA 이행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나. FTA 민원데이터 이슈분석과 시사점

1) 협정별· 연도별 민원 제기 빈도 추이

발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해당 협정 민원제기 폭증

- 2010년 한-인도 CEPA 1,283% 증가
- 2011년 한-EU FTA 1,796% 증가
- 2012년 한·미 FTA 519% 증가, 한·터키 1,750%FTA

민원질의 발생 빈도를 협정과 발효연도를 연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협정 발효 직전과 발효시점 당해 협정의 질의 빈도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인도 CEPA의 경우 발효 시점인 2010년 총 민원 제기 빈도는 전년대비 1,283.3% 증가하였다.

한·EU FTA는 발효 시점인 2011년 전년대비 총 민원 건수는 1,795.5% 증가 하였으나, 이듬해인 2012년 29.9% 감소하였다.

한·페루 FTA 역시 발효 시점인 2011년 전년대비 86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한·미 FTA는 2011년과 2012년 전년대비 각각 563%, 519.3% 증가하였다.

한·터키 FTA의 경우 2012년 1,750% 증가하였으나 빈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2013년 전년대비 227% 증가하였다. 향후 한·터키 FTA 민원 제기가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2014년에는 한·콜롬비아 FTA 관련 질의 제기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들의 특혜관세 적용 여부 질의 적극적

기업들 FTA 활용 절차 및 적용가능 여부확인에 적극적 대응

- 수출기업 : 제조현황 설명 및 원산지 증명 등 FTA 특혜여부 확인에 능동적
- 수입기업 : 수입거래 형태 설명 및 FTA 특혜조건 확인에 적극적

수출기업,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특혜적용 여부 확인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고 있다. 수출 시 특혜관세적용여부 관련 대표적 질문은 해외 바이어 원산지증명서 요청 및 FTA 수출 활용 준비를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자신들의 거래관계 또는 제조공정을 설명하고, 상대국에서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적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검증을 대비한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라 판단된다.

수입기업, 수입거래 형태에 따른 FTA 특혜가능 여부 확인

수입기업의 특혜관세적용관련 질문 역시 자사의 거래 형태나 수입 방식 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로 수입 시 특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3국 송장, 경과규정, B/L 분할 등과 같은 유권 해석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질의 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FTA 발효 연차에 따른 세율변화 확인

단계적 관세철폐 품목에 대한 세율변화 확인 질의 다수 협정별 양허일정, 양허유형, 해당연도 양허세율 확인

품목의 세율정보와 관련한 질의는 HS 코드를 제시하고 특혜 수출입시 협정세율을 질의 하는 민원과 그리고 품목의 양허일정, 양허유형 등을 함께 질의하는 것이 대다수다. 품목의 세율정보는 FTA 활용에 있어 기초 정보에 해

당되나 지속적인 질의가 제기되는 원인은 단계적 관세 철폐품목으로, 해당 연도 협정세율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4) 인증수출자 관련 민원질의

수출 관련 민원: 인증절차 및 인증방법 수입 관련 민원: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불일치

수출기업의 인증 절차 및 원산지관리 전담자 질의 비중 높아

인증수출자 관련 민원질의는 수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증수출자 인증절차 및 원산지 전담자에 대한 질의가 높다. 원산지전담자의 경우 내부 원산지전담자에 대한 질의가 많은 데, 이는 기업이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내부 원산지전담자 지정을 여전히 선호하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대상 원산지 전담자 교육 및 원산지전담자 인력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기업의 EU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상이성 문의의 다수

인증수출자 관련 수입측면에서의 민원제기는 한·EU FTA 관련 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에 대한 문의가 많음이 확인된다. 이는 우리나라 수입자가 알고 있는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실제와는 다른 경우로, 수입자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5)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민원질의

원산지증명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한 질문 비중이 높음 협정별 원산지증명 방법 차이에 따른 증명서 작성 실무 애로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민원의 경우 FTA 상대국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 의해 원산지 증명 방법, 필요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질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의 경우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발급 방식이 상이하므로 작성 실무에 관한 민원질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들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방법 및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작성방법 어려워해

한편, 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 신고 문안 작성에 대한 질의가 높으며, 기타 기관발급 FT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작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원산지 증빙서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민원질의

원산지 확인서 및 소명서 작성요령 민원 빈도가 높으며 특히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문의 많아

민원질의 빈도는 낮으나 FTA 활용에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원산지 증빙서류, 품목별 기준, 일반기준 등을 꼽을 수 있다.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해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소명서 관련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성요령에 관한 질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히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다. 원산지증빙서류는 국내거래에서만 사용되는 서류이나 FTA 수출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형화 분석결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질의 빈도가 증가가 확인된다.

일반기준 중 역외가공,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지정에 대한 민원질의 다 품목별 기준관련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가격계상 질의 대부분 기업들의 민원 빈도 높은 결정기준 이해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 일반기준의 경우 역외가공,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지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일반기준들은 품목별 기준을 충족이 어려울 경우 또는 원부자재 외국 의존도가 높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기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으며, 유사한 원산지판정과 관련 가격계상 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다. 가격계상은 부가가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이에 대한 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한·미 FTA 이슈 분석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위한 민원질의 존재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우려 大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 파악 및 적정성 여부 판단이 시급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적정성 확인 필요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일정한 서식이 없으며, 필수 기재사항 8가지를 기재하다면 모두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자까지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협정이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민원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질의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원산지 판정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후 발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관련기관은 원산지증명서 규모에 대한 실태 파악(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신고 항목 추가 등의 방식)과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여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괄 원산지 증명 기간 및 갱신발급 교육 확대 필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포괄인증 기간 관련 질의 점차 증

포괄증명기간관련 질의는 빈도의 비중은 낮으나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증가하는 항목이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포괄증명기간에 대한 질의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되며, 효과적인 한·미 FTA 활용지원을 위해 포괄증명기간의 개념 및 포괄증명기간 말소 후 갱신 발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 원산지 검증 이슈 분석

원산지검증 및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는 비중 저조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실태파악 필요

마지막으로 원산지검증 관련 질의는 그 비중이 낮은 수준
이므로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을 충실히 대비하고 있는지
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EU 및 한·미 FTA 발효로 인해 FTA 활용
의지 및 활용률이 제고 되었다. 하지만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 원산지검증에 대한 질의민원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
다. 이에 엄격한 원산지검증 시행이 예상되는 한·미 및
한·EU FTA 검증 대비에 대한 대비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원산지관리에 대해 자발적으로 점
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기업들의 원산지 검증대
비 실태분석 및 행정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인증수출자 관련 질의 중 인증방법 및 상대국 인
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질의는 높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질
의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동 사항 역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하는 상황
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므로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
증 대비 및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노력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

/ FTA 민원 데이터 유형화 3단계 /

| 대속성 | FTA 기본정보 | FTA 활용정보 | FTA 이행정보 |
|------|-------------------------------------|----------------------------------|--|
| 중속성 | 1. FTA협정 및 법령 2. 교육 및 컨설팅 | 1. FTA활용정보 2. 품목분류 3. 세율정보 | 1.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증명 3. 원산지검증 |
| 세부속성 | 법령해석 인증수출자 협정관세적용여부 특혜전제조건 | FTA기본정보 상대국정보 | 원산지결정기준해석 원산지판정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
| | | HS코드상이 HS코드확인 품목분류체계 |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 원산지증명주체 재수출입 중고품원산지증명 포괄증명기간 |
| | FTA활용전반 교육자료 실무교육 및 컨설팅 | 기타 세율정보 품목의 세율정보 | 검증절차 및 대상여부 보관서류종류 사전심사 상대국원산지증명서검토 상대국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원산지증빙서류 인장조회 |

05

FTA 교역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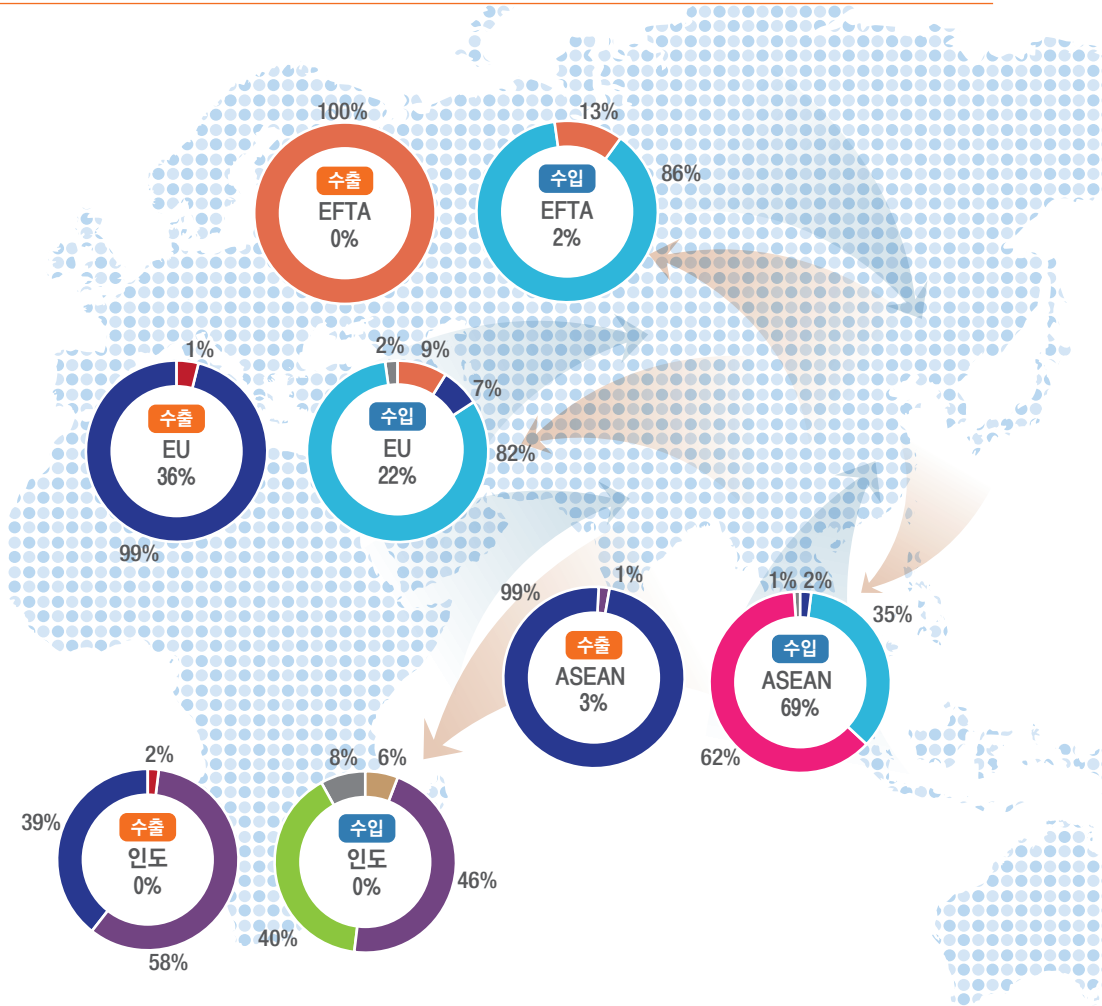


수출 광산물

- 금은 및 백금
- LPG
- 기타
- 기타 비금속 광물
- 소금
- 석유 제품
- 기타 금속 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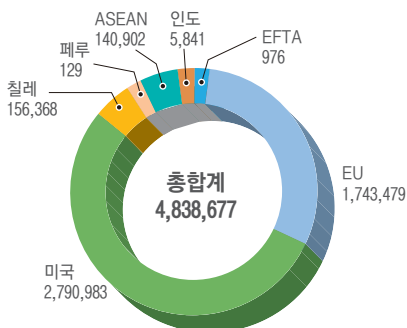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4,838,677(8.5%) | 52,073,480(91.5%) | 56,915,616(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광산물

[단위: 천달러]



광산물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석유 제품 | 4,810,962 | 99.43 |
| 2 | LPG | 12,321 | 0.25 |
| 3 | 금은 및 백금 | 9,461 | 0.20 |
| 4 | 기타 금속 광물 | 4,213 | 0.09 |
| 5 | 기타 | 1,720 | 0.04 |
| | 총계 | 4,838,677 | 100.00 |

수입 광산물

- 금은 및 백금
- 원유
- 소금
- 기타 비금속 광물
- 천연 가스
- 기타 금속 광물
- 석유 제품
- 고령토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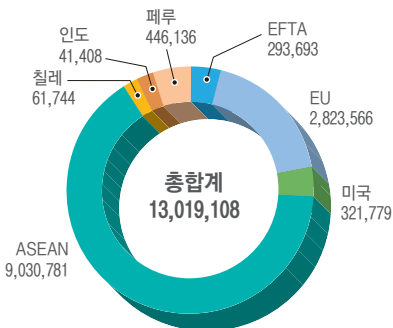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13,019,108(6.5%) | 186,884,916(93.5%) | 200,043,875(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광산물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광산물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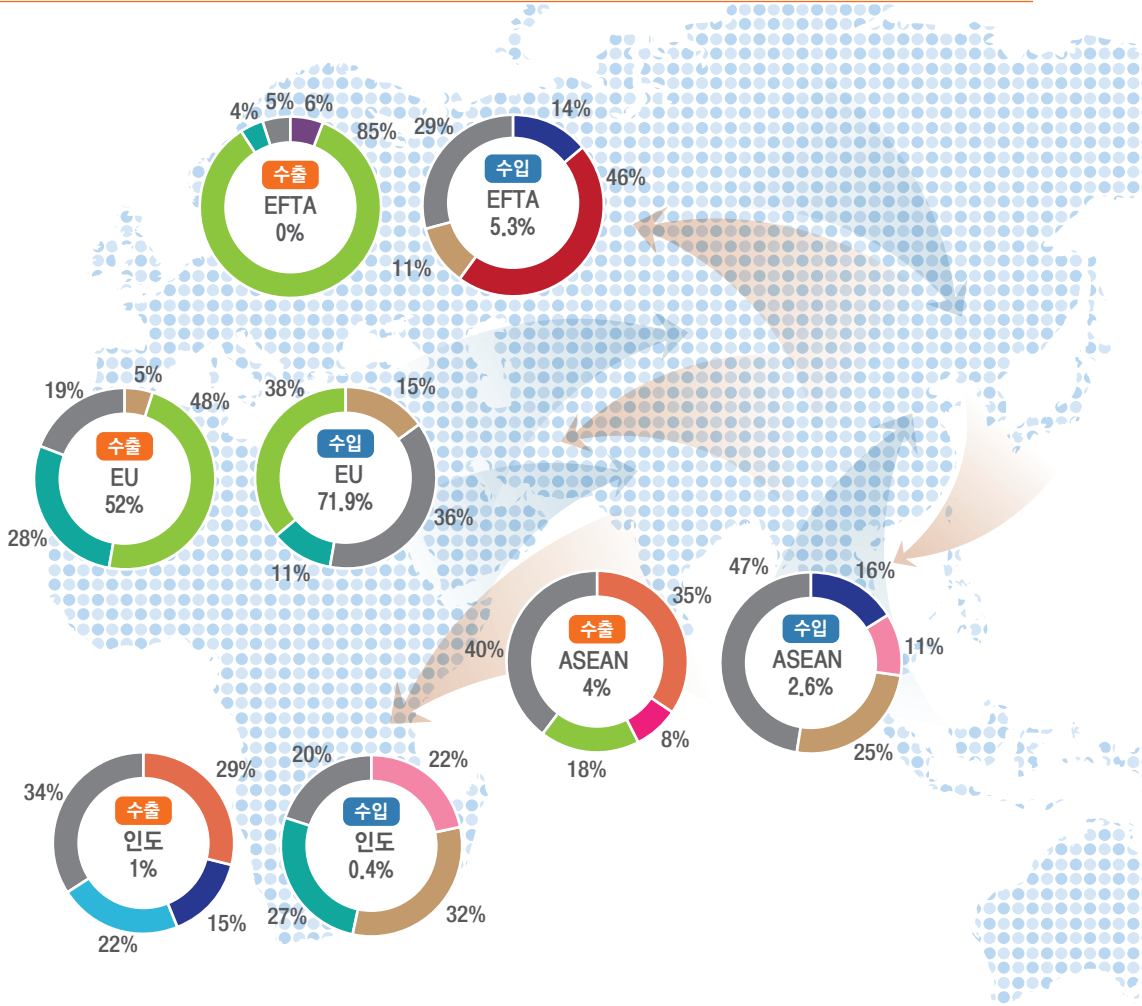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천연 가스 | 6,049,980 | 46.47 |
| 2 | 원유 | 5,690,693 | 43.71 |
| 3 | 소금 | 16,651 | 0.13 |
| 4 | 석유 제품 | 543,654 | 4.18 |
| 5 | 기타 | 718,130 | 5.52 |
| 총계 | | 13,019,108 | 100.00 |

수출 기계류

- 건설 광산 기계
- 공구
- 자동차
- 원동기 및 펌프
- 금형
- 자동차 부품
- 금속 공작 기계
- 섬유 및 화학기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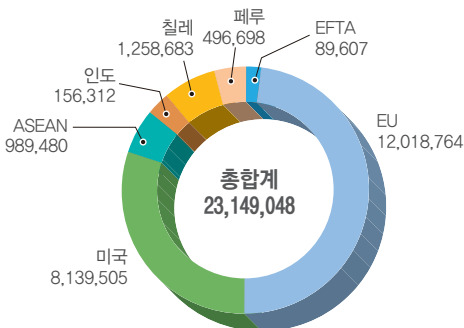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23,149,048(14.3%) | 142,031,471(85.7%) | 165,827,528(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기계류

[단위: 천달러]



기계류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자동차 부품 | 8,750,092 | 37.80 |
| 2 | 자동차 | 7,620,586 | 32.92 |
| 3 | 원동기 및 펌프 | 1,175,530 | 5.08 |
| 4 | 섬유 및 화학기계 | 1,008,314 | 4.36 |
| 5 | 기타 | 4,594,526 | 19.85 |
| 총계 | | 23,149,048 | 100.00 |

수입 기계류

- 시계
- 광학기기
- 자동차 부품
- 원동기 및 펌프
- 기계요소
- 기타
- 금속 공작 기계
-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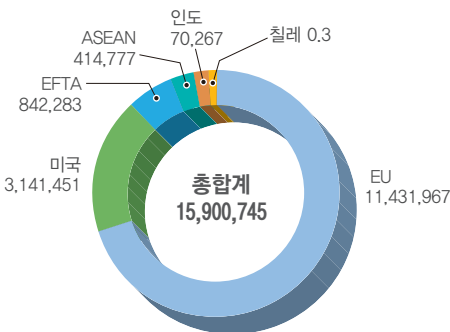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 계 |
|-----------------|-----------------|------------------|
| 15,900,745(25%) | 47,552,977(75%) | 63,489,076(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기계류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기계류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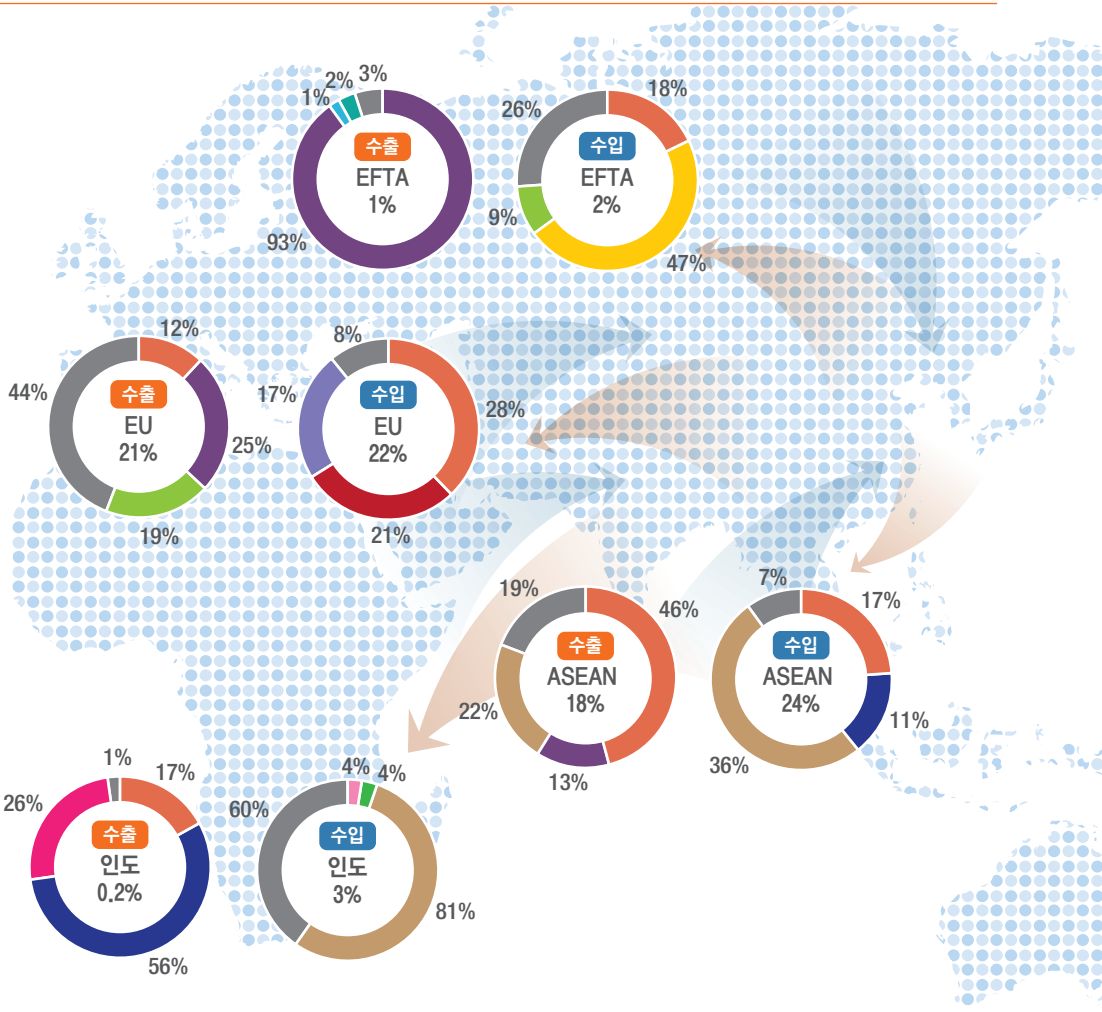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자동차 | 5,091,566 | 32.02 |
| 2 | 원동기 및 펌프 | 2,316,834 | 14.57 |
| 3 | 자동차 부품 | 1,285,926 | 8.09 |
| 4 | 시계 | 383,493 | 2.41 |
| 5 | 기타 | 6,218,827 | 39.11 |
| 총계 | | 15,900,745 | 100.00 |

수출 농림수산물

- 기호 식품
- 수산 가공품
- 어육 및 어란
- 농산 가공품
- 식물성 물질
- 해조류
- 목재류
- 산식물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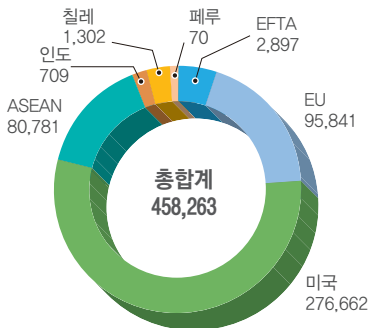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458,263 (6.4%) | 6,664,687(93.6%) | 7,123,377(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농림수산물

[단위: 천달러]



농림수산물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농산 가공품 | 113,025 | 24.66 |
| 2 | 기호 식품 | 97,157 | 21.20 |
| 3 | 해조류 | 45,521 | 9.93 |
| 4 | 어육 및 어란 | 18,424 | 4.02 |
| 5 | 기타 | 184,136 | 40.18 |
| 총계 | | 458,263 | 100.00 |

수입 농림수산물

- 기호 식품
- 어육 및 어란
- 어류
- 목재류
- 육류
- 식물성 재료
- 수산 가공품
- 곡실류
- 기타
- 식물성 물질
- 축산 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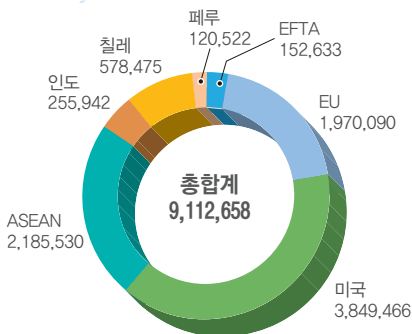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9,112,658(29%) | 22,310,065(71%) | 31,436,325(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농림수산물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농림수산물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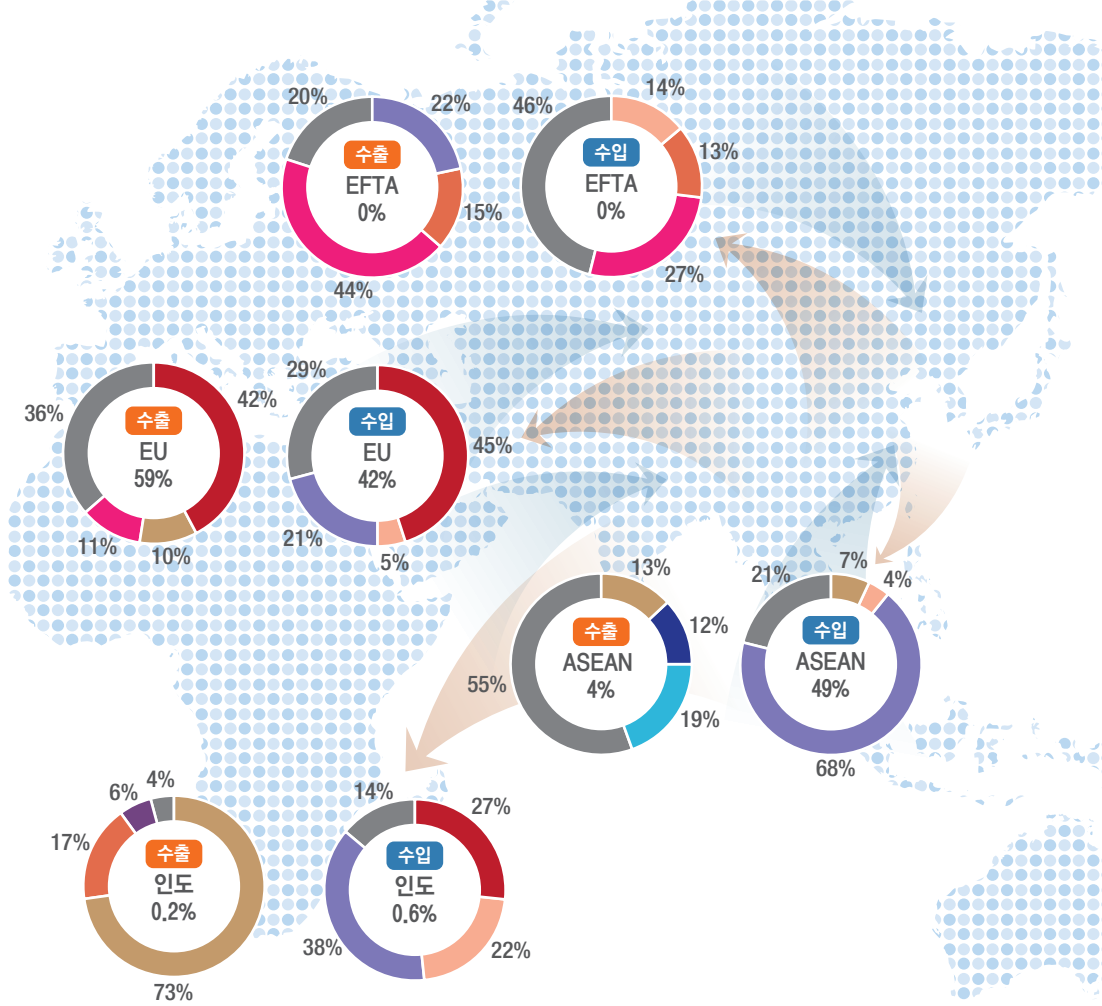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육류 | 1,511,393 | 16.59 |
| 2 | 곡실류 | 1,176,526 | 12.91 |
| 3 | 기호 식품 | 1,004,456 | 11.02 |
| 4 | 식물성 물질 | 995,864 | 10.93 |
| 5 | 기타 | 955,421 | 10.48 |
| 총계 | | 9,112,658 | 100.00 |

수출 생활용품

- 가방
- 취미 오락 기구
- 기타 악기
- 신발
- 필기구
- 기타 가구
- 운동기구
- 휴대용품
- 기타
- 의자
- 기타 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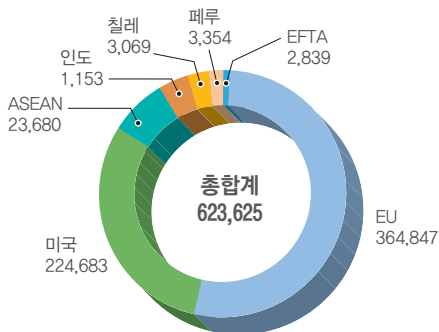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623,625 (16.6%) | 3,156,402(83.4%) | 3,782,783(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생활용품

[단위: 천달러]



생활용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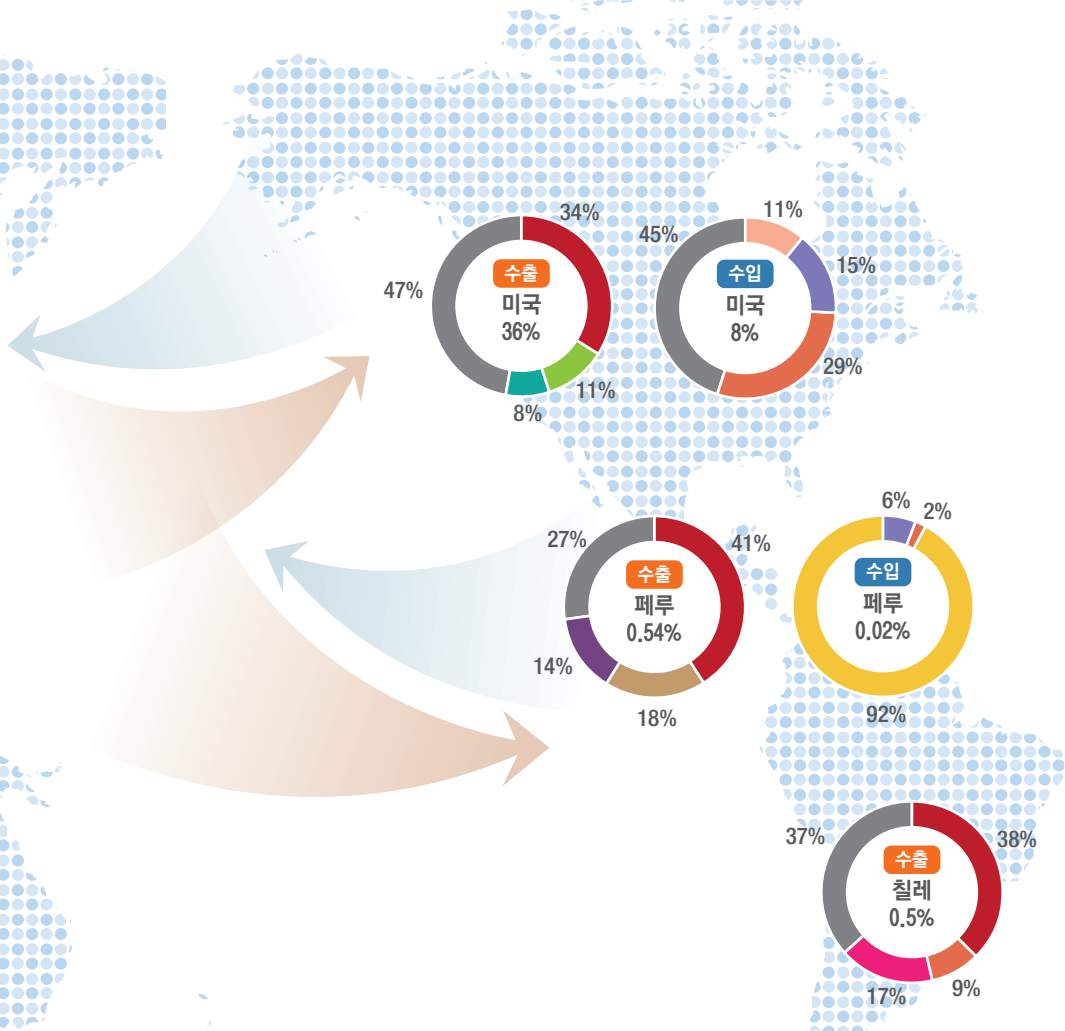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가방 | 232,015 | 37.20 |
| 2 | 기타 가구 | 42,879 | 6.88 |
| 3 | 휴대용품 | 42,205 | 6.77 |
| 4 | 기타 공예품 | 24,872 | 3.99 |
| 5 | 기타 | 281,655 | 45.16 |
| 총계 | | 623,625 | 100.00 |

수입 생활용품

- 가방
- 휴대용품
- 기타 가구
- 신발
- 인형
- 기타
- 운동기구
- 기타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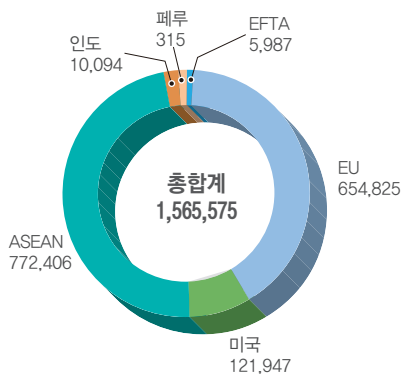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1,565,575(21.9%) | 5,590,261(78%) | 7,157,618(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생활용품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생활용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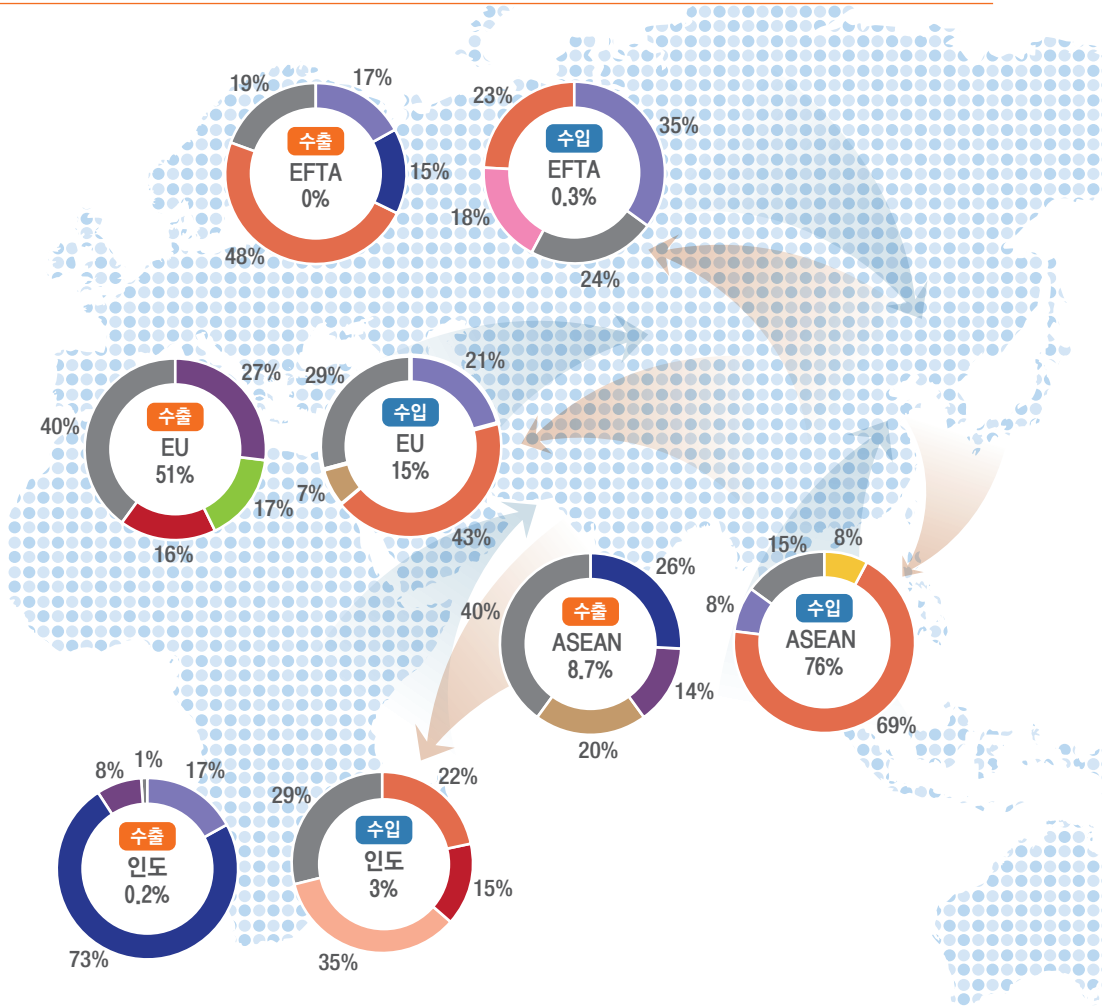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신발 | 685,417 | 43.78 |
| 2 | 가방 | 300,634 | 19.20 |
| 3 | 기타 생활용품 | 80,563 | 5.15 |
| 4 | 기타 가구 | 51,360 | 3.28 |
| 5 | 기타 | 410,115 | 26.20 |
| 총계 | | 1,565,575 | 100.00 |

수출 섬유류

- 의류
- 재생 섬유
- 기타직물
- 인조 섬유
- 인조장섬유직물
- 기타 섬유제품
- 인조섬유장섬유사
- 편직물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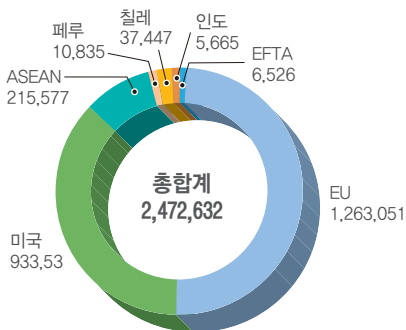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2,472,632 (16.4%) | 13,333,452(83.6%) | 15,958,159(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섬유류

[단위: 천달러]



섬유류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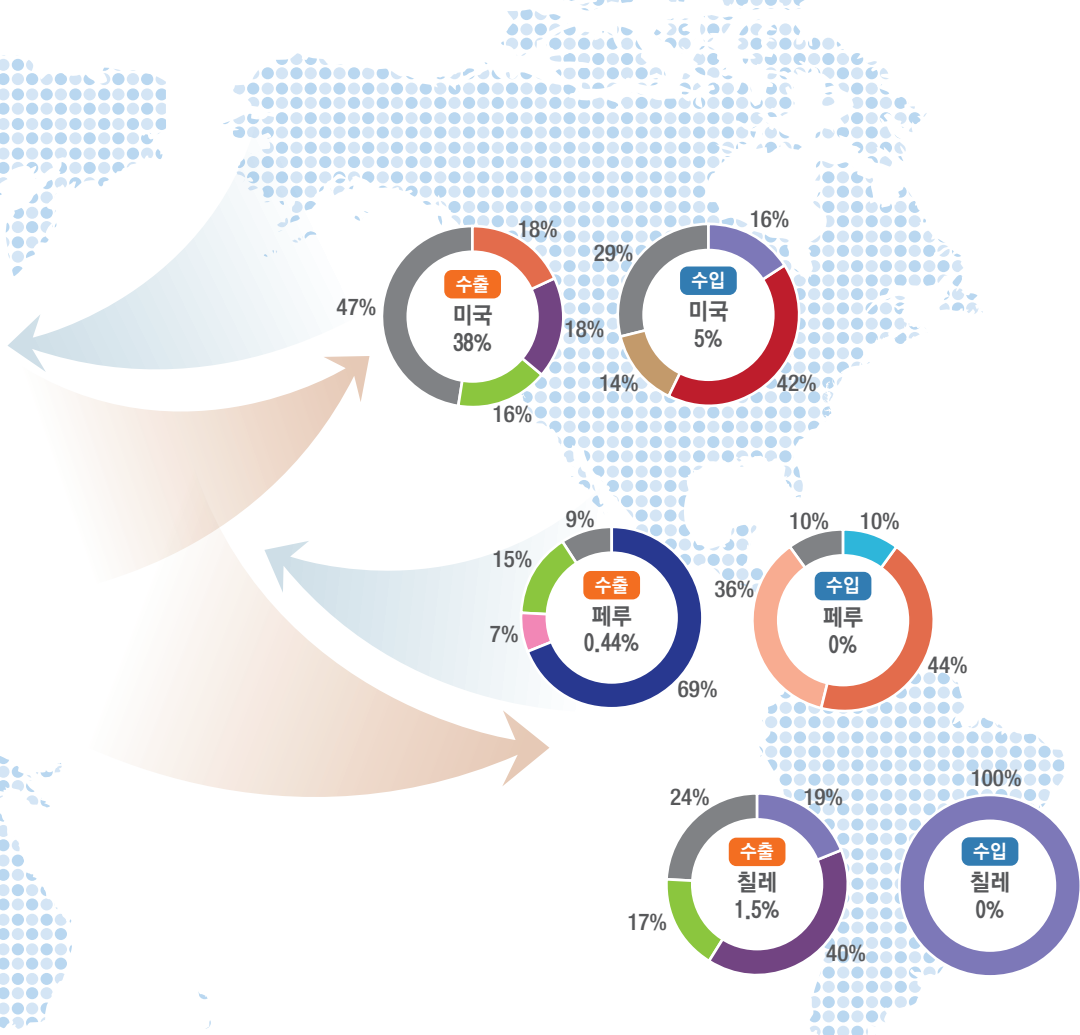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인조 섬유 | 552,628 | 22.35 |
| 2 | 편직물 | 377,712 | 15.28 |
| 3 | 인조섬유장섬유사 | 197,558 | 7.99 |
| 4 | 의류 | 172,517 | 6.98 |
| 5 | 기타 | 1,172,217 | 47.41 |
| 총계 | | 2,472,632 | 100.00 |

수입 섬유류

- 의류
- 재생 섬유
- 모직물
- 인조섬유방직사
- 천연 섬유사
- 기타 섬유제품
- 인조섬유장섬유사
- 인조장섬유직물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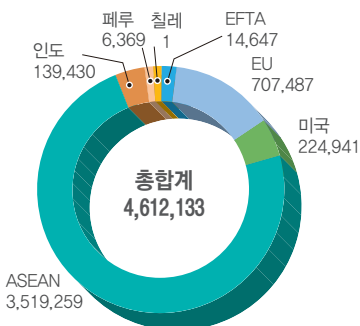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4,612,133(34.1%) | 8,889,239(65.9%) | 13,513,575(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섬유류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섬유류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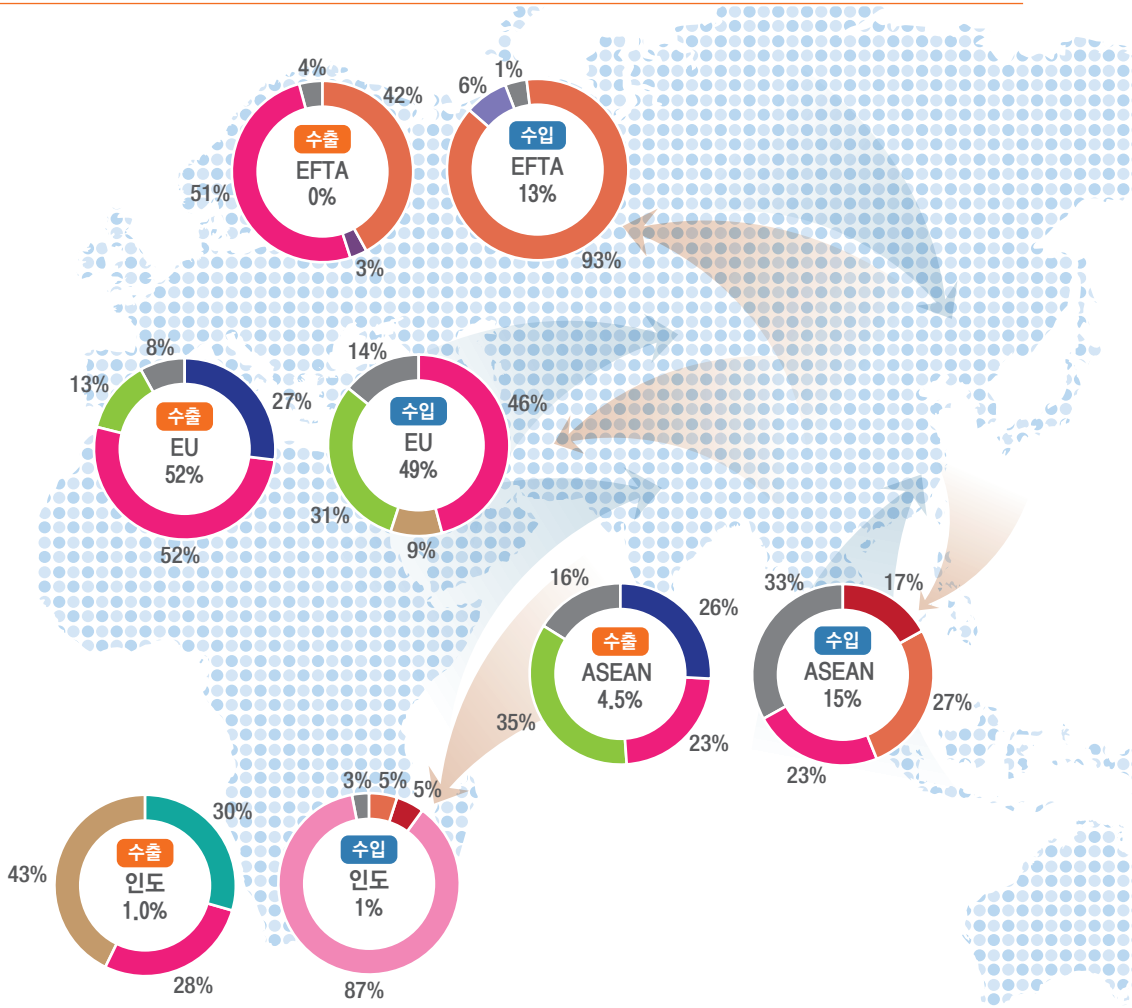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의류 | 2,782,035 | 60.32 |
| 2 | 기타 섬유제품 | 460,112 | 9.98 |
| 3 | 인조섬유방직사 | 285,467 | 6.19 |
| 4 | 인조섬유장섬유사 | 115,028 | 2.49 |
| 5 | 기타 | 837,169 | 18.15 |
| 총계 | | 4,612,133 | 100.00 |

수출 잡제품

- 귀금속장식품
- 콘택트렌즈
- 서적
- 안경
- 그림
- 기타인쇄물
- 의료위생용품
- 무기류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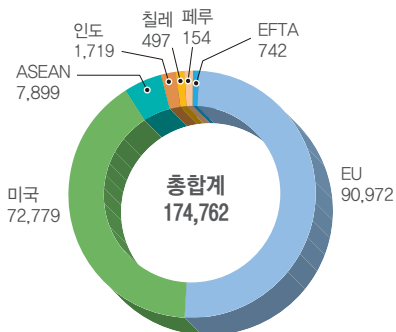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174,762(9.4%) | 1,709,749(90.6%) | 1,886,293(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잡제품

[단위: 천달러]



잡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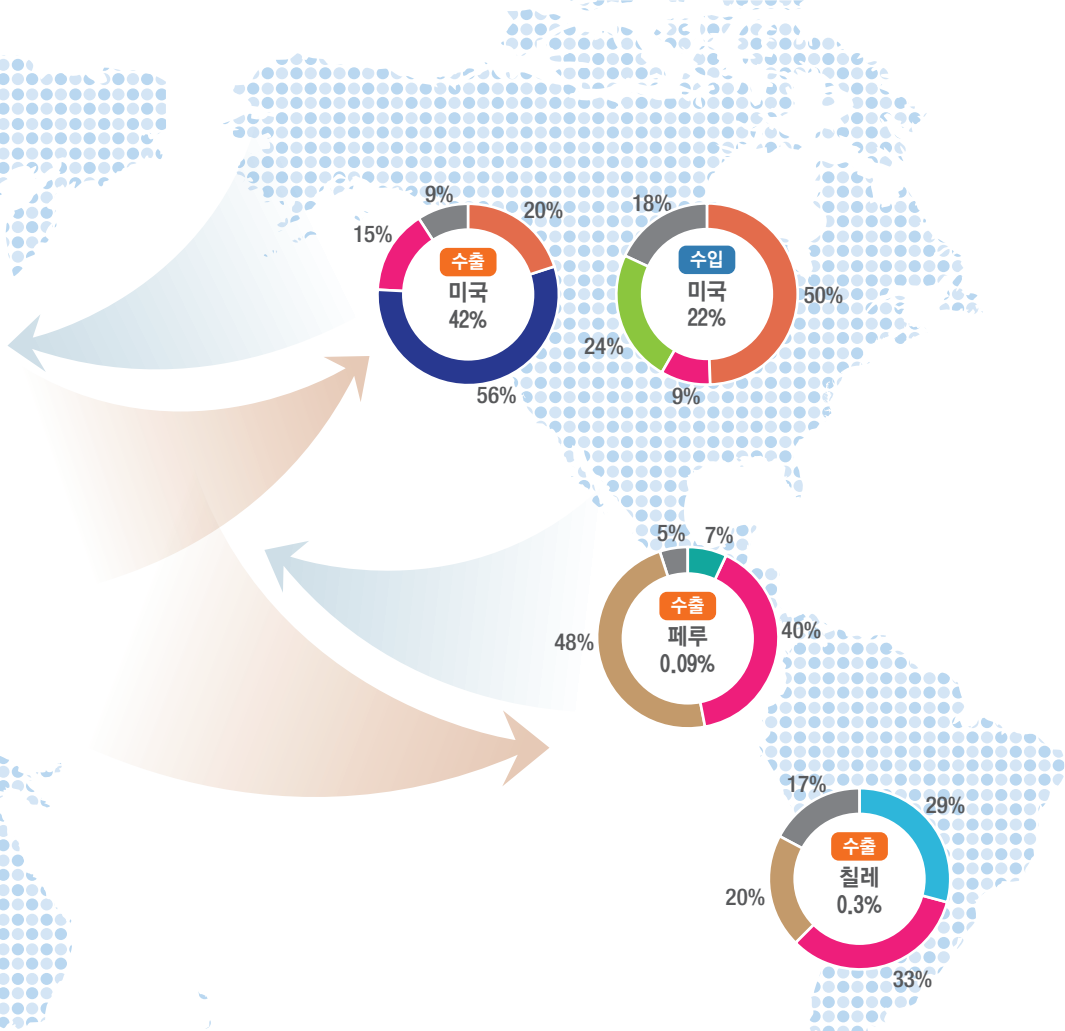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무기류 | 68,076 | 38.95 |
| 2 | 안경 | 60,612 | 34.68 |
| 3 | 귀금속장식품 | 14,848 | 8.50 |
| 4 | 콘택트렌즈 | 14,755 | 8.44 |
| 5 | 기타 | 16,472 | 9.43 |
| 총계 | | 174,762 | 100.00 |

수입 잡제품

- 귀금속장식품
- 콘택트렌즈
- 기타잡제품
- 안경
- 가발및가눈섭
- 기타
- 의료위생용품
- 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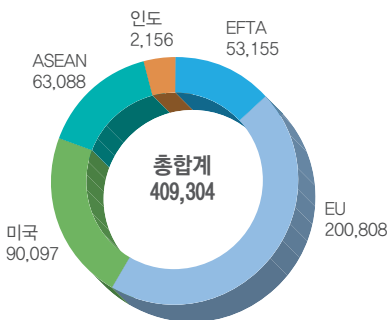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409,304(18.9%) | 1,754,242(81%) | 2,163,573(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잡제품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잡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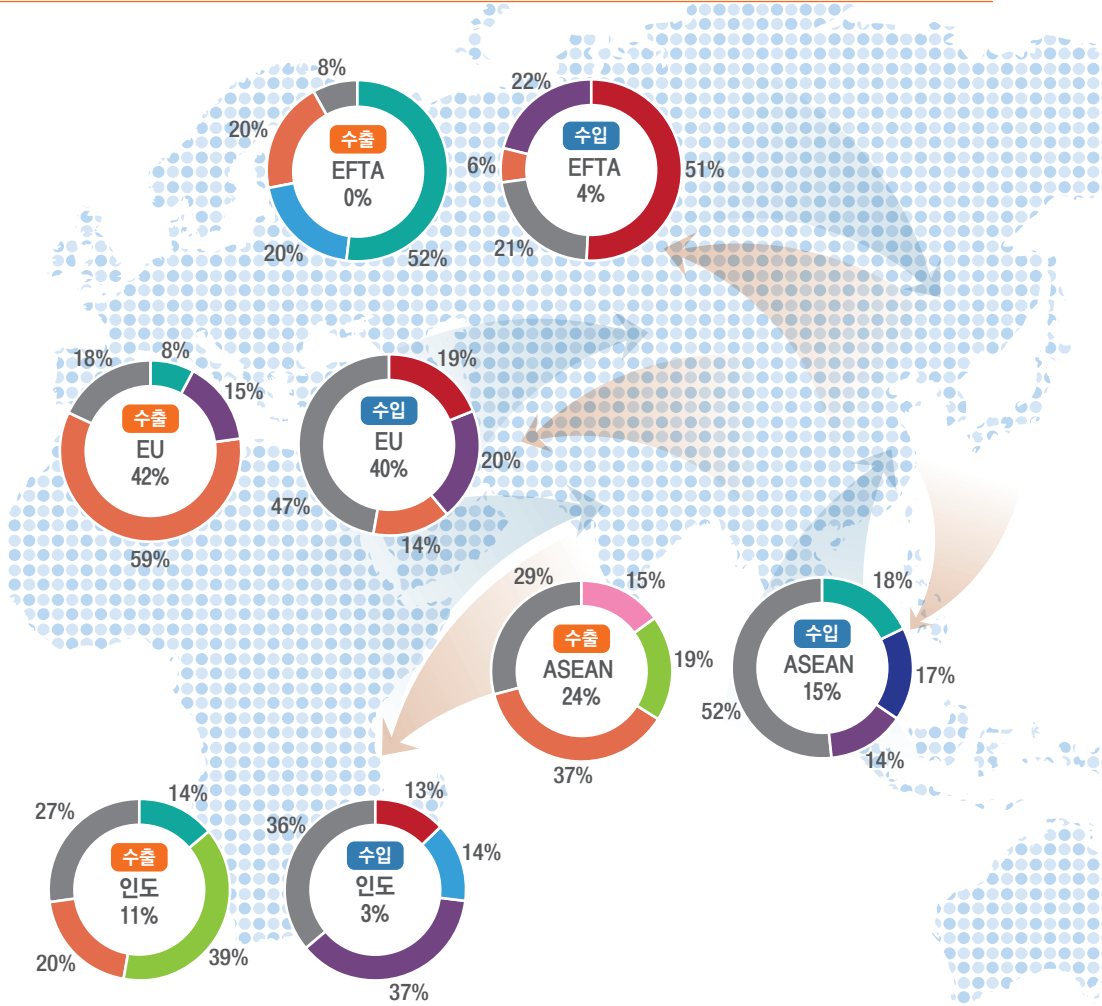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안경 | 113,856 | 27.82 |
| 2 | 귀금속장식품 | 111,221 | 27.17 |
| 3 | 콘택트렌즈 | 84,437 | 20.63 |
| 4 | 의료위생용품 | 18,342 | 4.48 |
| 5 | 기타 | 65,480 | 16.00 |
| 총계 | | 409,304 | 100.00 |

수출 화학공업제품

- 합성수지
- 합성고무
- 기타석유화학제품
- 정밀화학원료
- 종이제품
- 기타
- 염료및안료
-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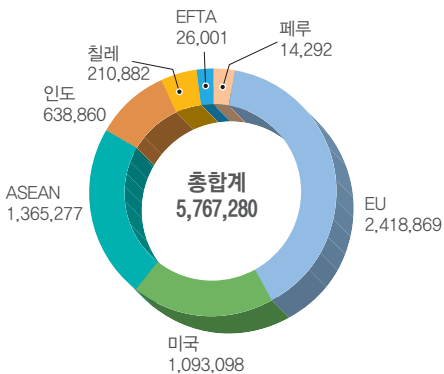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5,767,280(9.2%) | 62,810,442(90.8%) | 69,174,966(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화학공업제품

[단위: 천달러]



화학공업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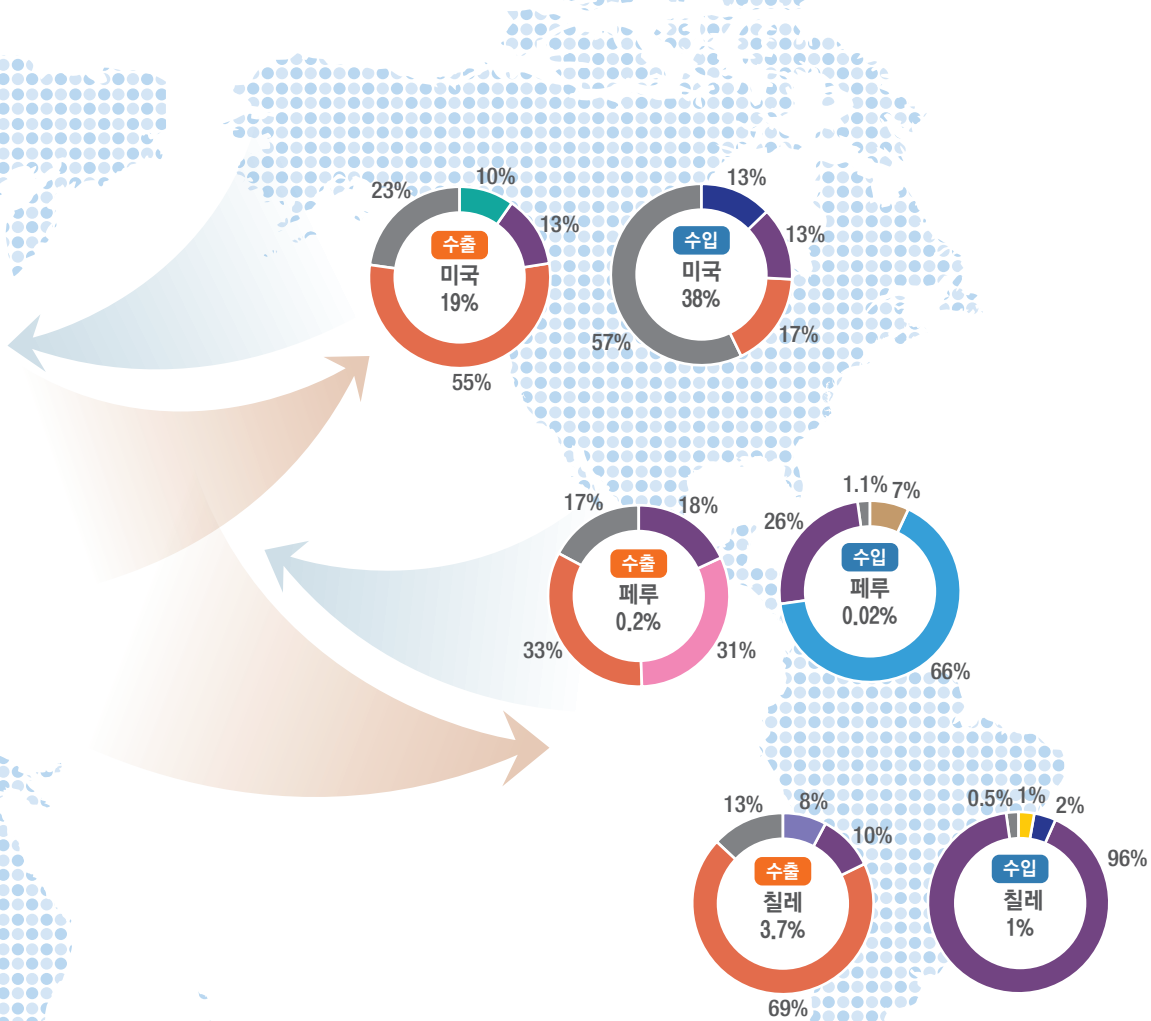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합성수지 | 2,818,699 | 48.87 |
| 2 | 정밀화학원료 | 528,818 | 9.17 |
| 3 | 합성고무 | 503,745 | 8.73 |
| 4 | 기타석유화학제품 | 387,741 | 6.72 |
| 5 | 기타 | 1,528,277 | 26.50 |
| 총계 | | 5,767,280 | 100.00 |

수입 화학공업제품

- 합성수지
- 염료및안료
- 기타석유화학제품
- 정밀화학원료
- 복합비료
- 기타비료
- 농약및의약품
- 기타정밀화학제품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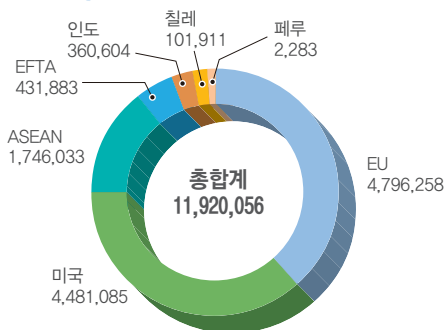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11,920,056(22.7%) | 39,586,223(77.3%) | 52,458,309(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화학공업제품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화학공업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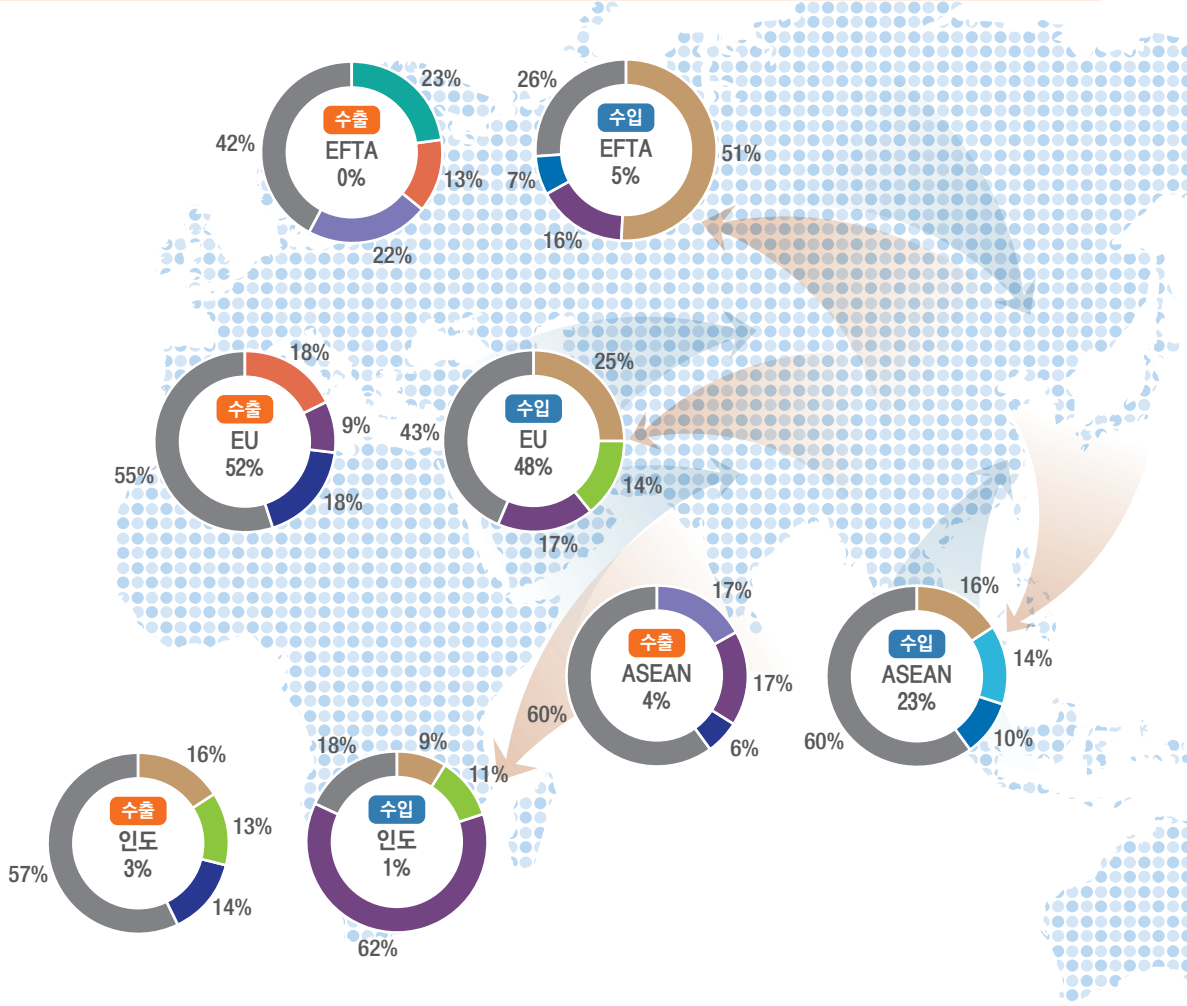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정밀화학원료 | 2,312,276 | 19.40 |
| 2 | 합성수지 | 1,585,327 | 13.30 |
| 3 | 농약및의약품 | 1,308,214 | 10.97 |
| 4 | 기타정밀화학제품 | 903,267 | 7.58 |
| 5 | 기타 | 6,397,389 | 53.67 |
| 총계 | | 11,920,056 | 100.00 |

수출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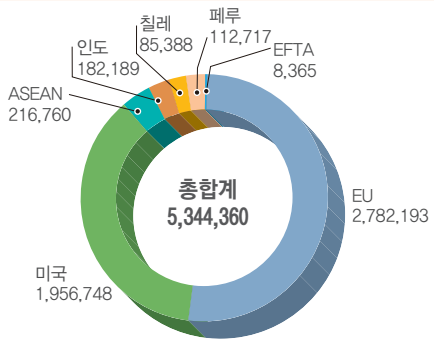
- 건전지및축전지
- 정지기기
- 무선통신기기
- 조명기기
- 계측제어분석기
- 전자응용기기
- 컴퓨터
- 가정용회전기기
- 냉장고
- 영상기기
- 전선
- 기타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5,334,360(3%) | 174,823,766(97%) | 180,158,126(100%) |

% 전달러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전자전기제품 [단위: 천달러]



전자전기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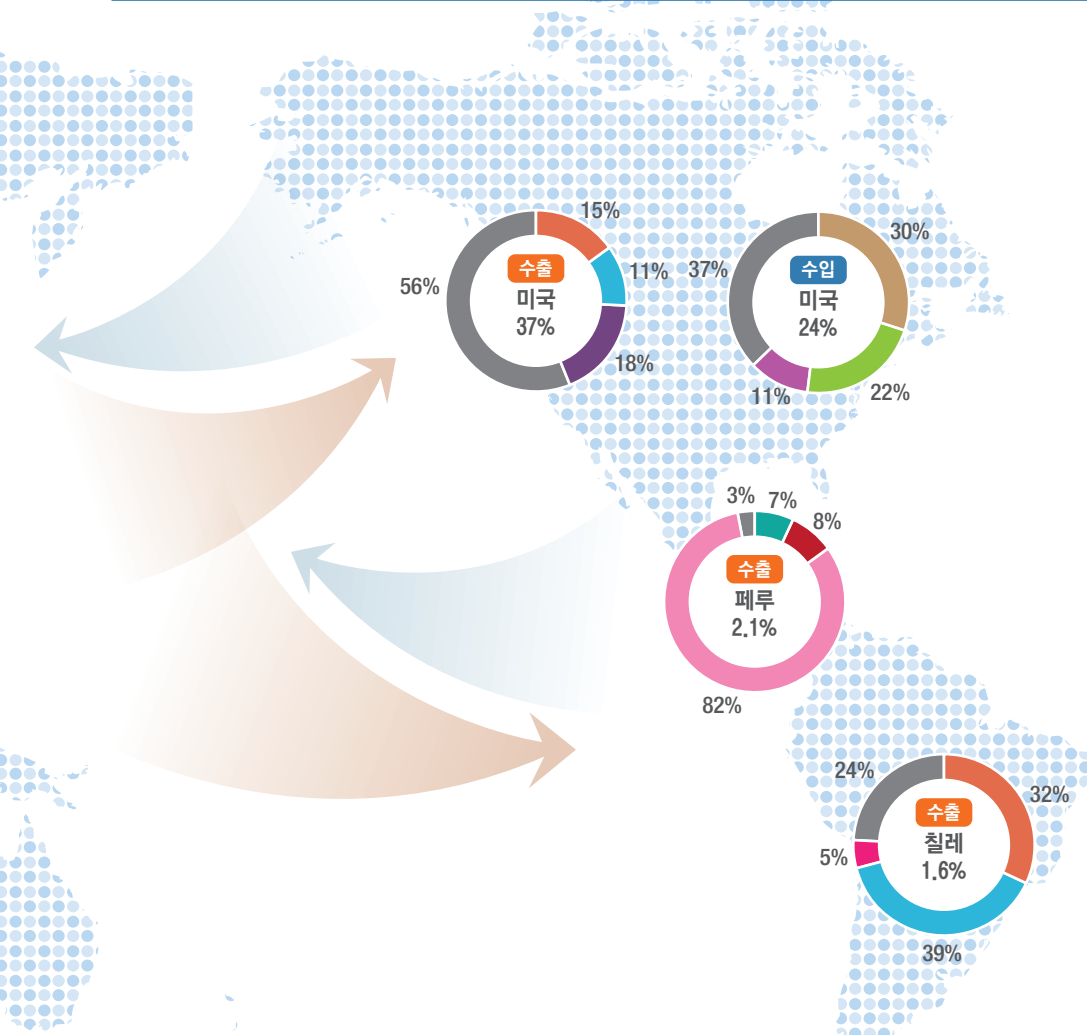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건전지및축전지 | 820,520 | 15.35 |
| 2 | 정지기기 | 647,978 | 12.12 |
| 3 | 조명기기 | 515,665 | 9.65 |
| 4 | 무선통신기기 | 242,362 | 4.53 |
| 5 | 기타 | 3,117,835 | 58.34 |
| 총계 | | 5,344,360 | 100.00 |

수입 전자전기제품

- 건전지및축전지
- 정지기기
- 무선통신기기
- 계측제어분석기
- 전자응용기기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회전기기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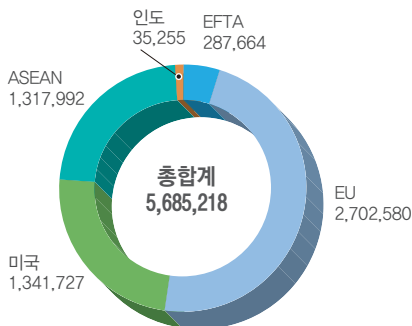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5,685,218(6%) | 86,477,128(94%) | 92,167,317(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전자전기제품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전자전기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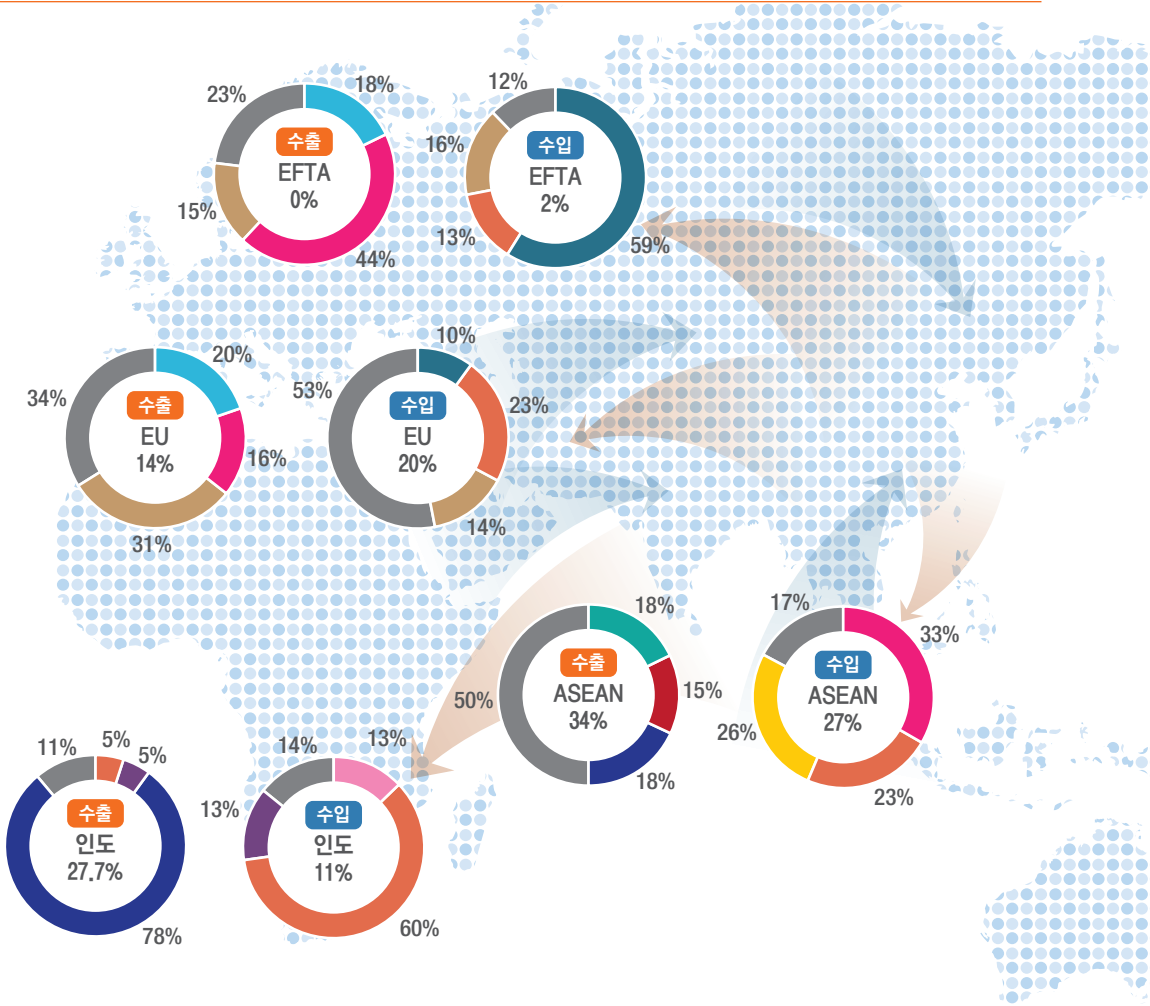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계측제어분석기 | 1,449,415 | 25.49 |
| 2 | 전자응용기기 | 694,989 | 12.22 |
| 3 | 정지기기 | 536,138 | 9.43 |
| 4 | 무선통신기기 | 184,315 | 3.24 |
| 5 | 기타 | 2,530,550 | 44.51 |
| 총계 | | 5,685,218 | 100.00 |

수출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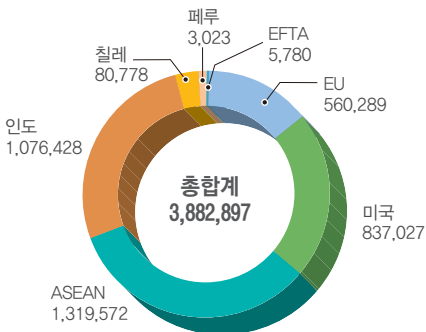
- 알루미늄
- 동제품
- 레일및철구조물
- 연제품
- 주단조품
- 기타
- 철강판
- 철강관및철강선
- 기타철강금속제품
- 강제품및기타철강제품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3,882,897(9.2%) | 39,445,866(90.8%) | 43,422,315(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철강금속제품 [단위: 천달러]



철강금속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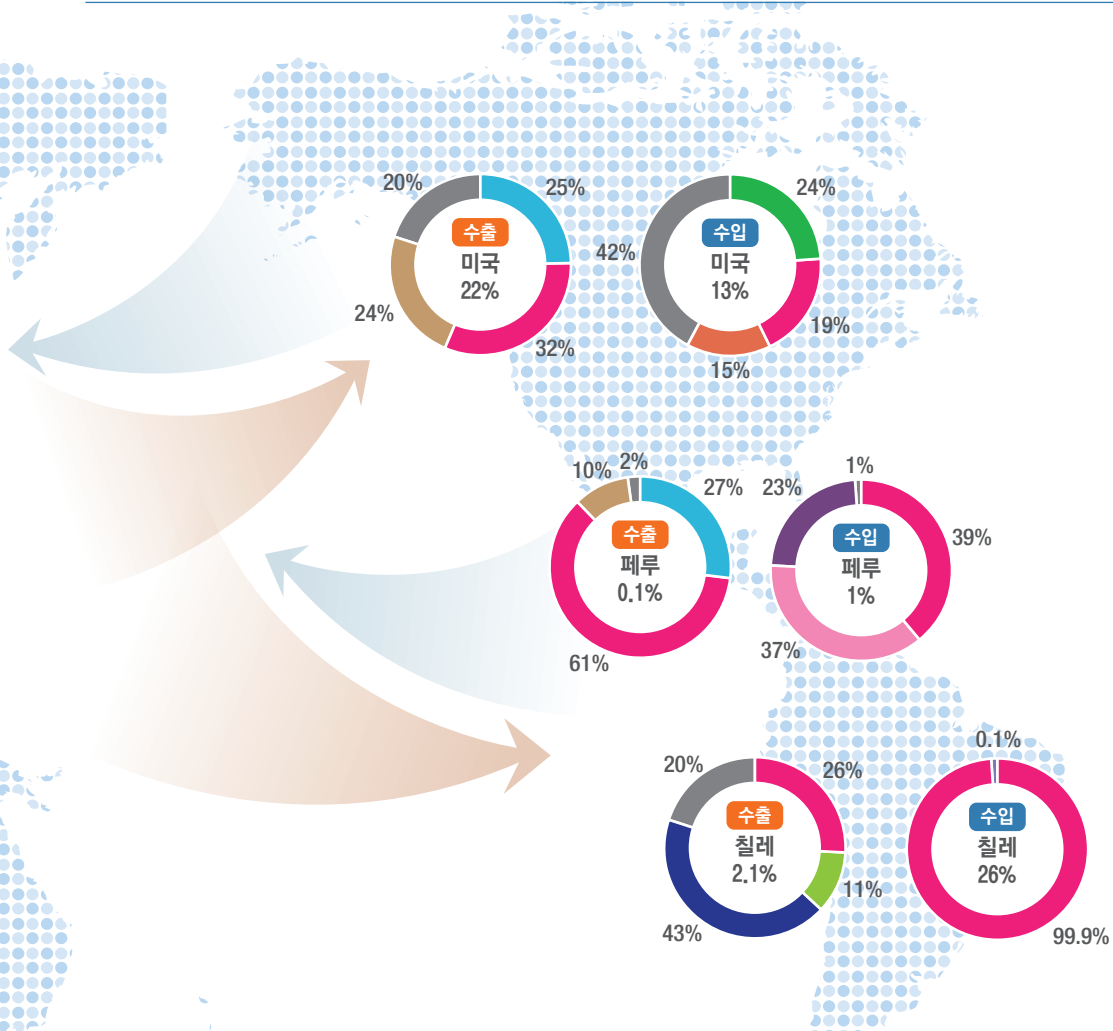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철강판 | 1,113,353 | 28.67 |
| 2 | 동제품 | 377,291 | 9.72 |
| 3 | 주단조품 | 376,379 | 9.69 |
| 4 | 기타철강금속제품 | 316,657 | 8.16 |
| 5 | 기타 | 1,699,217 | 43.76 |
| 총계 | | 3,882,897 | 100.00 |

수입 철강금속제품

- 알루미늄
- 니켈제품
- 텅스텐몰리브덴 및망간제품
- 연제품
- 기타비철강금속제품
- 기타
- 동제품
- 주식제품
- 주단조품
- 아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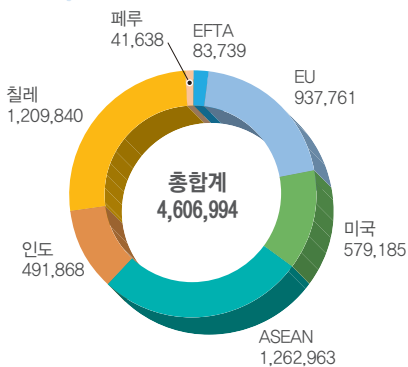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4,606,994(10%) | 39,695,488(90%) | 44,304,831(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철강금속제품 특혜수입금액

[단위: 천달러]



철강금속제품 수입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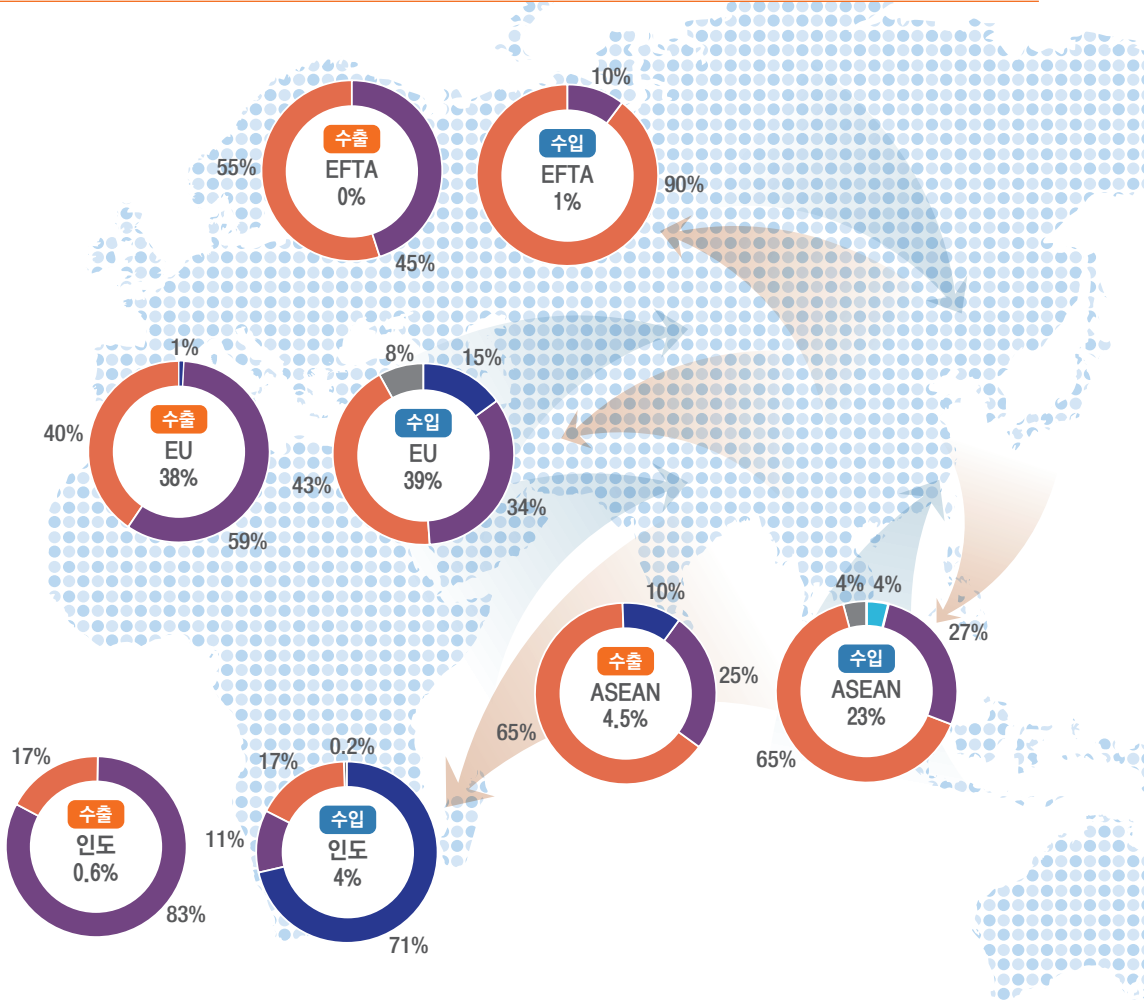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동제품 | 1,686,913 | 36.62 |
| 2 | 알루미늄 | 413,254 | 8.97 |
| 3 | 주식제품 | 351,288 | 7.63 |
| 4 | 니켈제품 | 197,572 | 4.29 |
| 5 | 기타 | 863,491 | 18.74 |
| 총계 | | 4,606,994 | 100.00 |

수출 플라스틱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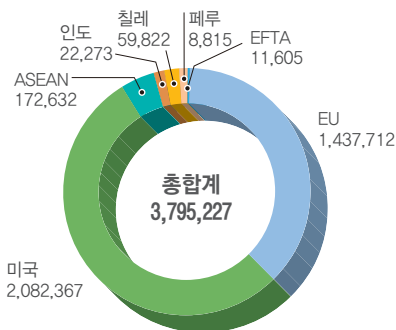
- 플라스틱 제품
- 가죽
- 기타
- 고무제품
- 가죽제품

| FTA 특혜수출 | 일반수출 | 총계 |
|------------------|-------------------|------------------|
| 3,795,227(25.6%) | 11,453,823(74.4%) | 15,399,546(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FTA국가별 특혜수출 현황: 플라스틱 및 가죽제품 [단위: 천달러]



플라스틱 및 가죽제품 수출상위품목 [단위: 천달러, %]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고무제품 | 2,395,982 | 63.13 |
| 2 | 플라스틱 제품 | 1,366,063 | 35.99 |
| 3 | 가죽 | 27,472 | 0.72 |
| 4 | 가죽제품 | 2,101 | 0.06 |
| 5 | 기타 | 3,608 | 0.10 |
| 총계 | | 3,795,227 | 100.00 |

수입 플라스틱 및 가죽제품

- 플라스틱 제품
- 가죽
- 모피
- 고무제품
- 가죽제품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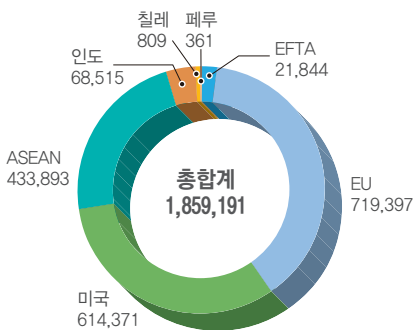
| FTA 특혜수입 | 일반수입 | 총계 |
|------------------|----------------|-----------------|
| 1,859,191(21.1%) | 6,956,842(79%) | 8,826,344(100%) |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플라스틱 및 가죽제품 특혜수입금

[단위: 천달러]



플라스틱 및 가죽제품 수입상위품

[단위: 천달러, %]

| 순위 | 구분 | 금액 | 전체대비 구성비중 |
|----|---------|-----------|-----------|
| 1 | 플라스틱 제품 | 1,080,555 | 58.12 |
| 2 | 고무제품 | 431,432 | 23.21 |
| 3 | 가죽 | 207,247 | 11.15 |
| 4 | 가죽제품 | 18,928 | 1.02 |
| 5 | 기타 | 121,019 | 6.51 |
| 총계 | | 1,859,191 | 100.00 |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면제도
공공주택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도
모두 여러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곳 제안하세요! 국민행복제안센터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하세요!

국민의 아이디어에 실현가능성을 **맞추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주는 **창조경제타운!**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금 바로 **창조경제타운**을 검색해 보세요! ▾

검색

창조경제타운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분들에게 멘토링을 연결시켜주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정업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발행일 : 2014년 4월

발행처 :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 481-3282 / FAX. 042) 481-7753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 6000-701-3 / FAX. 031) 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쇄 : 킨코스코리아

발간등록번호 : 11-1220000-000342-08

